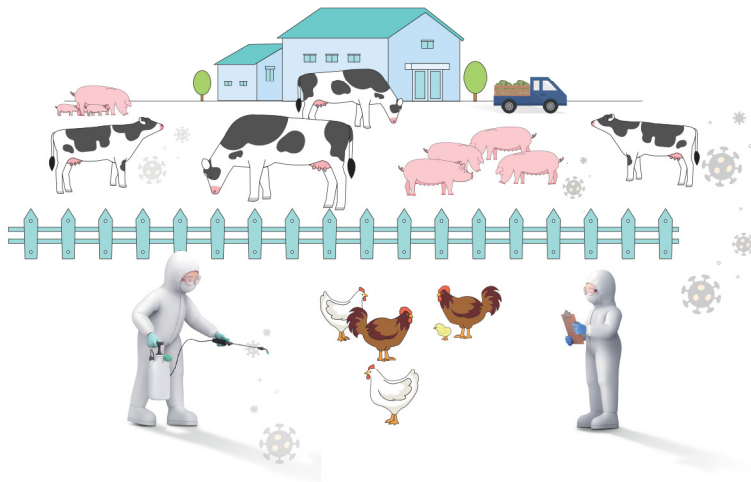


2026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2026. 1.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입니다.

✓ 가축방역 사업의 목적

- ①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 ②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
- ③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천문학적 국가재정 소요 방지

✓ 추진방향

- ① 국민과 국가가 함께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
- ② 질병 예찰 및 검색 등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전용전화 1588-4060, 1588-9060)와 즉각적인 긴급방역 추진체계 구축
- ③ 일선 방역기관에 대한 장비 지원 등을 통해 방역활동의 적정 수행 도모
- ④ 방역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등

✓ 세부사업

①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 긴급방역비,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예방·검진·방제약품 등 지원
- 방역장비 및 시설, 소독자원 임차, 신종 전염병 방제·예찰 비용 등 지원
- 가축질병 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우수농가에 방역비용 등 지원

②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자체 가축방역 평가 지원 및 가축 질병 근절 대책 홍보 등(방역정책과)
-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등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구제역방역과)

③ 가축백신지원 사업 :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등

④ 살처분보상금 사업 : 살처분보상금, 생계 및 소득안정비용 지원

⑤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

- 매몰지 사후관리, 발굴·복원, 사체처리 시설·장비, 살처분 비용 등 지원

⑥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사업 : 공중방역수의사 봉급·수당 지원

| 목 차 |

I. 가축방역 사업 총괄표 1

1. 가축방역 사업 총괄표	3
----------------------	---

II.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5

1.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총괄표	7
2. 긴급방역비·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9
3. 예방약품 등 지원	11
4. 방역장비 등 지원	30
5. 소독자원 지원	36
1) 소독자원 임차지원	36
2)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	38
3)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방제	39
6.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예찰	40
1) 거점 센터·공중 포집기 운영	40
2) 공중 포집기 설치	41
7.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	42
8. 사업별 세부 시행내역	43
1) 가축방역비 산출단가	43
2) 예방약품 공급	45
① 소 질병 백신 지원	45
② 돼지열병 단독·마커 혼합백신	48
③ 돼지열병 마커백신(제주)	49
④ 돼지 질병 백신 지원(일본뇌염, 돼지 유행성설사병)	50

| 목 차 |

㉔ 돼지 쉼코바이러스(PCV-2)	51
㉕ 광견병	52
㉖ 진돗개 디스토펙퍼(DHPPL)·심장사상충	53
㉗ 뉴캐슬병	54
㉘ 뉴캐슬병(양계농가)	55
㉙ 오리 바이러스간염	56
㉚ 야생동물 광견병(미끼예방약)	57
㉛ 야생동물 돼지열병(미끼예방약)	58
3) 검진약품 공급	59
① 젖소 결핵(PPD)	59
② 한·육우 결핵(거래가축)	60
③ 브루셀라병(M.R.T)	61
④ 브루셀라병(Rose-Bengal)	62
⑤ BSE 진단키트 구입비	63
⑥ 사슴 결핵병	64
⑦ 돼지오제스키병	65
⑧ PED·PRRS 모니터링	66
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모니터링	67
⑩ 추백리·가금티푸스(평판)	68
⑪ 추백리·가금티푸스·마이코플라스마(ELISA)	69
⑫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	70
4) 방제약품 공급	71
① 소 진드기	71
② 꿀벌 응애류	72
③ 꿀벌 노제마증	74
④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76
5)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계획	77
6)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78

7)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민간 병성감정기관 AI 검사 지원)	79
8) 돼지소모성질병 지도 지원사업	80
9)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	81
10)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82
10)-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채혈비	83
11)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84
1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	85
13)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86
14)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지원	87
15)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88
16)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89
17)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90
18)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91
19) 가축질병(양봉) 모니터링 검사	92
20)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93
21)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94
22)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95
23)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검사	96
24)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원	97
25) 거점센터 운영	98
26) 공중포집기 운영 및 설치	99
9.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100
10. 참고 자료	101

| 목 차 |

Ⅲ.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141

- 1. 사업 총괄표 143
-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사업 144
- 3. 방역본부 자산취득 사업 169
- 4. 방역직 인건비 지원 사업 176
- 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 181

Ⅳ. 가축백신지원 사업 199

- 1. 사업 총괄표 201
- 2. 사업별 추진개요 202
 - 1)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사업 202
 - 2)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203
 - 3) 렙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사업 208
- 3. 세부사업 시행내역 209
- 4.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220

Ⅴ. 살처분보상금 사업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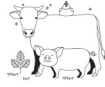
- 1. 살처분보상금 227
- 2. 생계 및 소득안정 228

VI.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229

- 1. 사업 총괄표 231
- 2.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232
- 3.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234
- 4. 살처분등 비용 지원 237
- 5. 사업 세부내역 239
- 6. 사업비 집행 및 실적 보고 242

VII.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사업 243

- ※ 가축 방역기관 연락처 247



2026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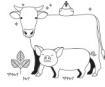


가축방역 사업 총괄표

■ 가축방역 사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 사업비 (국비, 당초)	'26년도 사업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계	332,182,632	307,656,191	162,221,661	51,378,668	521,256,520
□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97,634,000	96,810,000	79,110,522	19,334,719	195,255,241
○ 긴급방역비 등	4,000,000	4,000,000	-	-	4,000,000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53,000	53,000	-	-	53,000
○ 예방약품 등 지원(경상)	79,082,000	78,473,000	71,324,094	19,234,719	169,031,813
○ 방역장비 등 지원(자본)	6,679,000	6,995,000	6,995,000	-	13,990,000
○ 소독자원 지원	6,395,000	5,579,000	-	100,000	5,679,000
○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	1,425,000	1,540,000	621,428	-	2,161,428
○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	-	170,000	170,000	-	340,000
□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65,792,000	68,108,000	24,998,000	-	93,106,000
○ 방역본부 운영지원	35,188,000	36,765,000	-	-	36,765,000
○ 방역본부 자산취득	1,554,000	1,554,000	-	-	1,554,000
○ 방역직 인건비 지원	13,886,000	14,373,000	9,582,000	-	23,955,000
○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15,164,000	15,416,000	15,416,000	-	30,832,000
□ 가축백신지원 사업	66,983,000	55,569,000	31,262,139	31,163,949	117,995,088
□ 살처분보상금 사업	81,315,000	69,640,000	18,645,000	-	88,285,000
○ 살처분보상금	80,215,000	67,727,000	16,932,000	-	84,659,000
○ 생계 및 소득안정	1,100,000	1,913,000	1,713,000	-	3,626,000
□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7,737,000	5,051,000	8,206,000	880,000	14,137,000
□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사업	12,721,632	12,478,191	-	-	12,478,191



2026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농특회계 : 예산과목 3940-335)

1.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총괄표	7
2. 긴급방역비·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	9
3. 예방약품 등 지원	11
4. 방역장비 등 지원	30
5. 소독자원 지원	36
6.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예찰	40
7.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	42
8. 사업별 세부 시행내역	43
9.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100
10. 참고 자료	101

1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총괄표

구 분	축종	사업명		2025년 국비(당초)	2026년 사업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합 계				97,634,000	96,810,000	79,110,522	19,334,719	195,255,241	
긴급방역비				4,000,000	4,000,000	-	-	4,000,000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여비 등				53,000	53,000	-	-	53,000	
예 방	소	질병 백신지원	탄저·기증저 전염성비기관염· 바이러스설사병(합제) 유행열 아카바네병 설사병(주사제) 설사병(경구용) 부제병 젖소유방염	4,185,243	4,310,677	1,966,758	-	6,277,435	
	돼지	돼지열병 단독·마커 혼합백신		3,239,264	5,342,745	5,342,745	-	10,685,490	
		돼지열병 마커백신(제주)		1,980,000	1,979,863	1,979,863	-	3,959,726	
		질병 백신 지원	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1,982,508	1,986,538	973,845	-	2,960,383	
		PCV-2		8,415,540	8,409,540	8,409,540	11,212,719	28,031,799	
	개	광견병		533,272	522,577	247,291	-	769,868	
		진돗개 방역		200,987	200,987	87,138	-	288,125	
	닭	뉴캐슬병(부화장)		3,433,492	3,452,397	3,452,397	-	6,904,794	
		뉴캐슬병(농가)		1,905,690	1,946,933	1,946,933	-	3,893,866	
	오리	바이러스 간염		94,314	92,506	92,506	-	185,012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1,945,575	1,945,575	833,818	-	2,779,393	
		살포실시비(광견병)		376,321	376,321	161,280	-	537,601	
		돼지열병 미끼백신		747,972	796,759	341,468	-	1,138,227	
		살포실시비(돼지열병)		127,495	135,811	58,205	-	194,016	
검 진	소	젖소 결핵(PPD)		292,876	292,876	32,690	-	325,566	
		한·육우 결핵(거레가축)		2,857,829	1,499,934	1,499,934	-	2,999,868	
		브루셀라(MRT)		21,509	7,847	1,102	-	8,949	
		브루셀라(RB)		634,382	745,539	284,720	-	1,030,259	
		소해면상뇌증(BSE 진단키트)		246,000	246,000	246,000	-	492,000	
	사슴	사슴 결핵		111,623	78,132	78,132	-	156,264	
	돼지	오제스키병		45,702	56,666	7,228	-	63,894	
		PED·PRRS 모니터링		80,000	139,425	19,305	-	158,730	
		ASF 모니터링		2,735,266	2,266,404	2,266,404	-	4,532,808	
	닭	추백리(평판)		6,457	6,401	4,325	-	10,726	
		추백리·가금티푸스·마이코플라스마(ELISA)		65,394	55,740	1,638	-	57,378	
		조류인플루엔자		3,212,595	3,359,655	3,359,655	-	6,719,310	
	방 제	소	진드기		40,917	40,917	17,694	-	58,611
		꿀벌	응애류		3,001,688	2,999,063	1,285,313	-	4,284,376
노제마증				1,543,752	1,542,996	661,284	-	2,204,280	
낭충봉아부패병			1,519,115	1,547,213	663,092	-	2,210,305		

구 분	축종	사업명	2025년 국비(당초)	2026년 사업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기 타 내 내 역 사 업		가축 혈청검사·병성감정	1,025,988	979,557	-	-	979,557	
		예방약류 구매 조달 수수료	250,000	250,000	-	-	250,000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	199,950	187,050	187,050	-	374,100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580,000	580,000	580,000	-	1,160,000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	606,000	606,000	606,000	-	1,212,000	
		돼지소모성질병 지도지원사업	858,000	858,000	858,000	1,144,000	2,860,000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	715,000	715,000	715,000	-	1,430,000	
		소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4,612,002	3,542,000	8,264,665	-	11,806,665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비	1,881,384	1,881,384	2,822,076	-	4,703,460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통신료 무선인식장치(GPS) 장착비용 지원	2,079,000	2,079,000	2,079,000	4,158,000	8,316,000	
	765,000		420,000	420,000	-	840,000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 지원	315,000	315,000	315,000	-	630,000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	150,000	150,000	150,000	-	300,000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1,500,000	1,410,000	1,410,000	1,880,000	4,700,000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1,000,000	940,000	940,000	-	1,880,000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300,000	180,000	180,000	240,000	600,000	
		가축질병(양봉) 모니터링 검사	400,000	240,000	240,000	-	480,000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200,000	1,200,000	1,200,000	600,000	3,000,000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3,700,000	13,700,000	13,700,000	-	27,400,000	
		살처분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10,000	10,000	10,000	-	20,000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검사	-	325,000	325,000	-	650,000	
		기타 유보액 등	1,351,898	1,520,972	-	-	1,520,972	
		예방약품 등 지원	79,082,000	78,473,000	71,324,094	19,234,719	169,031,813	
방 역 장 비 등 지 원		방역차량	900,000	900,000	900,000	-	1,800,000	
		소독차량	700,000	580,000	580,000	-	1,160,000	
		시험소 검사장비	2,515,000	2,515,000	2,515,000	-	5,030,000	
		소독장비	50,000	30,000	30,000	-	60,000	
		거점소독·세척시설	신 축	1,200,000	2,000,000	2,000,000	-	4,000,000
	개보수		874,000	600,000	600,000	-	1,200,000	
		검사시설	신 축	300,000	300,000	300,000	-	600,000
	개보수		140,000	70,000	70,000	-	140,000	
		방역장비 등 지원	6,679,000	6,995,000	6,995,000	-	13,990,000	
		소독자원 임차지원	5,035,000	4,279,000	-	-	4,279,000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	160,000	100,000	-	100,000	200,000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방제	1,200,000	1,200,000	-	-	1,200,000		
	소독자원 지원	6,395,000	5,579,000	-	100,000	5,679,000		
	거점센터·공중포집기 운영	1,335,000	1,425,000	621,428		2,046,428		
	공중포집기 설치	90,000	90,000	-	-	90,000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	1,425,000	1,540,000	621,428	-	2,161,428		
	질병관리 우수농장 방역비용	-	170,000	170,000	-	340,000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	-	170,000	170,000	-	340,000		

※ 사업별 배정액은 사업 수행,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긴급방역비·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1. 긴급방역비(210-11, 운영비-재료비)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 조치에 소요되는 진단키트 및 방역복 등 방역물품 구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한 재료 구입 등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등에 필요한 소독약품 등 방역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농가 및 인접지역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소요 비용
 - 기타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단키트 등의 구입과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체계
 - ① 시·도 및 관계기관에서 상기 사유 발생 시 농식품부에 긴급방역비 지원 요청 (구체적인 사유, 소요예산 및 사업비 산출기준 첨부)
 - ② 농식품부에서 시·도 및 관계기관의 요청내용을 검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
 - ③ 농식품부에서 해당 기관에 자금 재배정 및 내역 통보

※ 시·도 및 관계기관에서는 긴급방역비 집행 완료 후 집행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4,000,000	4,000,000	-	-

* 지원비율 : 국비 100%, 배정예산은 반드시 연내 집행 완료(연내 미집행시 차년도 배정 시 반영)

2.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여비(210-01 일반수용비, 220-01 국내여비)

■ 사업목적

- 신규 임용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가축방역 업무 수행능력 배양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임용자
- 지원근거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의 교육비 및 여비 지원
- 지원내용
 -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임용자의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45백만원)
 -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지 배치 등에 소요되는 여비(8백만원)
- 지원방법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비는 직무교육 실시기관(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에 지급하고, 여비는 배치지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개별 지급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53,000	53,000	-	-

* 지원비율 : 국비 100%

3

예방약품 등 지원(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1. 예방·검진·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 예방·검진·기생충구제 약품 종류

※ 약품변경에 따른 단가 상승분, 기타 소요액 증가분 등은 지방비 추가 편성

● 예방약품 : 21종 〈세부내역: 45쪽~58쪽〉

- 소 : 8종(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 설사병, 유행열, 아카바네병, 설사병(주사), 설사병(경구), 부제병, 젖소유방염)
- 돼지 : 5종(돼지열병 단독·마커 혼합백신, 돼지열병 마커백신(제주), 일본뇌염, 유행성 설사병, PCV-2)
- 개 : 2종(광견병, 진돗개 디스토펙·심장사상충)
- 닭 : 1종(뉴캐슬병)
- 오리 : 1종(바이러스간염)
- 야생동물 : 2종(광견병, 돼지열병 미끼예방약)

● 검진약품 : 8종, 11개 품목 〈세부내역: 59쪽~70쪽〉

- 소 : 3종, 5개 품목(우결핵 PPD, 우결핵 감마인터페론, 브루셀라 MRT, 브루셀라 Rose-Bengal, 소해면상뇌증(BSE))
- 사슴 : 1종, 1개 품목(사슴 결핵병)
- 돼지 : 4종, 4개 품목(오제스키병, PED, PRRS, ASF)
- 닭 : 3종, 4개 품목(추백리 평판, 추백리·마이코플라스마 ELISA, 조류인플루엔자)

● 방제약품 : 4종(소-진드기, 꿀벌-응애류·노제마증·낭충봉아부패병)
〈세부내역: 71쪽~76쪽〉

■ 사업물량 배정 및 제품 선정·공급·보관 등 사업실시 요령

① 예방약품

- 물량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농가수·사육두수 및 전염병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배정기준을 결정
 - 광견병은 경기·강원의 경우,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에 대하여는 소·개 사육두수의 100% 공급, 기타 지역은 사육하는 개·소·반려견 순으로 공급
 - '23년~ 현재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구제역, 돼지열병, 뉴캐슬병 및 긴급접종명령에 따른 의무 예방접종 지원은 예외로 함)
- 제품선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 협의회 구성: 방역본부 방역사, 공·개업수의사, 지역축협장, 농가대표 등
 - ※ 정부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제품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비 투입 또는 농가 자부담 조치
- 약품공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부조달계약 단가에 따라 사업계획 물량을 구입한 후,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
 - 공통 : 시·군별 방역관, 공·개업수의사 및 방역보조원 등을 통해 공급하되,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냉장보관시설 준비 시에 한함)
 - 공급대상 : 공동방역 참여농가 및 영세규모 사육농가 우선
 - 뉴캐슬병(단일) 또는 뉴캐슬병 + 전염성기관지염(합제) 예방약
 - 부화장 : 자동분무기 또는 반자동 분무기가 설치되고 축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군에 등록된 부화장에 대해 공급하되, 부화 및 접종실적(분무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실적)을 감안하여 물량 공급
 - 농가 : 농가로 하여금 등록된 부화장에서 발급한 분무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증명서에 기재된 물량을 확인한 후 공급

② 검진약품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별 관내 사육두수 및 전염병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진물량 배정
-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배정된 검진물량에 따라 진단액을 구입(정부조달계약단가에 따라 구입), 대상농가를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성적을 해당 농가 및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이동제한, 살처분 등 방역 관리

③ 방제약품

- 물량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농가수·사육두수 및 전염병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배정기준을 결정
 - '23년~ 현재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에는 유기합성 농약성분이 포함된 방제약품 지원 금지
- 시·도(시·군)은 사업계획에 따라 구제약품을 구입(정부조달계약단가에 따라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개량종 및 재래종 관련협회(한국양봉협회 등) 시·도지회 및 시·군 분회 등과 협의하여 꿀벌 관련 약제 선정* 및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구제 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시·군의 지방비 부담 여부를 확인
 - * 꿀벌응애 방제제 선정 시 2년 연속 동일한 합성화학제 성분※ 이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25년도에는 꿀벌 응애에 저항성이 있다고 보고된 성분(예 : 플루발리네이트, 아미트라즈) 지원 제외]
 - ※ 합성화학제 종류 : 아미트라즈, 시미아졸, 쿠마포스, 플루발리네이트 등
- 시·도지사는 시·군별 꿀벌 방제약품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연 2회: '25.3월·8월 말까지)

④ 가축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사업목적

- 혈청검사·병성감정을 통한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예방접종 확인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주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시험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업량 : 102종, 2,187천두분
 - 소 : 20종, 144천두분(혈청검사 69, 병성감정 75)
 - 돼지 : 30종, 423천두분(혈청검사 299, 병성감정 124)
 - 가금류 : 23종, 560천두분(혈청검사 489, 병성감정 71)
 - 기타 : 29종, 1,060천두분(혈청검사 977, 병성감정 83)
- 사업내용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에 소요되는 진단액류, 재료비 지원
 - ※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3 참고

2.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 사업목적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관련 민간 수의사(공수의 포함)를 통한 시료채취시 인건비 등을 지급

■ 사업개요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160,000	580,000	58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급단가 : 민간 수의사(공수의 포함) 시료채취비는 '수의사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거, 212천원(일 8시간 근로 기준 일당, 시급 분할지급 가능)을 지급하되, 근무지 내 출장여비 2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일액 : 232,000원 = 26,500원(시급) × 8시간 + 20,000원(출장여비)

3.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

■ 사업목적

-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에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활용하여 급증하는 검사물량 신속대응 및 검사능력 확대

■ 사업개요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212,000	606,000	606,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기타 세부사항은 「'26년도 민간 검사기관 AI 정밀검사 사업지침」에 따름

4. 돼지소모성질병 지도 지원

■ 사업목적

- 농가위생·방역 시설 개선 및 방역의식 제고, 농가별 맞춤형 가축질병 관리 컨설팅 실시
- 돼지소모성질병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대외경쟁력 제고
- 실험실 진단을 통해 농장의 정확한 가축전염병 감염 현황을 축주에 제공하여 농장별 전염병 확산 방안 마련 유도

■ 사업개요

- 주 관 : 시·도 및 시·군·구(협조 : 대한한돈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지원대상 : 286개소(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 등 처리업체)
 - ※ 시·도별 : 대구 6, 경기 35, 강원 8, 충북 5, 충남 43, 전북 54, 전남 18, 경북 27, 경남 31, 제주 20, 유보 39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860,000	858,000	858,000	1,144,000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 지원내역 : 자문단 시료채취,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비용
 -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주요역할
 - 혈액, 분변, 사체 장기 등 시료채취를 통한 농가에 감염되어 있는 소모성질병 및 그 외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 시료 진단은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계획을 연계하여 시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동물위생시험소 등)에서 진단요령(검역본부)에 따라 실시

- ※ 실험 결과를 축주, 자문단 및 지자체에 공유하여 지자체는 전염병 진단 실적을 차년도사업 시 자문단 선정에 참고
- 컨설팅 자문단은 방역, 질병, 사양 및 환기 전문가로 구성하여 양돈농가 및 종돈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농가 방역 및 질병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 농가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확대 및 시설개선 방안 등 지도
- 이외 사항은 소모성질병 지도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시행(별도 공문 송부 예정)

5.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

■ 사업목적

- 돼지소모성질병 지도지원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농장단위 질병감염 상황 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효과 향상 및 현장 질병발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방역정책 수립 시 활용

■ 사업개요

- 주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시험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대상 : 돼지소모성질병 지도지원사업 대상자 286개소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430,000	715,000	715,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농가별 연 2회 돼지질병 10종 검사 및 질병실태 조사

6.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등

■ 사업목적

- 한·육우 등을 대상으로 소브루셀라병·결핵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질병 확산을 방지
- ※ 돼지 등 다른 축종의 긴급 수요 발생 시,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기준을 준용하되, 사업량 및 지급단가 등을 조정

■ 사업개요

- 사업물량 : 787천두
- '26년 사업비 : 11,806,667천원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1,806,667	3,542,000	8,264,667	-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70%

- 지급단가 : 두당 15천원(국비 4.5, 지방비 10.5)
- * 부족분 또는 추가소요액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
- ※ 한 가지 질병에 대한 시료 채취 시 두당 10천원(국비 3, 지방비 7)

7.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 사업목적

- 살처분 및 사체처리 현장에 동원된 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법 제49조의2 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 사업개요

- 주관 : 시·도 및 시·군·구
- 지원대상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등
 - 가축사체 처리에 참여한 살처분 업체 인력 및 관계자, 가축의 소유자,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등
 - 자원봉사자 등 그 밖에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매몰한 사람
- 지원내용 : 국·공립병원·민간의료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의료비 지원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000	10,000	1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단가 : 20명×100천원×10일

- 추진체계 : 살처분 이후 심리지원 의료비 소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신청(시·도)
 - 시도별 예산 교부(농식품부) → 신청자 계좌입금(시·군·구)
- ※ 기타 세부사항은 “살처분 참여자 심층치료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8.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비

■ 사업목적

- 동물위생시험소 보조인력 충원으로 효율적인 가축방역 업무 수행

■ 사업개요

- 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에 공무원·계약직 등 방역보조원 일용임금 지원
 - ※ 필요시 배정된 인원 내에서 시·군·구에 방역보조인력 배치 가능
- 사업물량 및 사업비 : 277명/4,703,460천원(국비 1,881,384, 지방비 2,822,076)
- 인건비 지급기준 : 67,920원/일, 16,980천원/연(국비 6,792, 지방비 10,188)
 - ※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인건비 부족분은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집행
 - 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과 수당 등은 지방비로 별도 지원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4,703,460	1,881,384	2,822,076	-

* 지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 보조원 자격 및 채용 우선순위
 - ① 대졸이상 학력의 수의·축산·자연과학 전공자
 - ② 전문대 또는 고졸이상으로 방역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③ 고졸이하 학력 소지자 중 방역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방역보조원 임무
 - 실험실 업무, 농장 시료채취, 소독, 농가 방역지도 및 점검 관리업무 보조
 - 전염병 발생 시 이동제한 통제, 농장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업무 보조

9.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 사업목적

- 가축질병 발생 시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가축방역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축산차량 출입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차량 소유주에 대한 통신료 일부를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
- 사업량 : 70,000대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8,316,000	2,079,000	2,079,000	4,158,000

* 지원비율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월 9,900원/대(국비 2,475, 지방비 2,475, 자부담 4,950)
- 사업추진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도 또는 시·군·구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가입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지자체,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 이동통신사 청구 서류 : GPS 가입내역, 청구서 등
 -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사업과 GPS 통신료 지원 사업 간 수요 상황에 따라 사업량 조정 가능(농식품부 승인 필요)

10.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 사업목적

- 축산차량 GPS 단말기가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단말기 장착비용 지원을 통한 축산시설 방문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차량 GPS 단말기 신규 및 교체 수령자 (축산차량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자)
- 사업량 : 14,000대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840,000	420,000	42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60,000원/대(국비 30,000, 지방비 30,000)
- 사업추진
 -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전원 방식으로 설치하고 신규 및 이전 설치 비용을 단말기 설치업체(이통사 또는 단말기 제조업체 지정)에 지급
 - 단말기 설치업체는 매월 말 시·도 또는 시·군·구별 GPS 단말기 설치내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자체는 다음 월 10일까지 업체에 설치비용 지급
 - ※ 설치업체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설치 증빙사진 등
 -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사업과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 간 수요 상황에 따라 사업량 조정 가능(농식품부 승인 필요)

11.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설 유지비용 일부 지원
 - ※ 가축전염병 진단 등을 위한 실험실의 경우 일정한 온·습도, 압력 유지와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관리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검사시설을 보유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량 : 21개소(울산 1, 세종 1, 경기 3, 강원 2, 충북 2, 충남 2, 전북 2, 전남 1, 경북 2, 경남 4, 제주 1)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630,000	315,000	315,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국비 15,000, 지방비 15,000)
- 사업추진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검사실 유지·보수 전문용역기관과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사업 추진에 따라 비용 집행
 - ※ 유지·보수비가 부족한 시·도에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추진

12.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

■ 사업목적

- 방역훈련을 통하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훈련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과거 가축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철새 도래지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도(시·군·구) 또는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시·도(시·군·구) 등
- 사업량 : 20개소(경기 2, 강원 2, 충북 1, 충남 2, 전북 2, 경북 1, 경남 1 제주 1, 유보 8)
- '25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00,000	150,000	15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5,000천원/건(국비 7,500, 지방비 7,500)
- 사업추진 : 시·도지사는 5월까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여 보고하고(시·도 직접 실시 가능),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한 뒤 결과 보고

※ 시·도 및 시·군·구가 합동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할 경우 2회분 예산 집행 가능

13.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 사업목적

- 가금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금농가의 구조 및 체질 개선을 통해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 예방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1~12월(연중)
- 주관 : 시·도 및 시·군·구
- 협조 :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조류질병과), 양계·오리·육계·산란계·토종닭협회, 닭고기·계란자조금위원회
- 자문단수 : 72개반, 152명(질병 79명, 사양 73, '25.12월 기준)
- 지원대상 : 470개소(오리 및 닭 사육농가)
 - * 지원대상 농가 : 인천 5, 울산 1, 경기 76, 강원 10, 충북 6, 충남 43, 전북 129, 전남 70, 경북 67, 경남 52, 제주 11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비용
 -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4,700,000	1,410,000	1,410,000	1,880,000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10백만원/개소(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 주요역할
 - 질병 및 사양 전문가로 구성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농가별 자율 방역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선 방안 지도

14.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 사업목적

-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농장단위 질병감염 상황 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효과 극대화 및 현장 질병 발생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역정책 수립 시 활용

■ 사업개요

- 주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시험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대상 :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대상자 470호
- '25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880,000	940,000	94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농가별 연 5회 가금질병(닭 11종, 오리 4종) 검사 및 질병실태 조사

15.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 사업목적

- “월동 꿀벌 피해 조기회복 및 재방발지 대책”(23.3.16.)의 일환으로 양봉농가의 꿀벌질병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
 - 농가 질병·사양관리 컨설팅, 응애 모니터링 및 내성 응애 조사·분석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1~12월(연중)
- 주관 : 시·도 및 시·군·구

- 협조 :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세균질병과),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대한 꿀벌수의사회
- 자문단수 : 10개반, 13명(질병 13명, '25년 사업참여 자문단 기준)
- 지원대상 : 양봉농가 150개소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로 양봉장 기준의 주소지에 등록된 농가에 한함
 - * 지원대상 농가 : 경기 4, 강원 2, 충북 10, 전북 21, 전남 4, 경남 28, 유보 81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비용
 -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600,000	180,000	180,000	240,000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10백만원/개소(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 주요역할
 - 질병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응애 등 꿀벌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참여 농가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처방제도 안내 및 올바른 약품 구입·사용 방법 등 지도, 체계적 사양관리 실시

16. 가축질병(꿀벌) 모니터링 검사

■ 사업목적

-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대상 농가에 대한 농장 단위 꿀벌응애 등 질병감염 상황 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효과 극대화 및 현장 질병 발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꿀벌방역 관리 시 활용

■ 사업개요

- 주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시험소)
- 대상 :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대상농가 150호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480,000	240,000	24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농가별 연 3회 이상 꿀벌질병(14종) 및 응애 감염도·내성 검사와 질병실태 조사

17.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 사업목적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달걀 등 축산물 안전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1~12월
- 주 관 : 시·도(시·군·구)
- 지원대상 : 12개 시·도 150개소 이상(종계 및 산란계 농가)
 - ※ 지원대상 농가 : 인천 3, 울산 1, 세종 10, 경기 27, 강원 11, 충북 11, 충남 16, 전북 10, 전남 13, 경북 22, 경남 17, 제주 9
- 지원내용
 - 종계 및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닭진드기 방제, 층란제거 등의 목적으로 청소·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지원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000,000	1,200,000	1,200,000	600,000

* 지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원단가 : 5만수 사육 시 농가별 20백만원 이하(국비 8, 지방비 8, 자부담 4)

※ 지원제외 대상 규모 : 20만수 초과 종계 및 산란계 농가

18.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 사업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농장초소 포함) 운영과 소독(거점소독시설에서의 소독 포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 확산 방지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법 제50조제2항에 지자체가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원대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특정 시·군에서 검출되어 구제역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상황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
- ※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결정에 따름

- 지원내역 : 통제초소 운영비용(설치·유지비, 방역용품·인건비 등) 및 소독비용

- 지원단가 : 1개소 × 10.5백만원 × 12개월 × 50% = 63백만원
(지자체 운영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량은 달라질 수 있음)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7,400,000	13,700,000	13,70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체계

- 소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 지출한도액 배정(농식품부)
- 가축전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조치로 통제초소 설치에 소요되는 운영비 추정액의 50%까지 우선 지급

※ 기타 세부사항은 “통제초소 운영지원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고

19.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검사

■ 사업목적

-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동물단계 예찰을 강화하여 질병의 조기 확인 및 인체감염 피해를 사전 차단

■ 사업내용

- 주요 인수공통전염병(포유류 AI, 큐열)에 대한 동물단계 예찰을 통해 질병 발생 피해 예방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650,000	325,000	325,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4

방역장비 등 지원(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지자체 방역시설·장비 등 지원

■ 사업목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의 노후한 가축방역 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가축방역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구
- 지원품목 : 방역차량, 소독차량, 소독장비, 검사장비, 거점세척·소독시설 등
- 사업량 : 대·개소(방역차량 45, 소독차량 29, 소독장비 6, 검사장비 155, 거점 세척·소독시설(신축 10, 개보수 20), 검사실(신축 1, 개보수 1)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3,990,000	6,995,000	6,995,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부족 예산은 지방비를 추가 확보)

● 지원단가

구분	지원품목	지원단가	국비 및 지방비(백만원)
1	방역차량	40백만원/대	국비 20, 지방비 20
2	소독차량	40백만원/대	국비 20, 지방비 20
3	시험소 검사장비	품목별 상이	별첨2 참고
4	소독장비	10백만원/대	국비 5, 지방비 5
5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축	800백만원/개소 (사업 연도별로 연부율 차이 있음)	국비 400, 지방비 400
	거점 세척·소독시설 개보수	60백만원/개소 (시설 상황 및 개보수 내용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있음)	국비 30, 지방비 30
6	가축전염병 검사실 신축	6,000백만원/개소(3개년 사업)	국비 3,000, 지방비 3,000
7	가축전염병 검사실 개보수	140백만원/개소	국비 70, 지방비 70

● 사업 추진체계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구는 사업물량 범위 내에서 조달계약 등을 통해 가축방역 시설·장비 구입
- 검사시설 개보수 외 장비 등의 유지·보수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나. 시설·장비별 사업개요

1. 방역차량 지원

-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하거나 신규로 방역차량을 구입하여 방역사업에 활용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구
 - 사업량 : 45대(인천 2, 경기 14, 강원 5, 충북 5, 충남 3, 전북 3, 전남 3, 경북 3, 경남 2, 제주 1, 유보 4)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800,000	900,000	90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40,000천원/대(국비 20,000, 지방비 20,000)

※ 차량 구입비용이 4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구입

2. 소독차량 지원

-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독차량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소독차량을 구입하여 농가 소독 지원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구
- 사업량 : 29대(경기 5, 충북 1, 충남 4, 전북 1, 경북 3, 경남 1, 제주 1, 유보 13)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160,000	580,000	58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40,000천원/대(국비 20,000, 지방비 20,000)

※ 차량 구입비용이 4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구입

3.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장비 지원

- 사업목적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진하는 가축전염병 검사,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진단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량 : 155대(서울 5, 부산 1, 대구 8, 인천 8, 광주 3, 대전 3, 울산 1, 경기 19, 강원 12, 충북 17, 충남 8, 전북 18, 전남 21, 경북 9, 경남 14, 제주 8)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5,030,000	2,515,000	2,515,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장비 구입 시 국비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가축질병 검사와 관련이 없는 장비는 구입 불가

4. 소독장비

- 사업목적 : 질병 발생 시 또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등 통제초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장비를 공급·활용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도 또는 시·군·구 내 가축방역시설(축산농가는 제외)
 - 사업량 : 6대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60,000	30,000	3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0,000천원/대(국비 5,000, 지방비 5,000)

※ 소독장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집행

5. 거점 세척·소독시설

- 사업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위한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지원

- 사업개요

- 대상 :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 또는 도축장·사료공장·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물 등
- 사업량 : (신규) 10개소, (개보수) 29개소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5,200,000	2,600,000	2,60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신규설치 : 800백만원/개소(국비 400, 지방비 400, 총액 기준)
 - * 1년차(연부율 30%) 각 120백만원 5개소(홍성, 부여, 장성, 칠곡, 성주)
 - 2년차(연부율 70%) 각 280백만원 5개소(충주, 진천, 공주, 군산, 영양)

- 개보수 : 국비 50%, 지방비 50%

※ 거점세척·소독시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집행

※ 기타 세부사항은 “26년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6.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설 신축 비용 지원
- ※ BL3 수준으로 신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사업량 : 신축 1개소(경남)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신 축	600,000	300,000	30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3년차 사업으로 2026년은 1년차 300백만원 지원(연부율 10%, 20%, 70%)

※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집행

7.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사업량 : 개보수 1개소(충남)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개보수	140,000	70,000	7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개보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집행

5

소독자원 지원

1. 소독자원 임차지원(320-01, 민간경상보조)

■ 사업목적

-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등 소독자원 임차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1~12월
 - 특별방역기간 및 질병 발생 시기를 중심으로 소독자원 임차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제
- 사업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사업량 시·군별 배정
 - 시·군 : 각 관할지역의 소독자원 임차차량 관리감독 및 지원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 사업 수행업체 계약 및 정산
- 지원내용
 -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발생상황을 대비하여 소독자원 임차지원(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 사업량(누계) : 광역방제기 300대, 방역차 1,000대 등
 - 임차차량 수요에 따라 소독자원 품목 및 대수 변경가능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4,279,000	4,279,000	-	-

* 지원비율 : 국비 100%

■ 기관별 세부 추진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에 해당연도 보조금 교부 및 통보
 -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시·군의 소독자원 운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필요한 임차 소독자원 수요를 조사하고 결과를 시·군 등에 배정 및 통보
- 시·군
 - 소독자원 운용을 위한 사전준비(소독제, 물 공급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등), 소독자원 운전자의 지도 감독
 - 담당 공무원은 관할지역 임차 소독자원의 일일 소독 농가,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 등 소독 동선을 특정하여 다른 소독자원(공방단, 자체 소독자원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작업 지시
 - 담당 공무원은 소독자원 임차차량 운전자가 제출하는 방역일지 및 KAHIS 소독자원 자동집계 시스템을 통해 작업지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틀림이 없을 경우 서명을 실시
- 농협경제지주
 -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평시방역대책기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사업 수행업체를 입찰, 수의계약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 및 계약
 - 사업 수행업체의 월별 소독실적에 따라 사업비 지급
 - * 소독실적 증빙서류 확인 후 10일 이내 사업비 지급

■ 사업 추진점검

- 시·군과 농협경제지주는 사업 수행업체의 특정지역 소독현장을 반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지도·점검 실시
 - * 소독자원 임차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부착 등 확인 시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2.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320-07, 민간자본보조)

■ 사업목적

- 민간 방역기관인 지역축협에 소독차량 교체 지원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1~12월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사업시행 : 농협경제지주
- 지원내용
 - 민간 방역 기관인 지역 축협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독차량 교체 지원
- 사업량 : 5대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0,000	100,000	-	100,000

* 지원비율 : 국비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40,000천원/대(국비 20,000, 자부담 20,000)

※ 지원비율을 준수하여 대당 최대 20,000천원까지 국비 지원 가능하고,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집행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을 농협경제지주에 시달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되, 지원대상 소독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3.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방제(320-01, 민간경상보조)

■ 사업목적

- 렘피스킨 재발 방지, 아프리카마역 및 블루팅병 등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시군 및 항만 대상으로 매개곤충 방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4~11월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사업시행 : 농협경제지주
- 지원내용
 - 신종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한 업체를 통해 고위험 시군 및 항만 대상 매개체(침파리 등) 방제 추진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200,000	1,200,000	-	-

* 지원비율 : 국비 100%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을 농협경제지주에 시달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승인 후 그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검역본부는 사업 세부계획에 따라 방제차량 및 운전자의 항만 출입 등 협조

6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예찰

1. 거점 센터·공중 포집기 운영(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매개곤충 채집·검사 등으로 병원체의 국내 잔존 여부 및 신규 유입 우려 가축전염병의 유입 여부를 감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4~11월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제
- 사업시행
 - 경기·강원·충남·전북은 소(牛) 농가 대상 매개곤충 채집·분류·검사 등 추진
 - 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는 공중 포집기를 통해 채집한 매개곤충 채집·분류·검사 등 추진
- 지원내용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71,428	1,450,000	621,428	-

* 지원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 추진체제
 - 농식품부는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예찰 사업 실시요령 시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매개곤충 채집·분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민간기관과 용역계약 또는 자체적으로 사업 실시

2. 공중 포집기 설치(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매개곤충 채집·검사 등으로 병원체의 국내 잔존 여부 및 신규 유입 우려 가축전염병의 유입 여부 감시를 위해 위험지역에 포집기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4~11월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 사업시행 : 렴피스킨 발생현황, 매개곤충 유입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강원, 전남, 제주 등 관할 시·군·구 내 공중포집기 설치
- 사업량 : 강원 1개소, 전남 1개소, 제주 1개소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90,000	90,000	-	-

* 지원비율 : 국비 100%

- 사업 추진체계
 - 농식품부는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예찰 사업 실시요령 시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관련 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공중 포집기 설치

7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

1.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방역비용 지원(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목적

- 방역 요소별 시설 및 관리 수준 등을 지수·등급화하여 농장 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농장에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 자율방역 의식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 지원대상 :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에 해당하는 산란계 농장
- 지원내용 : 우수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인센티브(일회용 난좌, 소독제 등)
※ 세부 내용은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26년 1분기)
- '26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40,000	170,000	17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추진체계

- 농식품부는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수립, 예산 편성,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사업 총괄
- 시·도는 시·군·구 보조금 예산 교부 및 사업 홍보, 사업 운영관리 감독
- 시·군·구는 신청접수 및 홍보, 인센티브 지원 관련 보조금 집행·정산 등 사업 운영관리 실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평가사 교육, 사업 홍보, 농장 평가 수행 및 신청농장·지방정부에 결과 통보

8

사업별 세부 시행내역

① 가축방역비 산출단가

(단위 : 원)

구분	축종	세부사업명		약품비			재료비			국비 (소계)	지방비 (소계)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예방	소	질병 백신 지원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바이러스설사병	104	44	148	-	50	50	104	94	198
			유행열	676.9	290.1	967	-	50	50	676.9	340.1	1,017
			아카바네병	1,140	488	1,628	-	50	50	1,140	538	1,678
			설사병(주사제)	1,834	786	2,620	-	50	50	1,834	836	2,670
			설사병(경구용)	2,772	1,188	3,960	-	50	50	2,772	1,238	4,010
			부제병	8,050	3,450	11,500	-	-	-	8,050	3,450	11,500
			젖소유방염	2,250	2,250	4,500	-	-	-	2,250	2,250	4,500
				18,920	18,920	37,840	-	-	-	18,920	18,920	37,840
	돼지	돼지열병	단독마커백신	200	200	400	-	-	-	200	200	400
			마커백신(제주)	1,512.5	1,512.5	3,025	-	-	-	1,512.5	1,512.5	3,025
		일본뇌염	돼지유행성설사병	139	60	199	-	50	50	139	110	249
			돼지췌코바이러스	3,360	1,440	4,800	-	50	50	3,360	1,490	4,850
				600	600	1,200	-	-	-	600	600	1,200
	개	광견병	진돗개 디스토퍼·심장사상충	1,120	480	1,600	-	50	50	1,120	530	1,650
				9,940	4,260	14,200	-	50	50	9,940	4,310	14,250
	닭	뉴캐슬병(부화장)	뉴캐슬병(농가)	4(2)	4(2)	8(4)	-	-	-	2(4)	2(4)	4(8)
				2	2	4	-	-	-	2	2	4
	오리	바이러스간염		33	33	66	-	-	-	33	33	66
	야생 동물	광견병(미끼예방약)	광견병(미끼예방약)	2,171.4	930.6	3,102	420	180	600	2,591.4	1,110.6	3,702
			돼지열병(미끼예방약)	2,464	1,056	3,520	420	180	600	2,884	1,236	4,120
검진	소		젖소결핵(PPD)	1,194	-	1,194	150	150	300	1,344	150	1,494
			한·육우결핵(감마인터페론)	3,350	3,350	6,700	450	450	900	3,800	3,800	7,600
			브루셀라(MRT)	306	-	306	50	50	100	356	50	406
			브루셀라(RB)	253	-	253	100	100	200	353	100	453
			브루셀라(RB-제주)	230	-	230	1,600	6,400	8,000	1,830	6,400	8,230
			BSE 진단키트(1SET)	-	-	-	6,000,000	6,000,000	12,000,000	6,000,000	6,000,000	12,000,000
	돼지	사슴	사슴 결핵(PPD)	19,300	19,300	38,600	18,500	18,500	37,000	37,800	37,800	75,600
			오제스키병	1,368	-	1,368	200	200	400	1,568	200	1,768
			PED·PRRS PED	15,000	-	15,000	1,100	500	1,600	16,600	500	17,100
			모니터링 PRRS	12,000	-	12,000	4,000	4,000	8,000	16,000	4,000	20,000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	-	-	14,000	14,000	28,000	14,000	14,000	28,000
	닭		추백리(평판)	24	-	24	50	50	100	74	50	124
			추백리·마이코플라스마(ELISA)	1,653	-	1,653	50	50	100	1,703	50	1,753
			조류인플루엔자	12,000	12,000	24,000	3,000	3,000	6,000	15,000	15,000	30,000
방제	소	꿀벌	진드기	37	16	53	-	-	-	37	16	53
			응애류	875	375	1,250	-	-	-	875	375	1,250
			노제마증	756	324	1,080	-	-	-	756	324	1,080
			낭충봉아부패병	936.6	401.4	1,338	-	-	-	936.6	401.4	1,338

구 분	국 비	지 방 비	계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	129,000	129,000	258,000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116,000	116,000	232,000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민간 병성감정기관 AI 검사 지원)	151,500	151,500	303,000
돼지소모성질병 지도 지원사업	3,000,000	3,000,000	6,000,000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	2,500,000	2,500,000	5,000,000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보정비	4,500	10,500	15,000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6,792,000	10,188,000	16,980,000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500,000	500,000	1,000,000
가축방역 가상훈련(CPX)	7,500,000	7,500,000	15,000,000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29,700	29,700	59,400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30,000	30,000	60,000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63,000,000	63,000,000	126,000,000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	15,000,000	15,000,000	30,000,000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2,000,000	2,000,000	4,000,000
가축질병(양봉) 모니터링 검사	1,600,000	1,600,000	3,200,000
방역차량	20,000,000	20,000,000	40,000,000
소독차량	20,000,000	20,000,000	40,000,000
소독장비	5,000,000	5,000,000	10,000,000
거점소독·세척시설(신축, 2개년, 연부율 3:7)	400,000,000	400,000,000	800,000,000
거점소독·세척시설(개보수)	30,000,000	30,000,000	60,000,000
가축질병 검사실(신축, 3개년, 연부율 1:2:7)	3,000,000,000	3,000,000,000	6,000,000,000
가축질병 검사실(개보수)	70,000,000	70,000,000	140,000,000
거점센터 운영	162,500,000	69,643,000	232,143,000
공중포집기 운영	37,730,000	16,170,000	53,900,000
공중포집기 설치	30,000,000	-	30,000,000

2 예방약품 공급

● 소 질병 백신 지원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 대상 ○ 과거 발생지역·소규모농가(탄저·기종저), 소규모 농가·밀집 사육지역(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소규모농가(아카바네병, 부제병))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양축농가의 소는 농가 자율 구매 후 접종지도 ○ 번식·소규모농가(설사병 주사제, 바이러스성 설사병), 번식농가(설사병 예방 경구 투여용; 설사병 주사제를 지원한 농가는 공급 제외) ※ 브루셀라병 발생 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부산	1.238	2,771	1,240	4,011	
대구	27.639	46,663	21,236	67,899	☐ 접종 대상 및 기간 : 탄저·기종저(6개월 이상 소, 임신말기 어미 암소 제외/연중), 전염성비기관염(비육소 중심/연중), 유행열(6개월 이상 소, 3~4월 모기 출현 전), 아카바네병(가임 암소 한우, 젖소/3~4월 모기 출현 전), 설사병 주사제(한·육우, 젖소의 가임 암소/분만 2주·4주 전 각 1회), 송아지 설사병 예방·면역증강제(경구투여용, 한·육우, 젖소의 송아지/초유 급여 전후, 동물용 의약품 제조 품목 신고한 제품에 한하며 용법 및 용량 준수), 부제병(젖소*), 바이러스성 설사병(3개월 이상 소, 2회 접종), 젖소 유방염(6개월령 이상 젖소, 분만 전후 2회 접종) * 방목하는 경우 가능한 방목 전에 접종; 필요한 접종 시기별로 농가에 약품을 공급하거나 시·군(또는 시험소)에 약품 보관 후 접종 필요시 농가에 공급 ** 사육두수 당 2회 백신접종이 가능한 물량을 배부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인천	10.195	25,568	11,377	36,945	
광주	2.025	4,462	1,995	6,457	☐ 소요경비 ○ 탄저·기종저 혼합 : 두당 198원 (국비 104, 지방비 94) - 약품비 : 두당 148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 설사병 혼합: 두당 1,017원(국비 676.9, 지방비 340.1) - 약품비 : 두당 967원(국비 70%, 지방비 30%)
대전	7.004	8,501	3,974	12,475	
울산	11.689	24,353	10,972	35,325	☐ 소요경비 ○ 탄저·기종저 혼합 : 두당 198원 (국비 104, 지방비 94) - 약품비 : 두당 148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 설사병 혼합: 두당 1,017원(국비 676.9, 지방비 340.1) - 약품비 : 두당 967원(국비 70%, 지방비 30%)
세종	17.035	39,307	17,568	56,875	
경기	343.844	848,059	378,265	1,226,324	☐ 소요경비 ○ 탄저·기종저 혼합 : 두당 198원 (국비 104, 지방비 94) - 약품비 : 두당 148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 설사병 혼합: 두당 1,017원(국비 676.9, 지방비 340.1) - 약품비 : 두당 967원(국비 70%, 지방비 30%)
강원	72.060	195,799	86,778	282,577	
충북	95.215	177,870	80,579	258,449	☐ 소요경비 ○ 탄저·기종저 혼합 : 두당 198원 (국비 104, 지방비 94) - 약품비 : 두당 148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 설사병 혼합: 두당 1,017원(국비 676.9, 지방비 340.1) - 약품비 : 두당 967원(국비 70%, 지방비 30%)
충남	237.700	513,993	230,954	744,947	
전북	236.068	489,283	223,493	712,776	☐ 소요경비 ○ 탄저·기종저 혼합 : 두당 198원 (국비 104, 지방비 94) - 약품비 : 두당 148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 설사병 혼합: 두당 1,017원(국비 676.9, 지방비 340.1) - 약품비 : 두당 967원(국비 70%, 지방비 30%)
전남	353.956	530,307	244,983	775,290	
경북	834.873	934,550	441,674	1,376,224	☐ 소요경비 ○ 탄저·기종저 혼합 : 두당 198원 (국비 104, 지방비 94) - 약품비 : 두당 148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 설사병 혼합: 두당 1,017원(국비 676.9, 지방비 340.1) - 약품비 : 두당 967원(국비 70%, 지방비 30%)
경남	215.877	445,034	200,900	645,934	
제주	9.347	24,157	10,770	34,927	☐ 소요경비 ○ 탄저·기종저 혼합 : 두당 198원 (국비 104, 지방비 94) - 약품비 : 두당 148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 설사병 혼합: 두당 1,017원(국비 676.9, 지방비 340.1) - 약품비 : 두당 967원(국비 70%, 지방비 30%)
계	2,475.765	4,310,677	1,966,758	6,277,435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소 유행열 : 두당 1,678원 (국비 1,140, 지방비 538) - 약품비 : 두당 1,628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소 아카바네병: 두당 2,670원 (국비 1,834, 지방비 836) - 약품비 : 두당 2,620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소 설사병(주사제): 두당 4,010원 (국비 2,772, 지방비 1,238) - 약품비 : 두당 3,960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두당 소요경비는 지자체별 예산확보 현황을 고려, 2종 또는 3종 혼합백신 중에서 선택 가능 ○ 소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경구용) : 두당 11,500원(국비 8,050, 지방비 3,450) - 국비 70%, 지방비 30% ○ 소 부제병 : 4,500원(국비 2,250, 지방비 2,250) - 국비 50%, 지방비 50% ○ 젖소 유방염 : 37,840원(국비 18,920, 지방비 18,920) - 국비 50%, 지방비 50% ※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연고제) 등으로 대체 가능 □ 실시요령 ○ 시도 또는 시군에서 관련기관 협의회를 통해 품목 관련 제품을 선정하되, 지원 품목이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사업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과거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에 집중 배정(탄저·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 아카바네병) ○ 기 발생지역과 전년도 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소 우선 공급(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 모기 출현 전에 예방접종 완료 지도(유행열*, 아카바네병**)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 6개월 이상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전년도 예방접종한 소 1회 보강접종) ** 1회 접종하되 전년도 감염우 접종 대상에서 제외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번식농가 수, 번식우 사육두수 및 브루셀라병·설사병·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 상황 고려하여 조정, 대상축에 대하여는 1, 2차 접종을 시행하여 예방접종 효과 증대(설사병 주사제,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 지원 대상 농가에서 연간 생산되는 송아지 전 두수분 추정하여 공급(설사병 예방 경구투여용)

● 돼지열병 단독·마커 혼합백신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접종대상 : 모돈, 자돈 종돈·번식돈 등 ☐ 접종기간 : 연중 ☐ 접종시기 ○ 자돈 : 55~70일령 ○ 모돈 : 종부 2~4주전 ○ 종돈 번식돈 : 연 1회 ☐ 소요경비 : 두당 400원(약품비) ○ 국비 : 200원, 지방비 : 200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예방약은 지원하되, 예방접종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예방접종명령 조치) ○ 제주도는 제외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의무 철저 이행 ※ 예방약 공급 시 모든 사육규모에 따라 회전율 등을 기준으로 공급
부산	14	2,800	2,800	5,600	
대구	100	20,000	20,000	40,000	
인천	140.75	28,150	28,150	56,300	
광주	40	8,000	8,000	16,000	
대전	1.6	320	320	640	
울산	59	11,800	11,800	23,600	
세종	218	43,600	43,600	87,200	
경기	5,078	1,015,600	1,015,600	2,031,200	
강원	1,500	300,000	300,000	600,000	
충북	1,913	382,600	382,600	765,200	
충남	5,439	1,087,800	1,087,800	2,175,600	
전북	3,168.7	633,740	633,740	1,267,480	
전남	2,700	540,000	540,000	1,080,000	
경북	3,641.68	728,335	728,335	1,456,670	
경남	2,700	540,000	540,000	1,080,000	
제주	-	-	-	-	
계	26,713.73	5,342,745	5,342,745	10,685,490	

● 돼지열병 마커백신(제주)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제주도 ☐ 접종대상 : 제주도 양돈농가 ☐ 접종 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3,025원 (국비 1,512.5, 지방비 1,512.5) ☐ 약품비 : 두당 3,025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마커백신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 - (1년차) 모돈·자돈 일괄 접종 후 모돈 1회 (분만 3~5주전) 추가접종 - (2년차 이후) 모돈 1회(분만 3~5주전), 자돈 1회(6~9주)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1,309	1,979,863	1,979,863	3,959,726	
계	1,309	1,979,863	1,979,863	3,959,726	

● 돼지 질병 백신 지원(일본뇌염, 돼지 유행성설사병)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선정 및 물량배정 요령 ☐ (일본뇌염) 인구 조밀 지역 및 도시 인근 양돈장의 모든 우선 접종 실시 ☐ (PED) PED 검사농가 우선 선정, 과거 발생 및 인접 시군, 1,000두 미만 사육 소규모농가 차우선 선정 ※ 단, 한 농가 최대 500개 지급하되, 모든 임신 기간 동안 두당 최소 2회 이상 접종하도록 지도 ☐ 접종대상 : (일본뇌염) 모든, (PED) 임신 모든 ☐ 접종기간 ☐ (일본뇌염) 3~4월(모기 출현전), ☐ (PED) 연중 ☐ 접종방법 ☐ (일본뇌염) '25년 여름을 경과한 돼지는 1회 접종 - 기타 돼지는 1차 접종 후, 4주째 2차 보강 접종 ※ 모기 출현 전에 예방접종 완료 ☐ (PED) 지원하는 백신 제조사의 용법, 용량을 준수하도록 지도 ※ 국내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 맞춰 G2b타입 기반 백신 사용 ※ 모든 분만전 최소 2회 이상 접종 등 ☐ 소요경비 : ☐ (일본뇌염) 두당 249원(국비139, 지방비 110) ☐ (PED) 1회당 4,850원 (국비 3,360, 지방비, 1,490) - 약품비(두당) : 일본뇌염 199원, PED 4,800원 (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두당) : 50원 (지방비 100%) ※ 지역별 질병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물량조절 가능
부산	2.681	1,548	798	2,346	
대구	17.82	18,582	8,860	27,442	
인천	7.916	13,298	6,097	19,395	
광주	3.243	3,063	1,476	4,539	
대전	0.120	147	69	216	
울산	9.238	5,202	2,695	7,897	
세종	21.577	11,832	6,158	17,990	
경기	426.065	383,664	185,870	569,534	
강원	101.476	64,208	32,628	96,836	
충북	123.836	54,386	29,548	83,934	
충남	586.759	709,804	333,708	1,043,512	
전북	277.947	187,533	94,368	281,901	
전남	223.241	161,643	80,516	242,159	
경북	270.519	161,161	82,694	243,855	
경남	244.764	144,168	74,115	218,283	
제주	115.767	66,299	34,245	100,544	
계	2,432.969	1,986,538	973,845	2,960,383	

● 돼지 쉼코바이러스(PCV-2)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	-	-	-	-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 접종대상 : 모든 또는 자돈 ☐ 접종기간 : 연중 ☐ 접종방법 ○ 모돈 : 종부 3~4주전 ○ 자돈 : 3주령(21일령) ☐ 소요경비 : 두당 2,000원 ○ 국비 600, 지방비 600, 자부담 800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 실시요령 ○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가 및 동물약품판매 업소 등에 통보 ○ 농가에서 연중 백신을 구입하고, 시· 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지급 ※ 방역본부에서 시료채취 시 비협조 농가는 다음 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산	7.02	4,212	4,212	5,616	14,040	
대구	102.38	61,428	61,428	81,904	204,760	
인천	33.50	20,100	20,100	26,800	67,000	
광주	12.97	7,779	7,779	10,372	25,930	
대전	-	-	-	-	-	
울산	52.37	31,419	31,419	41,892	104,730	
세종	131.90	79,140	79,140	105,520	263,800	
경기	2,603.10	1,561,857	1,561,857	2,082,476	5,206,190	
강원	530.53	318,318	318,318	424,424	1,061,060	
충북	747.00	448,197	448,197	597,596	1,493,990	
충남	2,853.03	1,711,819	1,711,819	2,282,425	5,706,063	
전북	1,579.97	947,982	947,982	1,263,976	3,159,940	
전남	1,515.86	909,516	909,516	1,212,688	3,031,720	
경북	1,671.59	1,002,954	1,002,954	1,337,272	3,343,180	
경남	1,459.56	875,738	875,738	1,167,650	2,919,126	
제주	715.14	429,081	429,081	572,108	1,430,270	
계	14,015.92	8,409,540	8,409,540	11,212,719	28,031,799	

● 광견병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63	70,560	33,390	103,950	□ 지원대상 : 개 소유자 및 소 사육농가 ※ 개와 소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부산	13	14,560	6,890	21,450	
대구	7.206	8,071	3,819	11,890	□ 접종대상 ○ 발생상재지 : 개 및 소 ○ 비발생지역 : 개 우선
인천	17.98	20,138	9,530	29,668	
광주	3	3,360	1,590	4,950	□ 접종기간 및 물량 ○ 1차(춘계 3~4월) : 70% ○ 2차(추계 9~10월) : 30%
대전	3.5	3,920	1,855	5,775	
울산	4	4,480	2,120	6,600	□ 소요경비 : 두당 1,650원 (국비 1,120, 지방비 530) ○ 약품비 : 두당 1600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세종	2	2,240	1,060	3,300	
경기	170	190,400	90,100	280,500	□ 실시요령 ○ 경기, 강원외 휴전선 인접 시군 및 과거 발생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와 소 우선 접종 ※ 그 외 지역은 1차 접종기간동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 개체(개)에 한해 접종하고, 2차 기간동안은 동물등록 개체(개)를 우선 접종
강원	45	50,400	23,850	74,250	
충북	20.4	22,848	10,812	33,660	○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 우선 접종 실시
충남	19	21,280	10,070	31,350	
전북	23	25,760	12,190	37,950	○ 기타 인구 조밀지역 우선 실시
전남	15	16,800	7,950	24,750	
경북	24	26,880	12,720	39,600	○ 예방주사 일제접종기간을 설정, 공고하고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예방접종 후, 소유주에게 증명서 발급 ○ 동물병원에 공급된 백신이 남는 경우, 물량이 부족한 병원·농가 등으로 재배분
경남	31.5	35,280	16,695	51,975	
제주	5	5,600	2,650	8,250	
계	466.586	522,577	247,291	769,868	

● 진돗개 디스토퍼(DHPPL)·심장사상충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진도군에서 진돗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접종시기 ○ 디스토퍼(DHPPL) 접종 - 1차(5~6주령), 2차(8~9주령), 3차(12~13주령) - 매년 추가접종 1회 ○ 심장사상충 구제 : 연 6회(2차) □ 실시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1회 두당 14,250원 (국비 9,940, 지방비 4,310) ○ 약품비 : 14,200원(디스토퍼 2,050, 심장사상충 구충제 4,050원×3회) - 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실시요령 ○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예방주사 시 개체별 건강진단을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농가 서비스 제공 ○ 영세농가 사육 개 우선 접종 ※ 부족 물량은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접종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20.22	200,987	87,148	288,135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계	20.22	200,987	87,148	288,135	

● 뉴캐슬병

- 부화장(뉴캐슬병(단일) 또는 뉴캐슬병+전염성기관지염(합제))

(단위 : 천수,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전국 시군에 신고된 부화장 ☐ 자동·반자동 분무기 설치 부화장에 한함 ☐ 접종대상 : 부화 1일령 초생추 ☐ 접종방법 : 분무용(50~100 μ m) 예방접종 ☐ 접종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두당 8/4원(합제/단일) 이하(약품비) ☐ 국비 : 4(2)원, 지방비 : 4(2)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시·도 또는 시군에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 선정 및 공급 ※ 제품은 뉴캐슬병+전염성기관지염(합제) 또는 뉴캐슬병(단일) 중 택일 가능 ○ 부화장 지원물량이 남을 경우, 농가 공급용 예방약 구입 지원 가능 ○ 부화장 경영자 준수사항 - 부화실적·예방약 수불·예방접종증명서 발급대장 작성 비치 - 사용한 예방약 공병 보관 - 병아리 수송상자 등에 사용한 예방약 및 접종일시 등을 기록하여 양계농가가 추가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부화병아리 분양시 예방접종서 발급 ○ 부화장 지도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4,000	16,000	16,000	32,000	
경기	181,490	725,960	725,960	1,451,920	
강원	-	-	-	-	
충북	50,512	202,048	202,048	404,096	
충남	165,600	662,401	662,401	1,324,802	
전북	343,582	1374,326	1374,326	2,748,652	
전남	20,053	80,211	80,211	160,422	
경북	82,097	328,386	328,386	656,772	
경남	6,007	24,029	24,029	48,058	
제주	9,759	39,036	39,036	78,072	
계	863,100	3,452,397	3,452,397	6,904,794	

- 양계농가

(단위 : 천수,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전국 양계농가 ☐ 부화장 1차 예방접종 실시분에 한함 ☐ 접종가축 : 육계·산란계·종계 등 ☐ 접종방법 : 용도별(음수·접안·분무)로 농가가 선택 ☐ 검역본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 이행 ☐ 접종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두당 4원 이하(약품비) ☐ ○ 국비 : 2원, 지방비 : 2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 시군에서 양계관련단체, 방역본부, 계열업체, 농가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 후 제품 선정 ※ 필요 시 뉴캐슬병+전염성기관지염(합제) 또는 뉴캐슬병 (단일 중 택일 가능) ☐ ○ 예방약 공급방법 i) 공급계약시 1~3개월분 물량을 나누어 공급 보관 ii)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사를 위촉·활용 iii) 농가 공급시 부화장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확인서 징구 의무 조치 ☐ ○ 기타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 등 세부사항은 “뉴캐슬병방역 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참조
부산	180	360	360	720	
대구	3,521	7,042	7,042	14,084	
인천	5,065	10,130	10,130	20,260	
광주	400	800	800	1,600	
대전	60	120	120	240	
울산	2,098	4,196	4,196	8,392	
세종	7,996	15,992	15,992	31,984	
경기	194,740	389,480	389,480	778,960	
강원	30,000	60,000	60,000	120,000	
충북	64,554	129,108	129,108	258,216	
충남	148,291	296,582	296,582	593,164	
전북	188,745	377,490	377,490	754,980	
전남	160,792	321,583	321,583	643,166	
경북	105,765	211,530	211,530	423,060	
경남	55,100	110,200	110,200	220,400	
제주	6,160	12,320	12,320	24,640	
계	973,467	1,946,933	1,946,933	3,893,866	

● 오리 바이러스간염

(단위 : 천수,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오리농가 ※ 발생농장 또는 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 접종대상 : 종오리 및 육용오리 ☐ 접종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두당 66원 ○ 국비 33원, 지방비 33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질병 발생 및 지역별 사육현황 등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95	3,135	3,135	6,270	
충남	-	-	-	-	
전북	808	26,664	26,664	53,328	
전남	1,620	53,460	53,460	106,920	
경북	-	-	-	-	
경남	280.2	9,247	9,247	18,494	
제주	-	-	-	-	
계	2,803.2	92,506	92,506	185,012	

● 야생동물 광견병(미끼예방약)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 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약품비		살포비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80	173,712	74,448	33,600	14,400	296,160	□ 지원대상: 서울·경기·강원지역 광견병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 살포시기: 봄(3월 전후), 가을(11월 전후) 2회 살포 □ 소요경비 ○ 예방약 구입비 : 3,102원/두 - 국비 : 2,171.4원, 지방비 : 930.6원 - 국비 70%, 지방비 30% ○ 예방약 살포비 : 600원/두 - 국비 420원, 지방비 : 180원 - 국비 70%, 지방비 30% ※ 부족시 지방비에서 추가 확보 □ 실시요령 ○ 살포지역(지점): 국립환경연구원 등 야생동물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 결정 ○ 살포방법 : 인력을 동원, 살포지점에 직접 살포 ※ 살포한 미끼예방약 섭취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후 수거 등 사후관리방안은 농림축산 검역본부와 협의 추진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2.52	5,472	2,345	1,059	454	9,330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202.2	439,057	188,167	84,924	36,396	748,544	
강원	611.28	1,327,334	568,858	256,738	110,030	2,262,960	
충북	-	-	-	-	-	-	
충남	-	-	-	-	-	-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계	896	1,945,575	833,818	376,321	161,280	3,316,994	

● 야생동물 돼지열병(미끼예방약)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약품비		살포비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	-	-	-	-	-	□ 지원대상 : 경기, 강원, 인천 ※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CSF) 항원 및 항체 발생 지역 □ 살포 기간 : '25.1~12월 □ 소요경비 : 4,120원 (국비 2,884, 지방비 1,236) (국비 70%, 지방비 30%) ○ 약품비: 개당 3,520원 - 국비 2,464, 지방비 1,056 ○ 살포비: 개당 600원 - 국비 420, 지방비 180 ※ 미끼백신 단가가 변동된 경우 단가에 맞춰 약품 구입 후 살포 (부족시 지방비에서 추가 확보) □ 실시요령 ○ 살포지역(지점): 야생멧돼지 분포가 많은 지역과 서식지를 중심으로 살포 ○ 살포방법: 인력을 동원, 살포지점에 직접 살포 ※ 미끼예방약 살포는 야생동물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고, 살포한 미끼예방약 사후관리방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 추진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10	24,640	10,560	4,200	1,800	41,200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169.6	417,894	179,097	71,232	30,528	698,751	
강원	143.76	354,225	151,811	60,379	25,877	592,292	
충북	-	-	-	-	-	-	
충남	-	-	-	-	-	-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계	323.36	796,759	341,468	135,811	58,205	1,332,243	

③ 검진약품 공급

● 젖소 결핵(PPD)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 대상: 1세 이상 젖소 전 두수 ☐ 제주도는 한·육우 포함 ☐ 종축기관 등에서 검사 의뢰한 종축 등
부산	0.13	175	20	195	
대구	0.38	511	57	568	☐ 실시기간: 연중 ☐ 소요경비 : 두당 1,494원 (국비 1,344, 지방비 150)
인천	0.98	1,318	147	1,465	
광주	0.21	283	32	315	☐ 진단액 구매비: 두당 1,194원(국비 100%) ☐ 재료비: 두당 300원(국비 50%, 지방비 50)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대전	-	-	-	-	
울산	0.31	417	47	464	☐ 실시요령 ☐ 과거 소 결핵 발생농장과 발생한 지역에서 사육되어 결핵병이 의심되는 소, 종축기관 등에서 검사 의뢰한 소 및 전년도 누락된 목장의 소를 우선실시
세종	2.45	3,293	368	3,661	
경기	116.00	155,904	17,400	173,304	☐ 기타 발생농장의 동거 가축 재검사 등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실시 ☐ 신속한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혈을 이용한 감마인터페론 검사로 대체 가능
강원	9.75	13,104	1,463	14,567	
충북	8.12	10,914	1,218	12,132	
충남	36.31	48,801	5,447	54,248	
전북	7.34	9,865	1,101	10,966	
전남	9.75	13,104	1,463	14,567	
경북	16.02	21,531	2,403	23,934	
경남	9.26	12,446	1,389	13,835	
제주	0.90	1,210	135	1,345	
계	217.91	292,876	32,690	325,566	

● 한·육우 결핵(거래가축)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 대상: 거래 대상 1세 이상 한·육우 ☐ 실시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두당 7,600원 (국비 3,800, 지방비 3,800) ☐ 진단액 구매비: 두당 6,700원 (국비 50%, 지방비 50%) ☐ 재료비: 두당 900원 - 국비 50%, 지방비 50%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 실시요령 ☐ 전혈을 이용한 감마인터페론 또는 PPD 검사 실시 ☐ 양성 판정 시 이동 제한, 동거 소 검사 등 방역 조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 (농식품부고시)”에 따라 실시
부산	152	576	576	1,152	
대구	2,856	10,853	10,853	21,706	
인천	1,950	7,409	7,409	14,818	
광주	823	3,126	3,126	6,252	
대전	840	3,191	3,191	6,382	
울산	5,000	19,000	19,000	38,000	
세종	2,589	9,839	9,839	19,678	
경기	29,183	110,894	110,894	221,788	
강원	23,417	88,985	88,985	177,970	
충북	18,834	71,569	71,569	143,138	
충남	55,738	211,806	211,806	423,612	
전북	57,073	216,876	216,876	433,752	
전남	74,403	282,731	282,731	565,462	
경북	69,832	265,362	265,362	530,724	
경남	47,008	178,630	178,630	357,260	
제주	5,023	19,087	19,087	38,174	
계	394,721	1,499,934	1,499,934	2,999,868	

● 브루셀라병(M.R.T)

(단위 : 건,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 대상 : 집유장에 납유되는 목장별 원유 ☐ 실시기간 : 농장별 연 4회 ☐ 분기 1회 이상 농장 단위로 실시,
부산	22	8	1	9	
대구	756	269	38	307	☐ 소요경비 : 두당 406원(국비 356, 지방비 50) ☐ 진단액 구매비: 일회용 306원(국비 100%) ☐ 재료비: 건당 100원(국비 50, 지방비 50)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인천	-	-	-	-	
광주	34	12	2	14	☐ 실시요령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농식품부 고시)에 의함
대전	-	-	-	-	
울산	140	50	7	57	☐ 검사시료는 건당 1~50두 정도의 우군 원유를 기준으로 채취 ☐ 양성 및 의양성에 대한 개체별 추적검사는 Rose-Bengal 방법으로 실시
세종	713	254	36	290	
경기	7,323	3,086	433	3,519	☐ 타 시·도 소재 목장의 소에서 양성 및 의양성우가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에서는 개체별 추적검사 시행
강원	559	199	28	227	
충북	500	178	25	203	☐ 기타 ☐ 원유업체에서 검사를 의뢰한 가검물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통보
충남	4,022	1,432	201	1,633	
전북	1,261	449	63	512	☐ MRT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확인 목장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 두수 이동제한 조치 및 개체별 검사 실시
전남	1,427	508	71	579	
경북	2,185	778	110	888	
경남	1,525	543	76	619	
제주	228	81	11	92	
계	20,695	7,847	1,102	8,949	

● 브루셀라병(Rose-Bengal)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시·도	방역본부	계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0.09	-	0.09	32	9	41	□ 실시 대상 ○ 젖소: MRT 양성 또는 의양성 목장의 전 두수 및 타 시·도에서 MRT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통보된 목장의 전 두수 ○ 한·육우: 전년도 다발 지역 및 감염 의심 우군의 1세 이상 암소, 소 수집장·증개장 사육 소, 자연교배 수소 등 □ 실시기간: 연중 ○ 시료 채취 - 시·도: 가축방역 기관 검진 물량 - 방역본부 :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관련, 시·군에서 채혈을 요청한 소 ※ 브루셀라병 거래증명서 검진 물량에 따라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량 조정 가능(방역본부 물량은 림프스킨 예찰 등 실시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차 검사: Rose-Bengal ○ 2차 검사: Tube Test, CF 또는 ELISA □ 소요경비 ○ 전국(제주 제외): 두당 453원 (국비 353, 지방비 100) - 진단액 구매비: 253원(국비 100%) - 재료비: 200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제주: 두당 8,230원(국비 1,830, 지방비 6,400) - 진단액 구매비: 두당 230원(국비 100%) - 재료비: 8,000원(국비 1,600, 지방비 6,400) ※ 2차 검사 진단액은 검역본부에서 생산·공급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 실시요령 ○ 브루셀라병 의심 우군은 개체별 검사 ○ 발생축과 동거 또는 감염 의심 지역에 대하여는 개체별(한육우 포함) 검사 실시 ○ 유산우, 유산태아, 유산 물질 확인 시 병성감정 기관에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세균 분리 등), 병성감정기관은 검사 결과를 검역본부에 통보
부산	1.54	0.18	1.72	607	172	779	
대구	4.80	2.70	7.5	2,648	750	3,398	
인천	2.90	2.30	5.2	1,836	520	2,356	
광주	1.75	0.43	2.18	770	218	988	
대전	3.50	2.00	5.5	1,942	550	2,492	
울산	20.10	5.73	25.83	9,118	2,583	11,701	
세종	16.32	2.30	18.62	6,573	1,862	8,435	
경기	169	46.80	215.8	76,177	21,580	97,757	
강원	142.38	34.80	177.18	62,545	17,718	80,263	
충북	153.99	32.60	186.59	65,866	18,659	84,525	
충남	225.86	56.80	282.66	99,779	28,266	128,045	
전북	95.99	54.70	150.69	53,194	15,069	68,263	
전남	284.57	72.77	357.34	126,141	35,734	161,875	
경북	377.00	83.30	460.3	162,486	46,030	208,516	
경남	150.00	48.09	198.09	52,950	15,000	67,950	
제주	12.50	-	12.5	22,875	80,000	102,875	
계	1,662.29	445.5	2,107.79	745,539	284,720	1,030,259	

● BSE 진단키트 구입비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 단가: 12,000천원/1SET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BSE 진단키트는 1SET 기준 60두 검진 - 1SET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며, 사업량 60두당 1SET 구입 금액 지원
부산	-	-	-	-	
대구	30	6,000	6,000	12,000	☐ 실시요령 ☐ TSE 예찰 및 정밀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
인천	15	6,000	6,000	12,000	
광주	5	6,000	6,000	12,000	
대전	5	6,000	6,000	12,000	
울산	23	6,000	6,000	12,000	
세종	-	-	-	-	
경기	577	60,000	60,000	120,000	
강원	94	12,000	12,000	24,000	
충북	47	6,000	6,000	12,000	
충남	267	30,000	30,000	60,000	
전북	110	12,000	12,000	24,000	
전남	115	12,000	12,000	24,000	
경북	316	36,000	36,000	72,000	
경남	403	42,000	42,000	84,000	
제주	23	6,000	6,000	12,000	
계	2,030	246,000	246,000	492,000	

● 사슴 결핵병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1세 이상 사슴 ☐ 실시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두당 75,600원 ○ 국비 37,800원, 지방비 37,800원 - 국비 50%, 지방비 50% ○ 두당 소요경비는 결핵병 검진에 필요한 진단액, 마취제, 해독제 및 Blow gun 등 관련물품 구입비 포함 ☐ 실시요령 ○ 농가에서 의뢰받은 사슴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 ○ 검사방법 : PPD(피내주사 반응법) ○ PPD 확인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이동제한, 동거 사슴 PPD검사 등 방역조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 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라 실시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12	454	454	908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37	1,399	1,399	2,798	
세종	17	643	643	1,286	
경기	105	3,969	3,969	7,938	
강원	210	7,938	7,938	15,876	
충북	313	11,831	11,831	23,662	
충남	280	10,584	10,584	21,168	
전북	239	9,034	9,034	18,068	
전남	313	11,831	11,831	23,662	
경북	210	7,938	7,938	15,876	
경남	308	11,642	11,642	23,284	
제주	23	869	869	1,738	
계	2,067	78,132	78,132	156,264	

● 돼지오제스키병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세 부 내 역
	양돈장	종돈장	계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	☐ 실시대상 : 50두 규모 이상 전 양돈농가 ○ 농가당 연 1회, 1회 10두 이상 - 위축돈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돼지 우선 검사 ○ 종돈장·정액처리업체는 “종돈장방역관리요령 (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검사 실시 - 종돈장 후보모돈 연간 분양물량의 5%이상 ☐ 시료채취 및 검사실시기관 ○ 시료채취 - 양돈장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종돈장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검사기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검사방법 : 감별진단 또는 간이진단법 ☐ 소요경비 : 두당 1,768원 (국비 1,568, 지방비 200) ○ 진단키트 구입비: 두당 1,368원(국비 100%) ○ 재료비: 두당 400원(국비 200, 지방비 200) ☐ 검사실적 보고 ○ 시·도는 월별 검사실적을 시험소 본소에서 취합하여 검역본부(역학조사과)에 제출 ○ 검역본부는 검사실적을 취합·분석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부산	30	-	30	47	6	53	
대구	300	280	580	909	116	1,025	
인천	15	-	15	24	3	27	
광주	25	-	25	39	5	44	
대전	5	-	5	8	1	9	
울산	55	-	55	86	11	97	
세종	270	140	410	643	82	725	
경기	1,370	2,520	3,890	6,100	778	6,878	
강원	864	1,820	2,684	4,209	537	4,746	
충북	2,090	1,820	3,910	6,131	782	6,913	
충남	3,750	2,240	5,990	9,392	1,198	10,590	
전북	780	2,660	3,440	5,394	688	6,082	
전남	980	3,780	4,760	7,464	952	8,416	
경북	1,080	3,780	4,860	7,620	972	8,592	
경남	520	3,780	4,300	6,742	860	7,602	
제주	485	700	1,185	1,858	237	2,095	
계	12,619	23,520	36,139	56,666	7,228	63,894	

● PED(돼지 유행성 설사병)·PRRS(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모니터링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 업 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양돈장	종돈장	계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	□ 실시대상 : 50두 규모 이상 양돈농가 및 종돈장 ○ PED : (분변) 농가당 시료15건(검사 5건) ○ PRRS : (혈청) 농가당 18두(검사 4건) (타액) 농가당 3건(검사 3건)
부산	-	-	-	-	-	-	
대구	5	3	8	1,560	216	1,776	□ 시료채취 및 검사실시기관 ○ 시료채취 - 양돈장 : 수의사 - 종돈장 : 시·도 가축방역기관 ○ 검사기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양성 시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바이러스질병과)에 의뢰
인천	1	-	1	195	27	222	
광주	-	-	-	-	-	-	□ 소요경비 : 1호당 222,000원 (국비 195,000원, 지방비 27,000원) ○ PED(농가당 15건, 검사 5건) - 진단키트 구입비 : 건당 15,000원(국비 100%) - 재료비 : 두당 1,600원(국비 1,100, 지방비 500) - 진단키트 15,000원*5건+재료비 1,600원*15건 = 99,000원(국비 91,500원, 지방비 7,500원) ○ PRRS(① 혈청: 농가당 18두, 검사 4건 ② 타액: 농가당 3건, 검사 3건) ① - 진단키트 구입비 : 건당 12,000원(국비 100%) - 재료비 : 두당 1,000원(국비 500, 지방비 500) - 진단키트 12,000원*4건+재료비 1,000원*18두 = 66,000원(국비 57,000원, 지방비 9,000원) ② - 진단키트 구입비 : 건당 12,000원(국비 100%) - 재료비 : 건당 7,000원(국비 3,500, 지방비 3,500) - 진단키트 12,000원*3건+재료비 7,000원*3건 = 57,000원(국비 46,500원, 지방비 10,500원)
대전	-	-	-	-	-	-	
울산	1	-	1	195	27	222	□ 검사실적 보고 ○ 시·도는 검사실적을 시험소 본소에서 취합하여 검역본부(질병진단과)에 제출 ○ 검역본부는 검사실적을 취합·분석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및 시도에 결과 통보
세종	5	1	6	1,170	162	1,332	
경기	109	18	127	24,765	3,429	28,194	
강원	19	15	34	6,630	918	7,548	
충북	29	18	47	9,165	1,269	10,434	
충남	103	30	133	25,935	3,591	29,526	
전북	56	24	80	15,600	2,160	17,760	
전남	47	29	76	14,820	2,052	16,872	
경북	58	31	89	17,355	2,403	19,758	
경남	53	33	86	16,770	2,322	19,092	
제주	20	7	27	5,265	729	5,994	
계	506	209	715	139,425	19,305	158,73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모니터링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기간 : 연중 ☐ 검사대상 :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 예찰 계획」에 따름 ○ 양돈농가 사육돼지, 축산시설(도축장, 배합사료 공장, 분뇨처리업체), 야생멧돼지, 환경 등
부산	91	1,274	1,274	2,548	
대구	1,383	19,362	19,362	38,724	☐ 검사종류 : ASF 항원 검사 * 야생멧돼지는 항원·항체검사 실시
인천	247	3,458	3,458	6,916	
광주	87	1,218	1,218	2,436	☐ 소요경비: 두당 28,000원(재료비) (경기: 두당 20,090원) ○ 국비 14,000원, 지방비 14,000원 (경기: 국비 10,045원, 지방비 10,045원)
대전	23	322	322	644	
울산	173	2,422	2,422	4,844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양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ASF 발생 위험성이 높은 대상은 검사 확대 - 전국 양돈농장(연 1회, 농가별 10두), 취약농가(연 1회, 농가별 10두), 밀집사육단지(연 1회, 농가별 10두), 축산시설(도축장-분기별, 사료공장·분뇨처리업체-반기별),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권역화 지역 출하 돼지 환경시료 검사 등 ○ ASF 검사 관련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경상적 비용을 지원 * 시료채취, 검사(항원, 항체, 부검) 및 포장, 운송 등 재료비, 검사시료 운송 지원비 등 포함
세종	542	7,588	7,588	15,176	
경기	62,728	630,098	630,098	1,260,196	
강원	30,352	424,928	424,928	849,856	
충북	16,208	226,912	226,912	453,824	
충남	12,204	170,856	170,856	341,712	
전북	6,756	94,584	94,584	189,168	
전남	5,508	77,112	77,112	154,224	
경북	34,374	481,236	481,236	962,472	
경남	6,302	88,228	88,228	176,456	
제주	2,629	36,806	36,806	73,612	
계	179,607	2,266,404	2,266,404	4,532,808	

● 추백리·가금티푸스(평판)

(단위 : 수,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부화목적의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 ☐ 실시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마리당 124원 (국비 74, 지방비 50) ○ 진단액 구입비 : 24원(국비 100%) ○ 재료비 : 100원(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름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500	37	25	62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95	7	5	12	
경기	9,595	710	480	1,190	
강원	1,500	111	75	186	
충북	7,108	526	355	881	
충남	30,000	2,220	1,500	3,720	
전북	24,905	1,843	1,245	3,088	
전남	6,000	444	300	744	
경북	5,000	370	250	620	
경남	1,392	103	70	173	
제주	405	30	20	50	
계	86,500	6,401	4,325	10,726	

● 추백리·가금티푸스·마이코플라스마(ELISA)

(단위 : 수,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부화목적의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 ☐ 실시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 추백리·가금티푸스 마리당 1,753원 (국비 1,703, 지방비 50) - 진단액 구입비 : 1,653원(국비 100%) - 재료비 : 100원(국비 50, 지방비 50) ○ 마이코플라스마 마리당 2,200원 - 진단액 구입비 : 2,200원(국비 100%) ☐ 실시요령 ○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름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100	170	5	175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10	17	1	18	
경기	640	1,090	32	1,122	
강원	1,489	2,535	74	2,609	
충북	700	1,192	35	1,227	
충남	15,831	26,960	792	27,752	
전북	12,250	20,861	613	21,474	
전남	200	341	10	351	
경북	1,000	1,703	50	1,753	
경남	356	607	18	625	
제주	155	264	8	272	
계	32,731	55,740	1,638	57,378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

(단위 : 건,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1,300	19,500	19,500	39,000	□ 실시기간 : 연중 □ 검사대상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름 ○ 가금·야생조류 및 가금 사육농장·축산관계시설 및 축산관련차량 환경시료 등 □ 검사종류 : 조류인플루엔자 항원·항체 검사 □ 지원대상 : 시·도(가축방역기관 및 시·군)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소요경비 : 건당 30천원 (국비 15, 지방비 15) ○ 약품부 : 24천원(국비 12, 지방비 12) ○ 재료비 : 6천원(국비 3, 지방비 3) □ 실시요령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관련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정상적 비용*을 지원 ※ 시료 채취, 검사(항원·항체·부검 등) 및 포장·운송 등 재료비, 검사시료 운송 지원비 등 포함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 채취〉 ※ (농장·시설·차량)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주관으로 시료 채취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지원 ※ (야생조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야생조류 서식 현황 등을 감안하여 철새도래지,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 등에서 야생조류 시료(분변·포획) 채취 계획 수립·시행
부산	1,067	16,005	16,005	32,010	
대구	2,482	37,230	37,230	74,460	
인천	343	5,145	5,145	10,290	
광주	1,800	27,000	27,000	54,000	
대전	310	4,650	4,650	9,300	
울산	1,229	18,435	18,435	36,870	
세종	2,197	32,955	32,955	65,910	
경기	31,703	475,545	475,545	951,090	
강원	7,000	105,000	105,000	210,000	
충북	25,562	383,430	383,430	766,860	
충남	31,340	470,100	470,100	940,200	
전북	32,624	489,360	489,360	978,720	
전남	41,795	626,925	626,925	1,253,850	
경북	22,000	330,000	330,000	660,000	
경남	19,095	286,425	286,425	572,850	
제주	2,130	31,950	31,950	63,900	
계	223,977	3,359,655	3,359,655	6,719,310	

4 방제약품

● 소 진드기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 대상 : 진드기 서식지의 사육 소 ※ 대규모 양축농가 제외 □ 실시기간 및 방법 : 4~10월 ○ 10~20일 간격으로 실시 □ 소요경비 ○ 약품 구매비 : 두당 53원 (국비 37, 지방비 16) - 국비 70%, 지방비 30%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 실시요령 ○ 진드기 서식지 및 바베시아병, 타일레리아병 다발 지역 우선실시 ○ 진드기 출현 시기에 맞춰 구제 일정을 정하여 동시 구제 시행 ○ 가축의 몸체에 분무 또는 약물목욕 실시 ○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농장에 대하여 농가 자율적으로 진드기 구제를 하도록 지도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19.05	705	305	1,010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5	185	80	265	
경북	10	370	160	530	
경남	3.51	130	56	186	
제주	1,068.30	39,527	17,093	56,620	
계	1,105.86	40,917	17,694	58,611	

● 꿀벌 응애류

(단위 : 천군,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4	3,500	1,500	5,000	☐ 지원대상 ☐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양봉농가(양봉농가에서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다만, 양봉농가 등록 기준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등록·관리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부산	35	30,625	13,125	43,750	
대구	89.23	78,077	33,462	111,539	
인천	28.50	24,938	10,688	35,626	
광주	42	36,750	15,750	52,500	☐ 구제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방제시기*에 맞춰 실시하되, 지역별 방제시기 조정 가능 * (예) 첫 봄벌 관리(1~2월), 분봉 관리(6~7월), 월동직전 관리(10~11월) ☐ 유밀기 직전 및 유밀기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대전	35	30,625	13,125	43,750	
울산	76	66,500	28,500	95,000	
세종	22	19,250	8,250	27,500	
경기	203	177,625	76,125	253,750	☐ 소요경비 ☐ 약품비 : 1군당 1,250원(250원×5회) ☐ 국비 : 875원, 지방비 : 375원 - 국비 70%, 지방비 30% ☐ 실시요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꿀벌응애 방제제 선정시 2년 연속 동일한 성분의 합성화학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25년도에는 꿀벌 응애에 저항성이 있다고 보고된 성분(예 : 플루발리네이트, 아미트라즈) 지원 제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꿀벌응애류 감염 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 이므로 시·도별로 적기에 구제약품을 농가에 지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방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량을 100%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강원	295	258,125	110,625	368,750	
충북	420	367,500	157,500	525,000	
충남	334	292,250	125,250	417,500	
전북	334	292,250	125,250	417,500	
전남	360	315,000	135,000	450,000	
경북	584.77	511,673	219,288	730,961	
경남	460	402,500	172,500	575,000	
제주	105	91,875	39,375	131,250	
계	3,427.5	2,999,063	1,285,313	4,284,376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 구제약품 지원 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선정할 것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시·도지사는 시·도별로 배정된 꿀벌 구제약품 3종 예산의 총액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 약품간 상호 교차 지원 가능 □ 기타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별 꿀벌 구제약품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연 2회: 3월 ·8월 말까지)

● 꿀벌 노제마증

(단위 : 천군,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4	3,024	1,296	4,320	□ 지원대상 ○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양봉농가(양봉농가에서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다만, 양봉농가 등록 기준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등록·관리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부산	25	18,900	8,100	27,000	
대구	63.16	47,750	20,464	68,214	
인천	15	11,340	4,860	16,200	
광주	42	31,752	13,608	45,360	□ 방제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방제시기에 맞춰 실시하되, 지역별 방제시기 조정 가능 ○ 유밀기 직전 및 유밀기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대전	17	12,852	5,508	18,360	
울산	54	40,824	17,496	58,320	□ 소요경비 ○ 약품비 : 1군당 1,080원(270원×4회) ○ 국비 : 756원, 지방비 : 324원 - 국비 70%, 지방비 30%
세종	13	9,828	4,212	14,040	
경기	100	75,600	32,400	108,000	
강원	150	113,400	48,600	162,000	□ 실시요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꿀벌노제마증 감염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시·도별로 적기에 구제약품을 농가에 지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방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량을 100%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충북	250	189,000	81,000	270,000	
충남	187	141,372	60,588	201,960	
전북	188	142,128	60,912	203,040	
전남	207	156,492	67,068	223,560	○ 방제약품 지원 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선정할 것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경북	408.84	309,082	132,464	441,546	
경남	250	189,000	81,000	270,000	
제주	67	50,652	21,708	72,360	
계	2,041	1,542,996	661,284	2,204,280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 시·도지사는 시·도별로 배정된 꼴벌 구제약품 3종 예산의 총액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약품간 상호 교차 지원 가능 □ 기타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별 꼴벌 구제약품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연 2회: 3월·8월 말까지)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단위 : 천군,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4	3,747	1,606	5,353	☐ 지원대상 ☐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양봉농가(양봉농가에서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다만, 양봉농가 등록 기준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등록·관리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부산	10	9,370	4,016	13,386	
대구	54.13	50,699	21,728	72,427	
인천	12	11,240	4,817	16,057	☐ 구제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방제시기에 맞춰 실시하되, 지역별 방제시기 조정 가능 ☐ 유밀기 직전 및 유밀기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광주	28	26,225	11,239	37,464	
대전	14	13,118	5,622	18,740	
울산	43	40,274	17,260	57,534	☐ 소요경비 ☐ 약품비 : 1군당 1,338원(446원×3회) ☐ 국비 : 936.6원, 지방비 : 401.4원 - 국비 70%, 지방비 30%
세종	7	6,557	2,810	9,367	
경기	85	79,611	34,119	113,730	
강원	120	112,392	48,168	160,560	☐ 실시요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낭충봉아부패병 감염 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시·도별로 적기에 구제약품을 농가에 지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방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량을 100%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 방제약품 지원 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선정할 것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충북	230	215,418	92,322	307,740	
충남	161	150,793	64,626	215,419	
전북	147	137,680	59,006	196,686	☐ 시·도지사는 시·도별로 배정된 꿀벌 방제약품 3종 예산의 총액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 약품간 상호 교차 지원 가능
전남	161	150,793	64,626	215,419	
경북	324.87	304,272	130,402	434,674	
경남	187	175,144	75,062	250,206	☐ 기타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별 꿀벌 방제약품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연 2회: 3월·8월 말까지)
제주	63.93	59,880	25,663	85,543	
계	1,651.93	1,547,213	663,092	2,210,305	

㉔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계획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347	44,763	44,763	89,526	☐ 사업량 : 1,450 균주 (반려동물(개·고양이)항생제 내성모니터링 검사) * 2026년 축산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계획에 따름
부산	209	26,961	26,961	53,922	
대구	149	19,221	19,221	38,442	☐ 검사대상 질병 : 총 10종(분변·병변별) ※ 대장균, 장알균, 캄필로박터균, 클로스트리듐 속, 포도알균 속, 슈도모나스 속, 사슬알균 속, 보르데텔라 속, 파스튜렐라 속, 프로테우스 속
인천	149	19,221	19,221	38,442	
광주	149	19,221	19,221	38,442	☐ 사업비 : 399,900천원 ○ 지원단가 : 균주 건당 258천원 ※ 시료채취비*, 시료송부 및 검사재료비 등 검사비용 포함 * 시료채취비 : 두당 분변시료 5천원, 임상시료 10천원
대전	149	19,221	19,221	38,442	
울산	149	19,221	19,221	38,442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
세종	-	-	-	-	
경기	149	19,221	19,221	38,442	☐ 실시요령 ○ 모니터링 지정 동물병원(공수의 동물병원 등)은 개·고양이에서 분변 또는 병변별 시료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
강원	-	-	-	-	
충북	-	-	-	-	※ 시·도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동물병원 지정운영 ○ 모니터링 지정 동물병원을 활용한 시료채취 시 사업비 지원단가에 따른 시료채취비를 지원할 수 있음
충남	-	-	-	-	
전북	-	-	-	-	※ 임상시료(설사, 피부, 뇨, 호흡기 등) 채취는 환측 진료 과정에서 시료채취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행토록 지도
전남	-	-	-	-	
경북	-	-	-	-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병원으로부터 검사의뢰된 시료에서 부위별·병변별로 검사 대상 균종 분리·동정, 항생제감수성검사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세균질병과)에 검사실적 제출 및 해당균주 송부 (검사실적 및 분리 균주는 반기별 제출)
경남	-	-	-	-	
제주	-	-	-	-	
계	1,450	187,050	187,050	374,100	

(단위 : 호, 천원)

– 78 –

㉔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민간 병성감정기관 AI 검사 지원)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기간 : 연중 ☐ 사업개요 : 「'26년도 민간 검사기관 AI 정밀검사 사업지침」에 따름 ☐ 민간 가축병성감정기관이 가금농장에 대해 AI 예찰을 위한 정밀검사 시료 채취와 정밀검사 용역 수행 ☐ 지원대상 : 5개 시·도 -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800	121,200	121,200	242,400	
강원	-	-	-	-	
충북	800	121,200	121,200	242,400	
충남	800	121,200	121,200	242,400	
전북	800	121,200	121,200	242,400	
전남	800	121,200	121,200	242,400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유보	-	-	-	-	
계	4,000	606,000	606,000	1,212,000	

8 돼지소모성질병 지도 지원사업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	-	-	-	-	□ 지원대상 : 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 등 처리업체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 * 연차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전염병 방역 자문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세부사항은 2026년 돼지 소모성질병 지도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시행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6	18,000	18,000	24,000	60,000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35	105,000	105,000	140,000	350,000	
강원	8	24,000	24,000	32,000	80,000	
충북	5	15,000	15,000	20,000	50,000	
충남	43	129,000	129,000	172,000	430,000	
전북	54	162,000	162,000	216,000	540,000	
전남	18	54,000	54,000	72,000	180,000	
경북	27	81,000	81,000	108,000	270,000	
경남	31	93,000	93,000	124,000	310,000	
제주	20	60,000	60,000	80,000	200,000	
유보	39	117,000	117,000	156,000	390,000	
계	286	858,000	858,000	1,144,000	2,860,000	

㉠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계획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사업량 : 286호(돼지소모성질병 지도지원사업 대상 농가)
부산	-	-	-	-	
대구	-	-	-	-	□ 검사대상 질병 : 7종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췌코바이러스(PCV-2), 유행성페렴, 홍막페렴, 파스튜렐라, 글래서병
인천	6	15,000	15,000	30,000	
광주	-	-	-	-	□ 검사주기 : 연 2회
대전	-	-	-	-	
울산	-	-	-	-	□ 사업비 : 1,430,000천원 ○ 지원단가 : 농가별 5,0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
세종	-	-	-	-	
경기	35	87,500	87,500	175,000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은 시료 채취 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 ※ 위축돈(환돈) 시료는 채취 및 송부요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에 의뢰
강원	8	20,000	20,000	40,000	
충북	5	12,500	12,500	25,000	○ 사도(동물위생시험소)는 10종에 대한 질병 검사 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결과 입력 (검사실적은 월별로 확정) ※ 컨설팅자문단에 검사결과 별도 송부
충남	43	107,500	107,500	215,000	
전북	54	135,000	135,000	270,000	○ 컨설팅자문단은 농가별 현지조사서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질병감염 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 검역본부 주관 하에 검사시료 채취방법 및 질병감염상황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후, 착수
전남	18	45,000	45,000	90,000	
경북	27	67,500	67,500	135,000	
경남	31	77,500	77,500	155,000	
제주	20	50,000	50,000	100,000	
유보	39	97,500	97,500	195,000	
계	286	715,000	715,000	1,430,000	

10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농장 사육 소, 다발 지역 일제 검사, 발생농장 재검사, 농가 의뢰검사 등에 동원된 채혈 요원(공수의 등)에게 채혈비 지급 ※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와 관련된 채혈은 방역본부에서 담당하되 필요시 방역본부와 시도가 협의하여 검사량을 조정하고, 검사가 지연되는 시·군은 지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채혈요원을 동원, 채혈 후 채혈비 지급 가능 ○ 시·군은 방역본부 배정 검사량을 우선 활용 ※ 시도별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예정 □ 채혈비 : 두당 15천원 (국비 4.5, 지방비 10.5) ※ 한가지 질병에 대한 시료를 채취할 시 두당 10천원 (국비 3, 지방비 7)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70% ○ 지리적 여건, 채혈 물량 등을 고려, 채혈비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시·군은 자체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 단가 조정 시 지방비만 조정하고 국비 조정은 불가 □ 실시요령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사육두수, 농장 감염률, 일제 검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 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시행하고, 채혈비 지급 ※ 필요시 타 시·군 채혈 요원 동원 가능 ○ 검사의뢰서의 개체번호와 다른 가축의 시료를 의뢰한 채혈 요원은 인력 동원에서 제외
부산	372	1,674	3,906	5,580	
대구	4,013	18,060	42,140	60,200	
인천	2,287	10,292	24,015	34,307	
광주	226	1,017	2,373	3,390	
대전	877	3,945	9,205	13,150	
울산	6,975	31,388	73,239	104,627	
세종	6,649	29,921	69,816	99,737	
경기	63,427	285,420	665,980	951,400	
강원	41,111	185,000	431,667	616,667	
충북	48,326	217,467	507,423	724,890	
충남	87,228	392,528	915,899	1,308,427	
전북	68,736	309,314	721,731	1,031,045	
전남	120,024	540,107	1,260,249	1,800,356	
경북	115,536	519,914	1,213,132	1,733,046	
경남	50,542	227,438	530,688	758,126	
제주	10,222	45,998	107,329	153,327	
유보	160,559	722,517	1,685,873	2,408,390	
계	787,110	3,542,000	8,264,665	11,806,665	

10-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채혈비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긴급상황 발생 시 모든 출하 전 검사, 권역간 돼지 이동, 방역대 농장 일제 검사 등에 동원된 채혈요원(공수의 등)에게 지급 ※ 권역화 관리지역 확대 등 수요 변동 시, 사업지역 확대, 사업량 증감 및 시도간 사업량 조정 가능 □ 채혈비 : 두당 15천원(모돈) (국비 4.5, 지방비 10.5) 두당 10천원(비육돈) (국비 3, 지방비 7)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70% □ 실시요령 ○ 시·군 별 물량 배정시 '25년 방역본부 시료채취 실적, 공수의 등 채혈인력, 검사 수요 등을 감안 하여 배정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요원을 동원하여 채혈토록 하고 비용 지급 ※ 소요경비 총액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소요경비 총액에 포함 ※ 긴급상황 발생 시 기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사용 - 중액이 필요한 경우 별도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
부산	-	-	-	-	
대구	3,800	13,500	31,500	45,000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6,000	27,000	63,000	90,000	
강원	4,700	21,000	49,000	70,000	
충북	1,600	7,125	16,625	23,750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8,330	31,335	73,115	104,450	
경남	-	-	-	-	
제주	-	-	-	-	
계	24,430	99,960	233,240	333,200	

11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분	보조원 지 원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방역보조원 운영비 ○ 소요경비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출근거 : 277명×16.98백만원×40% ○ 산출기준 - 1인×67,920원/1일×250일(1년) - 1인당 연 16,980,000원 (국비 6,792,000, 지방비 10,188,000) ○ 지원기준 : 국비 40%, 지방비 60% ※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급기준(최저 인건비 인상 등)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추진 □ 방역보조원 배치기준 ○ 시·도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시험소 관할지역 가축사육두수 및 검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치 ○ 필요시 시·군·구에 방역보조인력 배치 가능 ※ 보조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과 월차·주차수당 등 제비용은 지방비에서 지원 (운영비 내에서 사용 불가)
부산	4	27,168	40,752	67,920	
대구	5	27,168	40,752	67,920	
인천	4	27,168	40,752	67,920	
광주	4	27,168	40,752	67,920	
대전	4	27,168	40,752	67,920	
울산	2	13,584	20,376	33,960	
세종	5	33,960	50,940	84,900	
경기	28	190,176	285,264	475,440	
강원	30	203,760	305,640	509,400	
충북	21	142,632	213,948	356,580	
충남	44	298,848	448,272	747,120	
전북	31	210,552	315,828	526,380	
전남	23	156,216	234,324	390,540	
경북	25	169,800	254,700	424,500	
경남	30	203,760	305,640	509,400	
제주	18	122,256	183,384	305,640	
계	278	1,881,384	2,822,076	4,703,460	

1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

(단위 : 대, 천원)

구분	대상 차량수	소요경비				세 부 내 역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397	11,800	11,800	23,600	47,200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 ○ 1대당 : 9,900원/월 (국비 2,475원, 지방비 2,475, 자부담 4,950) ○ 지원기준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실시요령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지급(50%)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도 또는 시·군·구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가입 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지자체,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이동통신사 청구 서류 : GPS 가입내역, 청구서 ☐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과 GPS 통신료 지원 사업 간 수요 상황에 따른 사업량 조정 가능(농식품부 승인 필요)
부산	286	8,500	8,500	17,000	34,000	
대구	1,178	35,000	35,000	70,000	140,000	
인천	791	23,500	23,500	47,000	94,000	
광주	640	19,000	19,000	38,000	76,000	
대전	438	13,000	13,000	26,000	52,000	
울산	774	23,000	23,000	46,000	92,000	
세종	623	18,500	18,500	37,000	74,000	
경기	9,788	290,700	290,700	581,400	1,162,800	
강원	4,714	140,000	140,000	280,000	560,000	
충북	5,219	155,000	155,000	310,000	620,000	
충남	8,586	255,000	255,000	510,000	1,020,000	
전북	7,610	226,000	226,000	452,000	904,000	
전남	9,764	290,000	290,000	580,000	1,160,000	
경북	9,764	290,000	290,000	580,000	1,160,000	
경남	7,744	230,000	230,000	460,000	920,000	
제주	1,684	50,000	50,000	100,000	200,000	
유보	-	-	-	-	-	
계	70,000	2,079,000	2,079,000	4,158,000	8,316,000	

13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단위 : 대, 천원)

구분	대상 차량수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67	2,000	2,000	4,000	□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 1대당 : 60,000원/1회 - 국비 30,000원, 지방비 30,000원 ※ 지원비용은 설치업체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부산	33	1,000	1,000	2,000	
대구	133	4,000	4,000	8,000	
인천	200	6,000	6,000	12,000	
광주	133	4,000	4,000	8,000	□ 사업내용 ○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 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신규 장착 및 이전설치 비용 지원(A/S, 말소시 탈거 포함) - 대상 : 축산차량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차 ※ GPS 전원공급방식 : 시가책 연결 방식 → 상시전원방식
대전	166	5,000	5,000	10,000	
울산	166	5,000	5,000	10,000	
세종	67	2,000	2,000	4,000	
경기	2,000	60,000	60,000	120,000	□ 실시요령 ○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전원 방식으로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단말기 설치업체(이통사 또는 단말기 제조업체 지정)에 지급 ○ 단말기 설치업체는 매월말 시·도 또는 시·군·구별 GPS 단말기 설치내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자체는 익월 10일까지 업체에 설치비용 지급 ※ 설치업체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설치증빙사진 등
강원	1,167	35,000	35,000	70,000	
충북	1,200	36,000	36,000	72,000	
충남	1,667	50,000	50,000	100,000	
전북	1,667	50,000	50,000	100,000	○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과 GPS 통신료 지원 사업 간 수요 상황에 따라 사업량 조정 가능(농식품부 승인 필요)
전남	1,667	50,000	50,000	100,000	
경북	1,733	52,000	52,000	104,000	
경남	1,667	50,000	50,000	100,000	
제주	267	8,000	8,000	16,000	
유보	-	-	-	-	
계	14,000	420,000	420,000	840,000	

14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지원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개소수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가축질병 검사실 유지(운영)비 ○ 1개소당 : 30,000천원 (국비 15,000, 지방비 15,000) ○ 산출기준 - 1개소 × 30,000,000원/연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질병 검사실 유지·운영 관련 전문용역기관과 계약 체결 ※ 동 운영비는 가축질병 실험실 유지·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계약체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기수도 등 기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비 부담 ○ 실험실 유지·운영비용 지급은 일시불 집행을 자제하고 가능한 분기별로 집행 ※ 실험실 유지(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지급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	15,000	15,000	30,000	
세종	1	15,000	15,000	30,000	
경기	3	45,000	45,000	90,000	
강원	2	30,000	30,000	60,000	
충북	2	30,000	30,000	60,000	
충남	2	30,000	30,000	60,000	
전북	2	30,000	30,000	60,000	
전남	1	15,000	15,000	30,000	
경북	2	30,000	30,000	60,000	
경남	4	60,000	60,000	120,000	
제주	1	15,000	15,000	30,000	
계	21	315,000	315,000	630,000	

15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과거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철새 도래지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도 (시·군·구),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시·도(시· 군·구) 등 ☐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 소요경비 : 1회당 15,000천원 (국비 7,500천원, 지방비 7,5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시·도지사는 5월까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여 보고하고(시·도 직접 실시 가능),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한 뒤 결과 보고 ※ 시·도 및 시·군·구가 합동 가상방역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 2회분 예산 집행 가능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2	15,000	15,000	30,000	
강원	2	15,000	15,000	30,000	
충북	1	7,500	7,500	15,000	
충남	2	15,000	15,000	30,000	
전북	2	15,000	15,000	30,000	
전남	-	-	-	-	
경북	1	7,500	7,500	15,000	
경남	1	7,500	7,500	15,000	
제주	1	7,500	7,500	15,000	
유보	8	60,000	60,000	120,000	
계	20	150,000	150,000	300,000	

16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요경비				세부내역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	-	-	-	-	☐ 사업량 : 470호 (오리 및 닭 사육농가) ☐ 기간 : 연중 ☐ 사업비 : 4,700,000천원 ☐ 지원단가 : 농가별 10,0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불가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질병담당)은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15회 이상)·유선 등 컨설팅을 18회 이상 실시 ☐ 농가별 컨설팅시 질병에 대한 검사 의무화 (최소 연 5회) ※ 검사비용은 가축질병모니터링 검사사업 예산 ☐ 컨설팅자문단은 농가별 질병검사 결과를 컨설팅시 활용하고, 농가별 질병감염 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 자문단별 계약농장이 10농장이 넘지 않아야 함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5	15,000	15,000	20,000	50,000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1	3,000	3,000	4,000	10,000	
세종	-	-	-	-	-	
경기	76	228,000	228,000	304,000	760,000	
강원	10	30,000	30,000	40,000	100,000	
충북	6	18,000	18,000	24,000	60,000	
충남	43	129,000	129,000	172,000	430,000	
전북	129	387,000	387,000	516,000	1,290,000	
전남	70	210,000	210,000	280,000	700,000	
경북	67	201,000	201,000	268,000	670,000	
경남	52	156,000	156,000	208,000	520,000	
제주	11	33,000	33,000	44,000	110,000	
유보	-	-	-	-	-	
계	470	1,410,000	1,410,000	1,880,000	4,700,000	

17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사업량 : 470호 ○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대상농가 ☐ 검사대상 질병 : 15종(닭 11, 오리 4) ○ 검사주기 : 농가별 연 5회 ☐ 사업비 : 1,880,000천원 ○ 지원단가 : 농가별 4,0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질병담당)은 직접 시료 채취 후 검사기관에 직접 전달 ○ 시·도(동물위생시험소)는 16종에 대한 질병검사 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결과 입력 (검사실적은 월별로 확정) ※ 컨설팅자문단에 검사결과 별도 송부 ○ 컨설팅자문단은 농가별 질병감염 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 검역본부는 검사시료 채취방법 및 질병감염상황 분석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후, 착수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5	10,000	10,000	20,000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	2,000	2,000	4,000	
세종	-	-	-	-	
경기	76	152,000	152,000	304,000	
강원	10	20,000	20,000	40,000	
충북	6	12,000	12,000	24,000	
충남	43	86,000	86,000	172,000	
전북	129	258,000	258,000	516,000	
전남	70	140,000	140,000	280,000	
경북	67	134,000	134,000	268,000	
경남	52	104,000	104,000	208,000	
제주	11	22,000	22,000	44,000	
유보	-	-	-	-	
계	470	940,000	940,000	1,880,000	

18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	-	-	-	-	☐ 사업량 : 150호 ☐ 기간 : 연중 ☐ 사업비 : 600,000천원 ☐ 지원단가 : 농가별 4,0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불가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질병담당)은 계약기간 중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10회 이상 실시 ☐ 농가별 컨설팅시 꿀벌 응애 감염도 및 응애내성 검사 외 질병에 대한 검사 의무화(최소 연 3회) ※ 검사비용은 가축질병모니터링 검사사업 예산 ☐ 컨설팅자문단은 농가별 질병검사 결과를 컨설팅시 활용하고, 농가별 질병 감염 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 자문단별 계약농장은 25호 이하여야 함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4	4,800	4,800	6,400	16,000	
강원	2	2,400	2,400	3,200	8,000	
충북	10	12,000	12,000	16,000	40,000	
충남	-	-	-	-	-	
전북	21	25,200	25,200	33,600	84,000	
전남	4	4,800	4,800	6,400	16,000	
경북	-	-	-	-	-	
경남	28	33,600	33,600	44,800	112,000	
제주	-	-	-	-	-	
유보	81	97,200	97,200	129,600	324,000	
계	150	180,000	180,000	240,000	600,000	

19 가축질병(양봉) 모니터링 검사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사업량 : 150호 ☐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대상농가 ☐ 검사대상 질병 및 항목 : 꿀벌 응애 감염조사 및 응애내성 검사와 꿀벌 질병 17종* ※ 세균 2종, 바이러스 7종, 진균 3종, 기생충 5종, 단, 응애 감염도 검사는 컨설팅 자문단이 농가 방문 시 현장에서 실시(연 3회 이상) ☐ 검사주기 : 농가별 최소 연 3회 이상 ☐ 사업비 : 480,000천원 ☐ 지원단가 : 농가별 3,2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질병담당)은 직접 시료 채취 후 검사기관에 직접 전달 ☐ 시·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응애 감염도 및 응애내성 검사와 꿀벌질병 14종*에 대한 질병검사 후, 농가 컨설팅자문단 및 검역본부(세균질병과)에 검사 결과 별도 송부 * 꿀벌응애 2종(바로아응애, 가시응애) 및 작은벌집딱정벌레감염증은 컨설팅자문단이 현장에서 검사 ☐ 컨설팅자문단은 농가별 질병감염 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 검역본부에서 검사시료 채취방법 및 질병감염상황 분석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후 컨설팅 착수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4	6,400	6,400	12,800	
강원	2	3,200	3,200	6,400	
충북	10	16,000	16,000	32,000	
충남	-	-	-	-	
전북	21	33,600	33,600	67,200	
전남	4	6,400	6,400	12,800	
경북	-	-	-	-	
경남	28	44,800	44,800	89,600	
제주	-	-	-	-	
유보	81	129,600	129,600	259,200	
계	150	240,000	240,000	480,000	

20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	-	-	-	-	☐ 사업내용 ○ 종계 및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닭진드기 방제, 층란제거 등의 목적으로 청소·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지원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3	24,000	24,000	12,000	60,000	☐ 지원대상 : 종계농가, 산란계 농가 <대상농가 우선 선정 기준> ○ 소규모 종계 및 산란계 농가(5만 수 이하) * 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거나 참여 횟수가 적은 농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2·3종 가축전염병 진단을 받은 실적('25년 기준)이 있는 농가 등 ※ 지원제외 대상 : 20만수 초과 사육규모의 종계 및 산란계 농가,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에 참여한 농가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1	8,000	8,000	4,000	20,000	☐ 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마리당 400원 ○ 산출근거 : 150호×20백만원×40% ○ 국비 160원, 지방비 160, 자부담 80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량 1호는 5만 수 기준
세종	10	80,000	80,000	40,000	200,000	
경기	27	216,000	216,000	108,000	540,000	
강원	11	88,000	88,000	44,000	220,000	☐ 실시요령 ○ 종계 및 산란노계 출하 후 축사(케이지 포함) 청소·세척, 소독 및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한 닭 진드기 구제 ○ 친환경인증농장의 경우 농약성분이 포함된 살충제 사용금지 ○ 입식 후 주기적인 닭 진드기 모니터링 및 방제작업
충북	11	88,000	88,000	44,000	220,000	
충남	16	128,000	128,000	64,000	320,000	
전북	10	80,000	80,000	40,000	200,000	
전남	13	104,000	104,000	52,000	260,000	
경북	22	176,000	176,000	88,000	440,000	
경남	17	136,000	136,000	68,000	340,000	
제주	9	72,000	72,000	36,000	180,000	
계	150	1,200,000	1,200,000	600,000	3,000,000	

21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사업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6년 사업지침에 따름 □ 사업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원대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또는 위기 단계 “심각”단계에 준하는 상황,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특정 시·군에서 검출되어 구제역 전파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상황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의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 ※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은 농식품부 장관의 결정에 따름 □ 지원내역 ○ 통제초소 설치·유지비용 및 소독약품 구입비용, 방역용품, 근무자 인건비 등 □ 사업비 : 27,400백만원 ○ 국비 13,700, 지방비 13,700 - 국비 50%, 지방비 50% ※ 단가 : 1개소×10.5백만원×12개월×50% = 63백만원 ※ 자치단체의 운영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부산	1	63,000	63,000	126,000	
대구	3	189,000	189,000	378,000	
인천	1	94,000	94,000	188,000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	63,000	63,000	126,000	
세종	3	210,000	210,000	420,000	
경기	31	1,953,000	1,953,000	3,906,000	
강원	16	1,008,000	1,008,000	2,016,000	
충북	22	1,386,000	1,386,000	2,772,000	
충남	25	1,575,000	1,575,000	3,150,000	
전북	24	1,512,000	1,512,000	3,024,000	
전남	35	2,205,000	2,205,000	4,410,000	
경북	21	1,323,000	1,323,000	2,646,000	
경남	21	1,323,000	1,323,000	2,646,000	
제주	9	567,000	567,000	1,134,000	
유보	4	229,000	229,000	458,000	
계	213	13,700,000	13,471,000	26,942,000	

22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사업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6년 사업지침에 따름 □ 주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원대상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 가축사체 처리에 참여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등 -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매몰에 참여한 사람 □ 소요경비 : 총 20,000천원 ○ 국비 10,000, 지방비 10,000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20명×100천원×10일 □ 지원내용 :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유보	20	10,000	10,000	20,000	
계	20	10,000	10,000	20,000	

23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검사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포유동물 (AI)	큐열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 사업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6년 사업지침에 따름 ☐ 실시기간 : 연중 ☐ 검사대상 : ○ 포유류 AI : 젖소(원유) ○ 큐열 : 한우·육우·젖소(원유 포함)·염소·면양 ☐ 시료채취 및 검사실시기관 ○ 시료채취 - 가축 혈청 : 시도 및 방역본부 ※ 브루셀라병 또는 구제역 혈청검사 시료 활용 - 젖소 원유 : 집유장 ☐ 검사기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AI 감염 의심축 확인검사(검역본부) ☐ 검사종류 : ○ 포유류 AI : 항원 검사 ○ 큐열 : 항체 검사 ☐ 사업비 : 650,000천원 - 국비 50%, 지방비 50% ※ 단가 : 젖소 원유 항원 93천원 큐열 항체 15천원 ※ 자치단체의 운영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유보액은 목적예찰 등 필요시 추가 배정
부산	-	-	-	-	-	
대구	165	-	7,673	7,673	15,346	
인천	-	291	2,183	2,183	4,366	
광주	98	-	4,557	4,557	9,114	
대전	-	-	-	-	-	
울산	42	-	1,953	1,953	3,906	
세종	154	279	9,254	9,254	18,508	
경기	1,750	2,245	98,213	98,213	196,426	
강원	166	1,191	16,652	16,652	33,304	
충북	127	1,162	14,621	14,621	29,242	
충남	688	2,205	48,530	48,530	97,060	
전북	396	1,621	30,572	30,572	61,144	
전남	162	2,272	24,573	24,573	49,146	
경북	300	2,787	34,853	34,853	69,706	
경남	261	1,632	24,377	24,377	48,754	
제주	62	315	5,246	5,246	10,492	
유보	-	-	1,743	1,743	3,486	
계	4,371	16,000	325,000	325,000	650,000	

24 거점 소독·세척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신규	개보수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 사업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6년 사업지침에 따름 □ 지원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소요경비 : 개소당 800,000천원(신규총액 기준) ○ 국비 400,000(50%), 지방비 400,000(50%) ※ 거점 소독·세척시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집행 ※ 신규설치 : 2개년 사업추진 - 1년차 30% : 홍성, 부여, 장성, 칠곡, 성주 - 2년차 70% : 진천, 충주, 공주, 군산, 영양 □ 지원대상 ○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 차량전용 세척시설(차량 하부 및 외부 등) ○ CCTV,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및 소독필증 자동 발급기 ○ 고압분무소독기 ○ 난방시설, 소독시설 온도제어장치 ○ 기타 기반시설 설치 등 ※ 사업자 등의 기존 시설과 별도 공간(교차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 ※ 설치부지는 사업대상자가 제공 □ 실시요령 ○ 사업자 모집 및 대상자 적격성 등 평가 ○ 사업자 확정 후 시설공사 등 추진 ○ 관련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실시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	7	128,650	128,650	257,300	
강원	-	5	75,750	75,750	151,500	
충북	2	2	597,500	597,500	1,195,000	
충남	3	3	578,715	578,715	1,157,430	
전북	1	1	310,000	310,000	620,000	
전남	1	4	244,950	244,950	489,900	
경북	3	2	575,000	575,000	1,150,000	
경남	-	4	54,500	54,500	109,000	
제주	-	1	34,935	34,935	69,870	
유보	-	-	-	-	-	
계	10	29	2,600,000	2,600,000	5,200,000	

㉔ 거점센터 운영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사업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6년 사업지침에 따름 □ 사업대상 : 경기, 강원, 충남, 전북 □ 지원내역 ○ 매개곤충 채집·분류·검사 등을 위한 거점 센터 운영비용 지원 □ 사업비 : 1,471백만원 ○ 국비 1,030백만원, 지방비 441백만원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단가 : 1개소×368백만원×국비 70%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1	257,500	110,357	367,857	
강원	1	257,500	110,357	367,857	
충북	-	-	-	-	
충남	1	257,500	110,357	367,857	
전북	1	257,500	110,357	367,857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계	4	1,030,000	441,428	1,471,428	

26 공중포집기 운영 및 설치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공중포집기 운영			공중포집기 설치			계	세 부 내 역
	사업량	국비	지방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서울	-	-	-	-	-	-	-	※ 사업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6년 사업지침에 따름
부산	-	-	-	-	-	-	-	
대구	-	-	-	-	-	-	-	□ 사업대상 : 지방자치단체
인천	1	20,000	8,571	-	-	-	28,571	□ 지원내역
광주	-	-	-	-	-	-	-	○ 공중포집기를 통해 채집한 매개 곤충 채집·분류·검사 등 비용 지원
대전	-	-	-	-	-	-	-	○ 서해안 및 접경 지역을 통한 럼피스킨 등의 유입·전파를 확인 하기 위해 공중포집기 설치
울산	-	-	-	-	-	-	-	□ 사업비(운영) : 600백만원
세종	-	-	-	-	-	-	-	○ 국비 420백만원 지방비 180백만원
경기	5	95,500	40,929	-	-	-	136,429	- 국비 70%, 지방비 30%
강원	4	80,000	34,286	1	30,000	-	144,286	※ 단가 : 1개소×29백만원×70%
충북	-	-	-	-	-	-	-	□ 사업비(설치) : 90백만원
충남	2	40,000	17,143	-	-	-	57,143	○ 국비 90백만원(국비 100%)
전북	3	60,000	25,714	-	-	-	85,714	※ 단가 : 1개소×30백만원×100%
전남	4	80,000	34,286	1	30,000	-	144,286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제주	2	40,000	17,143	1	30,000	-	87,143	
유보	-	4,500	1,928	-	-	-	6,428	
계	21	420,000	180,000	3	90,000	-	690,000	

9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3940-335) 사업비 교부(배정)

- 수시배정 : 긴급방역비(210-11)는 소요 발생 시 시·도에 예산(자금) 재배정
※ 2025년 시·도별 긴급방역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 배정
- 예산교부 :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연간 교부계획에 따라 교부
※ 지난 회계연도 정산 보고 실적, '25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

■ 예산 집행

- 교부(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지방비 부담액도 동시 집행
- 시·도별 특성에 맞는 방역으로 추가 소요 발생 시 지방비에서 부담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사업 완료 보고
 - 각 시·도 및 민간 보조사업자는 2027년 1월 31일까지 보고서식(별도통보)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10

참고 자료

〈 별첨 1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지자체 방역시설·장비 지원내역

(단위 : 대, 개소, 천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방역 차량	소독 차량	검사 장비	소독 장비	거점소독시설		검사 시설	국 비	지방비	계
					신규	개보수				
합계	45	29	155	10	10	29	2	6,995,000	6,995,000	13,990,000
서울	-	-	5	-	-	-	-	31,300	31,300	62,600
부산	-	-	1	-	-	-	-	4,300	4,300	8,600
대구	-	-	8	-	-	-	-	70,000	70,000	140,000
인천	2	-	8	-	-	-	-	57,450	57,450	114,900
광주	-	-	3	-	-	-	-	48,500	48,500	97,000
대전	-	-	3	-	-	-	-	10,600	10,600	-
울산	-	-	1	-	-	-	-	4,000	4,000	8,000
세종	-	-	-	-	-	-	-	-	-	0
경기	14	5	19	-	-	7	-	942,150	942,150	1,884,300
강원	5	-	12	-	-	5	-	358,500	358,500	717,000
충북	5	1	17	-	(2년차) 2	2	-	952,000	952,000	1,904,000
충남	3	4	8	-	(1년차) 2 (2년차) 1	3	개보수 1	901,215	901,215	1,802,430
전북	3	1	18	-	(2년차) 1	1	-	690,000	690,000	1,380,000
전남	3	-	21	-	(1년차) 1	4	-	606,450	606,450	1,212,900
경북	3	3	9	-	(1년차) 2 (2년차) 1	2	-	912,200	912,200	1,824,400
경남	2	1	14	-	-	4	(1년차) 1	648,900	648,900	1,297,800
제주	1	1	8	-	-	1	-	367,435	367,435	734,870
유보	4	13	-	10	-	-	-	390,000	390,000	780,000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필요시 지방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

〈 별첨 2 〉

2026년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장비 세부 지원내역

구분	구입 장비명 및 물량
합 계	155대
서울 (5)	실험용 냉장고 1, 실험용 냉동고 1, 병성감정용 냉장고 1, 병성감정용 냉동고 1, 저온 BOD 미생물 배양기 1
부산 (1)	인화성 위험물 보관함 1
대구 (8)	흡후드 1, ELISA 리더기 1, 마이크로플레이트 세척기 1, 초저온 냉동고 1, 냉장·냉동고 1, 이온클러스터 시약장 1, 원심분리기 1, 형광편광장치 1
인천 (8)	자동배지 분주기 2, 원심분리기 1, 전자저울 1, 유해가스 정화기 1, 형광편광분석기 1, 실험용 냉장고 2
광주 (3)	세포핵산추출기 1, PCR 증폭기 1, 초저온 냉동고 1
대전 (3)	건조캐비닛(멸균건조기) 1, 실험용품 오염 제거·건조기 1, 실험용 냉장고 2
울산 (1)	실험용 냉동고 1
세종 (-)	-
경기 (19)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기 1, 실험용초저온냉동고 1,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 2, 실시간유전자 증폭기 3, 실체현미경 1, 탁상형대용량냉장원심분리기 2, 핵산추출기 2, 전자동전기영동장치 2, 자동핵산추출기 2, 균질화기기(조직파쇄기) 2, 고압멸균기 1
강원 (12)	CO ₂ 인큐베이터 1, 인큐베이터 1, 조직처리기 1, 회전교반기 1, 조직파쇄기 1, 초저온냉동고 1, 유전자증폭기 1, ELISA 세척기 2, 유전자추출장치 1, 실시간유전자증폭기 1, GEL 영상 분석장치 1

구분	구입 장비명 및 물량
총 북 (17)	전자동 전기영동장치 1, 실시간유전자증폭기 2, 편광기 3,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 3,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 3, 원심분리기 1, 생물안전작업대 2, 실험용 냉장고 1, 오토클레이브 1
총 남 (8)	실험용 냉장고 2,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 1, 마이크로플레이트 세척기 1, CO ₂ 인큐베이터 1, 자동핵산추출기 1, 대용량 냉장원심분리기 1, 조직파쇄기 1
전 북 (18)	유전자증폭기 1, 원심분리기 4, 실시간유전자증폭기 2, 자동핵산추출기 2, 초저온 냉동고1, 온도변환인큐베이터 1, 고압멸균기 3, 저온 냉동고 2, 영동이미지 문서화장비 1, 초순수제조장치 1
전 남 (21)	ELISA 리더기 2, 실험용 냉장고 5, 마이크로플레이트 세척기 1, 마이크로플레이트 스택커 5, 마이크로플레이트 분주기 3, Real Time PCR 1, 미생물 배양기 3, 미생물 리더기 1
경 북 (9)	ELISA 시스템 1, Real Time PCR 1,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 1, 마이크로플레이트 세척기 2, 자동핵산추출기 1, 시료파쇄기 1, 유전자증폭기 1, 마이크로플레이트 ELISA 시스템 1
경 남 (14)	유전자 추출기 2, ELISA 디스펜서 1, 냉동고 1, 유전자증폭기 3, 탁상형 원심분리기 1, 히팅블록믹서 1, ELISA 리더기 1, 저온배양기 2, 초순수제조기 1, 형광편광검출기 1
제 주 (8)	원심분리기 3, 유전자 추출기 3, Real Time PCR 2

〈 별첨 3 〉

가축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주요 예찰사업 개요 〉

① 구제역 및 돼지열병 예찰사업

■ 사업목적

- 구제역·돼지열병 질병현황의 지속적인 확인 및 신속한 검색을 위한 예찰체계 유지와 국내 청정화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예찰자료 확보

■ 구제역

- 검사대상 : 전국의 소·염소·돼지를 무작위 선정
- 예찰방법 : 농장예찰(통계예찰·목적예찰)과 도축장·종돈장 예찰로 구분
- 사업물량 : 915천건(NSP항체 344천건, SP항체 571천건)
※ 검사방법 등은 세부 사업실시요령 참조

■ 돼지열병

- 검사대상 :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량은 도축장에서 무작위 선정
- 예찰방법 : 항체·항원검사로 구분하고 각각 농장예찰(양돈장, 종돈장) 및 도축장 예찰로 구분
- 사업물량 : 263천건(항체 193천건, 항원 70천건)
※ 검사방법 등은 세부 사업실시요령 참조

② 돼지오제스키병 근절사업

■ 사업목적

- 돼지오제스키병 근절 기반 조성을 위한 혈청검사 실시로 감염 농장 확인 및 감염·항체양성 돼지의 살처분·도태

■ 사업개요

- 검사대상 : 50두 규모 이상의 양돈장의 번식돈 위주 및 종돈장(AI센터 포함) 후보모돈 연간 분양 물량의 5% 이상

- 검사물량 : 36천건
 - 종돈장·정액처리업체는 “종돈장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라 시료채취 및 검사 실시
- 시료채취
 - 방역본부 소속 방역사가 50두 규모 이상 양돈농가를 방문, 연 1회, 1회 10두 이상 시료채취 후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
 - 종돈장과 정액처리업체에서 채취한 검사시료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필요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시료채취)
- 검사방법
 - 검사기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 포함)
 - 예방접종 지역은 감별 진단키트를 이용하고, 기타 지역은 간이 진단키트 혹은 감별 진단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실시
- 검사결과 후속조치사항
 - 항체 양성돈이 발견된 경우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이동제한, 도축장 지정·도태 등 긴급 방역조치
 - 항체 양성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사육 모돈·종돈 전두수를 검사하고 자돈과 육성돈에 대하여도 검사하여 도축장 조기 출하조치
 - 항체양성 모돈 등을 도태 권고기간 내 도축장 출하시 도태장려금 지급조치
- 진단키트 구입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③ 뉴캐슬병 근절사업

■ 추진개요

- 방역 우선 순위 및 예방약 공급
 - 예방접종(예방약 공급) : ①부화장 → ②육계농장(검용계)백세미>기타) → ③산란계농장(중추>산란계) → ④종계농장
 - 예방접종 확인: ①도축장→②부화장→③중추농장→④육계농장→⑤기타농장
 - 주변 농장 발생 시 추가접종(육계의 경우 3차 접종 등)에 소요되는 예방약은 농가 자율에 따라 자부담으로 실시

- 방역주체별 역할분담 추진
 - 예방약 공급, 도축장 점검 및 혈청검사 등 : 정부 방역기관 중심 실시
 - 농장·도축장 채혈, 소독, 교육, 홍보 등 : 민간 방역단체 중심 실시
- 유통단계별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및 도계 시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 1차 접종확인서는 부화장 영업자가 병아리 분양 시 발급
 - 2차 이후 접종확인서는 농장주가 닭 출하 시 접종관리대장의 기록에 의거 발급
 - 혈청검사는 육계의 경우 닭 도축장 중점, 기타 종계·산란계는 농장 중점 실시
- 예방접종 여부 확인검사 결과에 따른 철저한 과태료 조치
 -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도계장 및 농장 혈청검사 추진

- 도계장(육계) 시료 채취는 해당 도축장 검사관이, 농장(산란계) 시료 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실시하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
 - 시료 채취 물량 : 연간 255천수(추후 농장 사육현황에 따라 변동)
 - 도계장(육계) : 200천수(출하 농가당 30수 이상)
 - 농장(산란계) : 55천수(계군별 20~30수이상, 연 1회 실시)
 - ※ 검사시료 채취기준 : 계군 규모 10천수 미만 - 계군당 20수 이상
계군 규모 10천수 이상 - 계군당 30수 이상
- 검사방법 : 육계는 ELISA, 산란계는 HI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 ※ 뉴캐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사육자에 대한 처벌 등의 적용은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름

〈 시·도별 진단액 및 실시재료비 지원 〉

① 진단액 구입비(CSF, ND·AI·IB·EDS)

- (돼지) CSF 1,500원/두
- (닭) ND(HI) 380원/수, ND(ELISA) 1,800원/수, IB(HI) 1,220원/수, IB(ELISA) 1,543원/수, EDS(HI) 500원/수, ND·AI 바이러스 40,000원/수

※ i) ND·IB·EDS 진단액을 제외한 진단액은 검역본부에서 생산(구입)하여 시·도별 배정계획에 의거 공급

ii) CSF 항체검사 중 도축장 예찰물량 75,942두분의 진단키트는 시·도에서 직접 구입

② 바이러스검사 재료비(ND·AI 바이러스검사용 SPF종란 구입비)

- 4시료 × 5개종란 × 2,000원 = 40천원/건

③ 실시재료비 : 혈청검사·병성감정 : 270원/건

④ 혈청검사·병성감정 사업비 : 979,557천원(시·도 검사물량에 한함)

- CSF(항체) : 75,942건 × 1,500원 = 113,913천원(시·도 도축장 예찰물량에 한함)
- ND(HI) : 55,300건 × 380원 = 21,014천원
- ND(ELISA) : 200,230건 × 1,800원 = 360,414천원
- IB(HI) : -건 × 1,220원 = -천원
- IB(ELISA) : 8,740건 × 1,543원 = 13,485천원
- EDS(HI) : 400건 × 500원 = 200천원
- ND·AI 바이러스 : 1,400건 × 40,000원 = 56,000천원
- 혈청검사·병성감정 실시재료비 : 1,535,299건 × 270원 = 414,530천원

〈 가축혈청검사·병성감정 실시요령 〉

① 사업시행기관 및 임무

i) 농림축산검역본부

- 진단액 등 생산 및 기술지도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로 양축농가 지도
- 가축질병 예찰을 통한 정부 방역정책 수립 반영

ii)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결과를 양축농가에 통보하여 방역 서비스 지원
- 시도 가축질병 예찰업무 활용

iii) 민간병성감정기관(수의과대학, 민간연구소)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결과를 의뢰인(양축농가 등)에게 통보, 방역지도
- 법정가축전염병 진단시 방역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iv)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농장 시료를 채취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
- 시료채취 대상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소결핵·브루셀라병, 뉴캐슬병

② 검사결과 조치사항

- 혈청검사 성적을 조사 분석하여 면역수준, 예방접종 실시 여부, 접종 방법의 개선 등 방역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방역본부 및 해당 농가에 즉시 통보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에 활용하도록 조치

※ 돼지열병 항원검사 결과 양성 및 의양성으로 판정시에는 즉시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통보)하고, 돼지열병 항체검사서에서 음성인 농장(제주도 제외)에 대하여는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추적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

- 도축장에서 시료 채취한 혈청검사와 관련, 해당 가축의 출하 농장이 타 시·도일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당 시도는 방역관리 지도 및 예찰 자료로 활용)
- 타 시·도로부터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및 사후관리 철저

③ 기타 사항

- 시·도지사는 우수 종돈·종계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진단액을 미리 검역본부에 요구하여 배정을 받을 것
- 시·도 소속 가축방역기관(시험소)별로 혈청검사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진단 기술 배양 및 전문화 유도
- 검역본부장은 진단액을 이용한 검사 실시·진단·판정방법, 농가지도 요령 및 보고양식을 표준화하고, 시도 및 병성감정기관은 표준화된 진단법에 따라 검사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물량 증가로 추가 필요 진단액이 보유분(검역본부) 이상인 경우, 시도에서 직접 구매 사용
- 질병 발생 및 진단액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진단액별 생산량 조정(검역본부)

④ 보고

- 검사기관(시·도 소속 가축방역기관 및 민간병성감정기관) 및 검역본부 해당과에서는 국가 가축방역용으로 제공된 진단액 사용 실적 및 수급사항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검사 실적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수시로 입력하고, 검사실적은 월별로 확정
- 검역본부(역학조사과)는 매분기별 검사성적서를 종합하고 전국적인 질병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동 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진단액 및 실시재료비 배정 〉

(단위 : 마리, 원)

시도	사 업 량									사업비 진단액 7종 및 실시재료비 지원(국비)
	소		돼 지		가금류		기타		사업량 계	
	혈청 검사	병성 감정	혈청 검사	병성 감정	혈청 검사	병성 감정	혈청 검사	병성 감정		
	10품목	10품목	5품목	25품목	9품목	14품목	8품목	21품목		
서울	480	292	-	-	300	98	800	350	2,320	626,400
부산	1,210	1,022	153	200	900	96	800	250	4,631	1,250,370
대구	730	442	3,616	2,372	6,700	1,666	7,740	160	23,426	17,593,800
인천	480	542	1,606	1,188	6,100	694	3,540	150	14,300	14,381,000
광주	830	830	1,739	892	800	1,362	1,060	150	7,663	4,960,790
대전	580	980	1,318	892	300	248	2,130	310	6,758	3,417,660
울산	0	1,022	968	842	780	1,266	4,910	150	9,938	5,012,040
세종	580	1,022	1,541	1,334	2,700	1,218	3,530	150	12,075	4,488,030
경기	4,802	3,170	40,010	6,668	28,900	8,442	119,440	1,300	212,732	108,314,100
강원	3,740	5,720	13,741	6,042	11,500	730	42,384	2,400	86,257	39,604,390
충북	3,300	2,270	25,540	3,100	36,000	1,490	42,274	50	114,024	100,269,480
충남	6,200	2,730	39,729	9,922	44,800	1,336	125,336	1,600	231,653	141,767,310
전북	4,840	5,030	32,878	9,144	91,000	2,000	72,634	3,050	220,576	217,228,520
전남	4,570	3,462	30,425	8,918	23,400	4,972	98,302	1,600	175,649	86,657,010
경북	4,920	2,770	36,299	6,060	29,500	4,884	104,864	2,250	191,547	92,454,030
경남	4,860	4,620	37,046	13,094	11,200	6,766	72,044	3,050	152,680	112,718,720
제주	930	2,420	14,996	4,784	10,200	3,010	32,420	310	69,070	28,813,900
계	43,052	38,344	281,605	75,452	305,080	40,278	734,208	17,280	1,535,299	979,557,550
검역본부	25,564	36,682	17,620	41,456	176,040	18,308	42,950	65,260	423,880	-
지정기관	-	150	-	6,830	8,100	12,068	200,000	400	227,548	-
총계	68,616	75,176	299,225	123,738	489,220	70,654	977,158	82,940	2,186,727	979,557,550

〈 축종별 혈청검사·병성감정 진단액 배정표 〉

● 소

(단위 : 마리)

구분	혈 청 검 사										
	아카바네	유행열	이바라기	췌장병	아이노	소 류코시스 AGP	소 류코시스 ELISA	브루 셀라병 I-ELISA	브루 셀라병 FPA	LSD 항체진단 키트*	소계
시 · 도	서울	-	-	-	-	-	-	480	-	-	480
	부산	-	-	-	-	-	-	960	250	-	1,210
	대구	-	-	-	-	-	-	480	250	-	730
	인천	-	-	-	-	-	-	480	-	-	480
	광주	-	-	-	-	100	-	480	250	-	830
	대전	-	-	-	-	100	-	480	-	-	580
	울산	-	-	-	-	-	-	-	-	-	0
	세종	-	-	-	-	100	-	480	-	-	580
	경기	-	-	-	-	-	1,152	2,400	1,250	-	4,802
	강원	-	-	-	-	1,300	-	1,440	1,000	-	3,740
	충북	-	-	-	-	400	-	2,400	500	-	3,300
	충남	-	-	-	-	400	1,920	2,880	1,000	-	6,200
	전북	-	-	-	-	-	-	3,840	1,000	-	4,840
	전남	-	-	-	-	900	-	1,920	1,750	-	4,570
	경북	-	-	-	-	1,000	-	1,920	2,000	-	4,920
	경남	-	-	-	-	500	-	3,360	1,000	-	4,860
	제주	-	-	-	-	200	-	480	250	-	930
	소계	-	-	-	-	5,000	3,072	24,480	10,500	-	43,052
검역본부	1,000	1,000	1,000	1,000	1,000	1,300	384	2,880	1,000	15,000	25,564
지정기관	-	-	-	-	-	-	-	-	-	-	-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6,300	3,456	27,360	11,500	15,000	68,616

※ 아카바네, 유행열, 이바라기, 췌장병, 아이노 혈청검사 : 검역본부의 봄, 가을 시료채취 계획에 따라 시도 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송부, 검역본부에서 검사

※ 소 류코시스 : 추후 혈청검사 계획 확정시 시도별 사육두수 등 반영하여 물량조정

* 검역본부에서 시도별 배부 예정

구분		병 성 감 정									합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바이러스성 설사병 3종*	요네병 ELISA	네오 스포라 ELISA	브루 셀라병 유전자 키트	우결핵 유전자 키트	탄저 유전자 키트	기종저 유전자 키트	LSD 유전자 진단키트**	소계	
시 · 도	서울	-	-	192	-	100	-	-	-	292	772
	부산	150	480	192	-	100	50	50	-	1,022	2,232
	대구	150	-	192	-	-	50	50	-	442	1,172
	인천	150	-	192	-	100	50	50	-	542	1,022
	광주	150	480	-	-	100	50	50	-	830	1,660
	대전	300	480	-	-	100	50	50	-	980	1,560
	울산	150	480	192	-	100	50	50	-	1,022	1,022
	세종	150	480	192	-	100	50	50	-	1,022	1,602
	경기	750	1,920	-	-	-	250	250	-	3,170	7,972
	강원	3,000	1,920	-	-	300	250	250	-	5,720	9,460
	충북	150	1,920	-	-	100	50	50	-	2,270	5,570
	충남	1,500	480	-	-	500	50	200	-	2,730	8,930
	전북	1,500	2,880	-	-	400	50	200	-	5,030	9,870
	전남	750	1,920	192	-	200	200	200	-	3,462	8,032
	경북	450	1,920	-	-	100	100	200	-	2,770	7,690
	경남	1,200	1,920	-	-	400	550	550	-	4,620	9,480
	제주	300	1,920	-	-	100	50	50	-	2,420	3,350
	소계	10,800	19,200	1,344	-	2,800	1,900	2,300	-	38,344	81,396
검역본부		6,750	6,720	3,072	960	2,300	600	800	15,480	36,682	62,246
지정기관		150	-	-	-	-	-	-	-	150	150
총 계		17,700	25,920	4,416	960	5,100	2,500	3,100	15,480	75,176	143,792

* 3종 : 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코로나바이러스 설사병, 로타바이러스 유전자 진단 키트

** 검역본부에서 시도별 배부 예정

● 돼지

(단위 : 마리)

구분		혈청검사						병 성 감 정					
		일본 뇌염 HI	일본 뇌염 ELISA	돼지열병 항체	돼지열병 항원	돼지 브루셀라 C-ELISA	소계	독소 플라즈마 ELISA	오제스키 감별진단	뇌심근염 HI	돼지파보 HI	돼지열병 FA	PRRS ELISA
시·도	서울	-	-	-	-	-	-	-	-	-	-	-	-
	부산	-	-	103	50	-	153	-	-	-	-	-	-
	대구	-	384	1,998	850	384	3,616	384	-	-	-	-	900
	인천	-	192	1,314	100	-	1,606	-	-	100	100	-	450
	광주	-	384	1,305	50	-	1,739	-	-	-	-	-	450
	대전	-	192	1,076	50	-	1,318	-	-	-	-	-	450
	울산	-	192	676	100	-	968	-	-	-	-	-	450
	세종	-	192	757	400	192	1,541	192	-	-	200	-	450
	경기	-	384	29,780	7,350	2,496	40,010	384	-	-	300	-	4,500
	강원	-	960	7,687	3,750	1,344	13,741	-	-	-	-	-	3,600
	충북	-	768	18,772	4,500	1,500	25,540	-	-	-	-	-	2,700
	충남	-	384	26,791	10,250	2,304	39,729	384	-	-	400	-	5,400
	전북	-	768	21,388	7,650	3,072	32,878	576	-	-	300	-	4,950
	전남	100	192	17,693	8,600	3,840	30,425	384	-	-	100	-	6,750
	경북	-	384	20,989	9,550	5,376	36,299	384	-	100	200	-	1,800
	경남	200	960	23,364	9,450	3,072	37,046	576	-	100	300	50	4,950
	제주	-	960	9,066	3,050	1,920	14,996	-	-	-	-	-	1,800
		소계	300	7,296	182,759	65,750	25,500	281,605	3,264	-	300	1,900	50
검역본부		700	1,344	10,000	5,000	576	17,620	3,264	570	1,400	1,400	600	3,220
지정기관		-	-	-	-	-	-	192	-	-	-		4,050
총 계		1,000	8,640	192,759	70,750	26,076	299,225	6,720	570	1,700	3,300	650	46,870

구분		병 성 감 정										
		TGE MCA	PED MCA	돼지로타 MCA	PRRS MCA	SI MCA	돼지썩코 MCA	오제스키 MCA	돼지파보 유전자	오제스키 유전자	일본뇌염 유전자	뇌심근염 유전자
시·도	서울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대구	-	-	-	-	-	-	-	48	48	96	96
	인천	-	-	-	-	-	-	-	48	48	96	96
	광주	-	-	-	-	-	-	-	48	48	48	48
	대전	-	-	-	-	-	-	-	48	48	48	48
	울산	-	-	-	-	-	-	-	48	48	48	48
	세종	-	-	-	-	-	-	-	48	48	48	48
	경기	-	-	-	-	-	-	-	96	96	96	96
	강원	-	-	-	-	-	-	-	48	48	48	48
	충북	-	-	-	-	-	-	-	-	-	-	-
	충남	-	-	-	-	-	-	-	48	48	96	96
	전북	-	-	-	-	-	-	-	192	192	192	192
	전남	-	-	-	-	-	-	-	96	96	96	96
	경북	-	-	-	-	-	-	-	144	144	144	144
	경남	50	50	50	50	50	-	50	192	192	192	192
	제주	-	-	-	-	-	-	-	96	96	96	96
	소계	50	50	50	50	50	0	50	1,200	1,200	1,344	1,344
검역본부		700	1,100	1,350	150	600	-	450	1,008	1,008	1,968	1,968
지정기관		100	100	50	100	50	-	0	96	96	48	48
총 계		850	1,250	1,450	300	700	0	500	2,304	2,304	3,360	3,360

구분	병 성 감 정									합계 (혈청검사+ 병성감정)
	PRRS 유전자	TGE 유전자	PED 유전자	돼지씨코 유전자	SI 유전자	SI 유전형 감별키트	ASF 항체 진단키트	ASF 유전자 검사	소계	
시 · 도	서울	-	-	-	-	-	-	-	-	-
	부산	50	50	50	50	-	-	-	200	353
	대구	400	100	100	100	100	-	-	2,372	5,988
	인천	50	50	50	100	-	-	-	1,188	2,794
	광주	50	50	50	50	50	-	-	892	2,631
	대전	50	50	50	50	50	-	-	892	2,210
	울산	50	50	50	50	-	-	-	842	1,810
	세종	100	50	50	100	-	-	-	1,334	2,875
	경기	250	250	250	250	100	-	-	6,668	46,678
	강원	1,500	250	250	250	-	-	-	6,042	19,783
	충북	300	50	50	-	-	-	-	3,100	28,640
	충남	2,000	500	500	400	50	-	-	9,922	49,651
	전북	200	1,000	1,000	150	200	-	-	9,144	42,022
	전남	800	150	150	100	100	-	-	8,918	39,343
	경북	1,800	250	250	700	-	-	-	6,060	42,359
	경남	4,500	350	350	700	150	-	-	13,094	50,140
	제주	1,000	500	500	500	100	-	-	4,784	19,780
	소계	13,100	3,700	3,700	3,550	900	-	-	75,452	357,057
검역본부	3,100	1,050	1,050	1,400	3,000	1,000	5,000	5,100	41,456	59,076
지정기관	450	350	350	400	350	-	-	-	6,830	6,830
총 계	16,650	5,100	5,100	5,350	4,250	1,000	5,000	5,100	123,738	422,963

● 가금류

(단위 : 마리)

구분		혈 청 검 사										병 성 감 정	
		ND HI	ND ELISA	AI HI(H9)	AI HI(H5)	AI HI(H7)	AI C-ELISA	MG ELISA	추백리 가금 티푸스 Plate	추백리 가금 티푸스 ELISA	소 계	AI 유전자 rRT-PCR	AI 유전자 multi-tube
시 · 도	서울	-	-	100	100	100	-	-	-	-	300	-	-
	부산	-	-	300	300	300	-	-	-	-	900	-	-
	대구	500	5,000	600	300	300	-	-	-	-	6,700	-	-
	인천	400	4,800	300	300	300	-	-	-	-	6,100	-	-
	광주	200	150	150	150	150	-	-	-	-	800	-	-
	대전	-	-	100	100	100	-	-	-	-	300	-	-
	울산	400	380	-	-	-	-	-	-	-	780	-	-
	세종	1,100	-	400	600	600	-	-	-	-	2,700	-	-
	경기	12,100	12,900	1,300	1,300	1,300	-	-	-	-	28,900	-	-
	강원	3,500	6,000	1,000	500	500	-	-	-	-	11,500	-	-
	충북	6,000	27,000	1,000	1,000	1,000	-	-	-	-	36,000	-	-
	충남	6,900	35,100	400	1,200	1,200	-	-	-	-	44,800	-	-
	전북	4,000	72,000	5,000	5,000	5,000	-	-	-	-	91,000	-	-
	전남	5,500	15,500	800	800	800	-	-	-	-	23,400	-	-
	경북	7,500	14,000	800	3,600	3,600	-	-	-	-	29,500	-	-
	경남	5,200	5,400	100	250	250	-	-	-	-	11,200	-	-
	제주	2,000	2,000	200	3,000	3,000	-	-	-	-	10,200	-	-
	소 계	55,300	200,230	12,550	18,500	18,500	-	-	-	-	305,080	-	-
	검역본부		5,000	-	54,000	54,000	54,000	4,800	1,380	2,400	460	176,040	2,976
지정기관		1,400	-	4,300	1,200	1,200	-	-	-	-	8,100	-	-
총 계		61,700	200,230	70,850	73,700	73,700	4,800	1,380	2,400	460	489,220	2,976	372

* (ND 진단액 물량) 추후 시도별 농장 사육현황에 따라 변동

구분	병 성 감 정													합계 (혈청검사 +병성감정)
	IB HI	IB ELISA	EDS HI	닭 전염성 F낭병 AGP	닭 전염성 F낭병 ELISA	MS Plate	MS ELISA	MG Plate	AI 신속 진단	ND 항원 진단 키트	가금 티푸스 감별	ND, AI 검사	소 계	
시·도	서울	-	-	-	-	-	-	-	-	48	50	-	98	398
	부산	-	-	-	-	-	-	-	-	96	-	-	96	996
	대구	-	460	200	-	460	200	-	200	96	50	-	1,666	8,366
	인천	-	-	-	100	-	200	-	200	144	50	-	694	6,794
	광주	-	460	-	-	460	100	-	100	192	50	-	1,362	2,162
	대전	-	-	-	200	-	-	-	-	48	-	-	248	548
	울산	-	460	-	-	460	100	-	100	96	50	-	1,266	2,046
	세종	-	460	200	-	460	-	-	-	48	50	-	1,218	3,918
	경기	-	3,220	-	-	2,300	2,000	-	-	672	250	-	8,442	37,342
	강원	-	-	-	-	-	-	-	-	480	250	-	730	12,230
	충북	-	-	-	-	-	-	-	-	1,440	50	-	1,490	37,490
	충남	-	-	-	-	460	100	-	100	576	100	-	1,336	46,136
	전북	-	-	-	-	-	-	-	-	1,200	500	300	2,000	93,000
	전남	-	460	-	-	460	1,400	-	1,400	1,152	100	-	4,972	28,372
	경북	-	1,380	-	-	920	1,000	-	1,000	384	200	-	4,884	34,384
	경남	-	1,840	-	-	2,760	-	-	-	816	250	1,100	6,766	17,966
	제주	-	-	-	-	-	-	2,000	-	960	50	-	3,010	13,210
	소 계	-	8,740	400	300	8,740	5,100	-	5,100	8,448	2,050	1,400	40,278	345,358
검역본부	1,000	2,760	400	400	1,380	2,000	1,380	2,000	990	2,400	250	-	18,308	194,348
지정기관	700	5,060	700	400	3,220	700	-	700	-	288	300	-	12,068	20,168
총 계	1,700	16,560	1,500	1,100	13,340	7,800	1,380	7,800	990	11,136	2,600	1,400	70,654	559,874

● 기 타

(단위 : 마리)

구분		혈 청 검 사									병 성 감 정						합계 (혈청검사+ 병성감정)
		구제역 SP 항체 검사*	구제역 NSP 항체 검사*	구제역 3종 혈청형 판별	구제역 항원 검사 ELISA	구제역 항원 검사 PCR	TSE ELISA	광견병 (소개) 혈청 검사	개브루 셀라병 진단액 (RSAT)	소계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15종	개 브루셀라 병 항체진단 키트	광견병 (소 개 나구라) FA	큐열 항체 진단 ELISA	꿀벌 전염병 3종 PCR	소계	
시·도	서울	350	350	-	-	-	-	-	100	800	-	50	-	-	300	350	1,150
	부산	350	350	-	-	-	-	-	100	800	-	100	-	-	150	250	1,050
	대구	3,850	3,850	20	-	-	-	-	20	7,740	-	10	-	-	150	160	7,900
	인천	1,750	1,750	-	-	-	-	-	40	3,540	-	-	-	-	150	150	3,690
	광주	350	700	10	-	-	-	-	-	1,060	-	-	-	-	150	150	1,210
	대전	1,400	700	10	-	-	-	-	20	2,130	-	10	-	-	300	310	2,440
	울산	2,800	2,100	10	-	-	-	-	-	4,910	-	-	-	-	150	150	5,060
	세종	1,750	1,750	30	-	-	-	-	-	3,530	-	-	-	-	150	150	3,680
	경기	60,200	53,200	140	-	4,800	-	-	1,100	119,440	-	450	100	-	750	1,300	120,740
	강원	20,650	21,000	50	-	384	-	-	300	42,384	-	300	-	-	2,100	2,400	44,784
	충북	20,650	20,650	50	-	864	-	-	60	42,274	-	50	-	-	-	50	42,324
	충남	64,400	60,200	60	-	576	-	-	100	125,336	-	100	-	-	1,500	1,600	126,936
	전북	37,100	35,000	100	-	384	-	-	50	72,634	-	50	-	-	3,000	3,050	75,684
	전남	48,300	48,650	100	-	1,152	-	-	100	98,302	-	50	50	-	1,500	1,600	99,902
	경북	54,600	49,350	50	-	864	-	-	-	104,864	-	-	-	-	2,250	2,250	107,114
	경남	38,500	32,550	70	-	864	-	-	60	72,044	-	50	-	-	3,000	3,050	75,094
	제주	15,750	12,250	100	-	4,320	-	-	-	32,420	-	10	-	-	300	310	32,730
	소계	372,750	344,400	800	-	14,208	-	-	2,050	734,208	-	1,230	150	-	15,900	17,280	751,488
검역본부		1,750	3,850	3,000	1,200	30,000	750	1,000	1,400	42,950	38,400	900	1,000	960	24,000	65,260	108,210
지정기관		200,000	-	-	-	-	-	-	-	200,000	-	-	-	-	400	400	200,400
총 계		574,500	348,250	3,800	1,200	44,208	750	1,000	3,450	977,158	38,400	2,130	1,150	960	40,300	82,940	1,060,098

* 진단액 배부 최소단위 고려하여 배정 물량을 산정함. 구제역 SP항체 진단액 중 지정기관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 물량 200,000건은 배부 대상 아님(지정기관 자가 구입)

〈 2026년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용 진단액 공급·배정 계획 〉

(단위 : 마리)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배정기관			비고
				시도	검역본부	진단기관	
소	혈청	소아카바네병	1,000	-	1,000	-	
		소유행열	1,000	-	1,000	-	
		이바라기	1,000	-	1,000	-	
		추잔병	1,000	-	1,000	-	
		아이노	1,000	-	1,000	-	
		소류코시스 AGP	6,300	5,000	1,300	-	
		소류코시스 ELISA kit	3,456	3,072	384	-	
		브루셀라병 I-ELISA	27,360	24,480	2,880	-	
		브루셀라병 FPA	11,500	10,500	1,000	-	
		럼피스킨병 항체진단키트	15,000	-	15,000	-	
	병성 감정 · 검역	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5,900	3,600	2,250	50	
		코로나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5,900	3,600	2,250	50	
		로타바이러스 유전자진단 키트	5,900	3,600	2,250	50	
		요네병 ELISA	25,920	19,200	6,720	-	
		네오스포라 ELISA	4,416	1,344	3,072	-	
		브루셀라병 유전자키트	960	-	960	-	
		우결핵병 유전자 키트	5,100	2,800	2,300	-	
		탄저 유전자 키트	2,500	1,900	600	-	
		기종저 유전자 키트	3,100	2,300	800	-	
		럼피스킨병 유전자 진단키트	15,480	-	15,480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배정기관			비고
				시도	검역본부	진단기관	
돼지	혈청 검사	돼지일본뇌염 HI	1,000	300	700	-	
		돼지일본뇌염 ELISA 키트	8,640	7,296	1,344	-	
		돼지열병 항체검사 ELISA*	192,759	182,759*	10,000	-	
		돼지열병 항원검사 감별 PCR	70,750	65,750	5,000	-	
		돼지브루셀라병 C - ELISA(항체)	26,076	25,500	576	-	
	병성 감정	톡소플라즈마 ELISA	6,720	3,264	3,264	192	
		돼지오제스키병 감별진단 Kit	570	-	570	-	
		돼지뇌심근염바이러스감염증 HI	1,700	300	1,400	-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HI	3,300	1,900	1,400	-	
		돼지열병 형광항체	650	50	600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ELISA Kit	46,870	39,600	3,220	4,050	
		돼지전염성위장염 MCA	850	50	700	100	
		돼지유행성설사 MCA	1,250	50	1,100	100	
		돼지로타바이러스감염증 MCA	1,450	50	1,350	50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MCA	300	50	150	100	
		돼지인플루엔자 MCA	700	50	600	50	
		돼지싸코바이러스 MCA	-	-	-	-	
		돼지오제스키바이러스 MCA	500	50	450	-	
		돼지파보 유전자키트	2,304	1,200	1,008	96	
		돼지오제스키 유전자키트	2,304	1,200	1,008	96	
		돼지일본뇌염 유전자키트	3,360	1,344	1,968	48	
		뇌심근염 유전자키트	3,360	1,344	1,968	48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유전자키트	16,650	13,100	3,100	450	
		돼지전염성위장염 유전자키트	5,100	3,700	1,050	350	
		돼지유행성설사 유전자키트	5,100	3,700	1,050	350	
		돼지싸코 유전자 키트	5,350	3,550	1,400	400	
		돼지인플루엔자 유전자 키트	4,250	900	3,000	350	
		돼지인플루엔자 유전형감별 키트	1,000	-	1,000	-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진단키트	5,000	-	5,000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	5,100	-	5,100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배정기관			비고
				시도	검역본부	진단기관	
닭	혈청 검사	뉴캐슬병 HI*	61,700	55,300*	5,000	1,400	
		뉴캐슬병 ELISA*	200,230	200,230*	-	-	
		조류인플루엔자 HI(H9형)	70,850	12,550	54,000	4,300	
		조류인플루엔자 HI(H5형)	73,700	18,500	54,000	1,200	
		조류인플루엔자 HI(H7형)	73,700	18,500	54,000	1,200	
		조류인플루엔자 C-ELISA	4,800	-	4,800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ELISA	1,380	-	1,380	-	
		추백리·가금티푸스 PLATE	2,400	-	2,400	-	
		추백리·가금티푸스 ELISA	460	-	460	-	
	병성 감정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진단키트(rRT-PCR)	2,976	-	2,976	-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진단키트(AIV_Multi-tube)	372	-	372	-	
		닭전염성기관지염 HI*	1,700	-*	1,000	700	
		닭전염성기관지염 ELISA*	16,560	8,740*	2,760	5,060	
		산란저하증후군 HI*	1,500	400*	400	700	
		닭전염성F낭병 AGP	1,100	300	400	400	
		닭전염성F낭병 ELISA	13,340	8,740	1,380	3,220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PLATE	7,800	5,100	2,000	700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ELISA	1,380	-	1,380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PLATE	7,800	5,100	2,000	700	
		조류인플루엔자 신속진단키트	990	-	990	-	
		뉴캐슬병 항원검사 진단키트	11,136	8,448	2,400	288	
		가금티푸스 감별 동정 키트	2,600	2,050	250	300	
		ND, AI 바이러스검사*	1,400	1,400*	-	-	
기타	혈청 검사	구제역 혈청 SP항체 검사(소, 돼지, 염소)**	374,500	372,750	1,750	-**	
		구제역 혈청 NSP항체 검사(소, 돼지, 염소)	348,250	344,400	3,850	-	
		구제역 3종 혈청형 판별 신속진단키트	3,800	800	3,000	-	
		구제역 항원검사 ELISA	1,200	-	1,200	-	
		구제역 항원검사 PCR	44,208	14,208	30,000	-	
		전염성해면상뇌증 ELISA	750	-	750	-	
		광견병(소, 개) 혈청검사	1,000	-	1,000	-	
		개브루셀라병 진단액(RSAT)	3,450	2,050	1,400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배정기관			비고
				시도	검역본부	진단기관	
기타	병성 감정 · 검역	수포성구내염 ELISA(말)	2,200	-	2,200	-	
		일본뇌염 항체검사(말)	1,500	-	1,500	-	
		말바이러스동맥염 항체검사(말)	2,200	-	2,200	-	
		아프리카마역 항체진단키트(말)	2,200	-	2,200	-	
		아프리카마역 유전자 검사(말)	2,200	-	2,200	-	
		말전염성 빈혈 검사(ELISA 키트 등)(말)	2,200	-	2,200	-	
		말인플루엔자 항체검사	1,500	-	1,500	-	
		블루팅병 항체진단키트	5,500	-	5,500	-	
		블루팅병 유전자진단 검사	5,500	-	5,500	-	
		우폐역 항체진단키트	800	-	800	-	
		리프트계곡열 항체진단키트	5,500	-	5,500	-	
		웨스트나일열 항체진단키트	2,200	-	2,200	-	
		가성우역 항체진단키트	3,000	-	3,000	-	
		돼지수포병 항체진단키트	1,800	-	1,800	-	
		말전염성자궁염 유전자 확진검사	100	-	100	-	
		개브루셀라병 항체진단키트	2,130	1,230	900	-	
		광견병(소, 개, 너구리 등)형광항체	1,150	150	1,000	-	
		큐열 항체진단 ELISA	960	-	960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 7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3,450	5,300	8,000	150	
		꿀벌 부저병 등 3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3,450	5,300	8,000	150	
		꿀벌 석고병 등 4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3,400	5,300	8,000	100	
계		1,986,727	1,535,299	423,880	27,548		

※ 진단액 전체 물량(1,986,727두분)에는 검역본부 공급물량(1,644,715두분)과 시도 직접 구입 진단액 7종(342,012두분)이 포함되어 있음

* 시·도에서 직접 구입 진단액(7종, 342,012두분) : 돼지열병 항체 검사(도축장 물량 75,942두분), 뉴캐슬병 HI(55,300두분), 뉴캐슬병 ELISA(200,230두분), 전염성기관지염 HI(-두분), 전염성기관지염 ELISA(8,740두분), 산란저하증후군 HI(400두분), ND·AI 바이러스 검사(1,400두분)

** 구제역 혈청 SP 항체검사 중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의 20만두 물량은 직접 구입 진단액으로 미포함

〈 검역본부 (생산·구매) 공급 진단액 배정시기 〉

(단위 : 마리)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배정시기(월)					
				3	4	5	7	9	10
소	혈청 검사	소아카바네병	1,000	-	-	-	1,000	-	-
		소유행열	1,000	-	-	-	1,000	-	-
		이바라기	1,000	-	-	-	1,000	-	-
		추잔병	1,000	-	-	-	1,000	-	-
		아이노	1,000	-	-	-	1,000	-	-
		소류코시스 AGP	6,300	6,300	-	-	-	-	-
		소류코시스 ELISA kit	3,456	3,456	-	-	-	-	-
		브루셀라병 I-ELISA	27,360	27,360	-	-	-	-	-
		브루셀라병 FPA	11,500	11,500	-	-	-	-	-
		럼피스킨병 항체진단키트	15,000	15,000	-	-	-	-	-
	병성 감정 · 검역	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5,900	5,900	-	-	-	-	-
		코로나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5,900	5,900	-	-	-	-	-
		로타바이러스 유전자진단 키트	5,900	5,900	-	-	-	-	-
		요네병 ELISA	25,920	-	-	25,920	-	-	-
		네오스포라 ELISA	4,416	-	-	4,416	-	-	-
		브루셀라병 유전자키트	960	-	-	960	-	-	-
		우결핵병 유전자 키트	5,100	-	-	5,100	-	-	-
		탄저 유전자 키트	2,500	-	-	2,500	-	-	-
		기종저 유전자 키트	3,100	-	-	3,100	-	-	-
		럼피스킨병 유전자 진단키트	15,480	-	-	15,480	-	-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배정시기(월)					
				3	4	5	7	9	10
돼지	혈청 검사	돼지일본뇌염 HI	1,000	1,000	-	-	-	-	-
		돼지일본뇌염 ELISA 키트	8,640	-	-	8,640	-	-	-
		돼지열병 항체검사 ELISA	116,817	116,817	-	-	-	-	-
		돼지열병 항원검사 감별 PCR	70,750	70,750	-	-	-	-	-
		돼지브루셀라병 C - ELISA(항체)	26,076	-	-	26,076	-	-	-
	병성 감정	톡소플라즈마 ELISA	6,720	-	-	6,720	-	-	-
		돼지오제스키병 감별진단 Kit	570	570	-	-	-	-	-
		돼지뇌심근염바이러스감염증 HI	1,700	1,700	-	-	-	-	-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HI	3,300	3,300	-	-	-	-	-
		돼지열병 형광항체	650	650	-	-	-	-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ELISA Kit	46,870	46,870	-	-	-	-	-
		돼지전염성위장염 MCA	850	850	-	-	-	-	-
		돼지유행성설사 MCA	1,250	1,250	-	-	-	-	-
		돼지로타바이러스감염증 MCA	1,450	1,450	-	-	-	-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MCA	300	300	-	-	-	-	-
		돼지인플루엔자 MCA	700	700	-	-	-	-	-
		돼지췌코바이러스 MCA	-	-	-	-	-	-	-
		돼지오제스키바이러스 MCA	500	500	-	-	-	-	-
		돼지파보 유전자키트	2,304	2,304	-	-	-	-	-
		돼지오제스키 유전자키트	2,304	2,304	-	-	-	-	-
		돼지일본뇌염 유전자키트	3,360	3,360	-	-	-	-	-
		뇌심근염 유전자키트	3,360	3,360	-	-	-	-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유전자키트	16,650	16,650	-	-	-	-	-
		돼지전염성위장염 유전자키트	5,100	5,100	-	-	-	-	-
		돼지유행성설사 유전자키트	5,100	5,100	-	-	-	-	-
		돼지췌코 유전자 키트	5,350	5,350	-	-	-	-	-
		돼지인플루엔자 유전자 키트	4,250	4,250	-	-	-	-	-
		돼지인플루엔자 유전형감별 키트	1,000	1,000	-	-	-	-	-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진단키트	5,000	5,000	-	-	-	-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	5,100	5,100	-	-	-	-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배정시기(월)					
				3	4	5	7	9	10
닭	혈청 검사	뉴캐슬병 HI	6,400	-	-	6,400	-	-	-
		뉴캐슬병 ELISA	-	-	-	-	-	-	-
		조류인플루엔자 HI(H9형)	70,850	-	-	-	-	70,850	-
		조류인플루엔자 HI(H5형)	73,700	-	-	-	-	73,700	-
		조류인플루엔자 HI(H7형)	73,700	-	-	-	-	73,700	-
		조류인플루엔자 C-ELISA	4,800	4,800	-	-	-	-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ELISA	1,380	1,380	-	-	-	-	-
		추백리·가금티푸스 PLATE	2,400	-	-	2,400	-	-	-
		추백리·가금티푸스 ELISA	460	-	-	460	-	-	-
	병성 감정	AI 유전자진단키트(rRT-PCR)	2,976	-	-	2,976	-	-	-
		AI 유전자진단키트(AIV_Multi-tube)	372	-	-	372	-	-	-
		닭전염성기관지염 HI	1,700	-	-	1,700	-	-	-
		닭전염성기관지염 ELISA	7,820	-	-	7,820	-	-	-
		산란저하증후군 HI	1,100	-	-	1,100	-	-	-
		닭전염성F낭병 AGP	1,100	-	-	1,100	-	-	-
		닭전염성F낭병 ELISA	13,340	-	-	13,340	-	-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PLATE	7,800	7,800	-	-	-	-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ELISA	1,380	-	-	1,380	-	-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PLATE	7,800	7,800	-	-	-	-	-
		조류인플루엔자 신속진단키트	990	-	-	990	-	-	-
		뉴캐슬병 항원검사 진단키트	11,136	11,136	-	-	-	-	-
		가금티푸스 감별 동정 키트	2,600	2,600	-	-	-	-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배정시기(월)						
				3	4	5	7	9	10	
기타	혈청 검사	구제역 혈청 SP항체 검사(소,돼지,염소)	374,500	200,000	-	-	-	-	-	174,500
		구제역 혈청 NSP항체 검사(소,돼지,염소)	348,250	200,000	-	-	-	-	-	148,250
		구제역 3종 혈청형 판별 신속진단키트	3,800	-	-	3,800	-	-	-	-
		구제역 항원검사 ELISA	1,200	-	-	1,200	-	-	-	-
		구제역 항원검사 PCR	44,208	-	-	44,208	-	-	-	-
		전염성해면상뇌증 ELISA	750	-	-	750	-	-	-	-
		광견병(소, 개) 혈청검사	1,000	-	-	1,000	-	-	-	-
		개브루셀라병 진단액(RSAT)	3,450	1,620	-	-	-	1,830	-	-
	병성 감정 · 검역	수포성구내염 ELISA(말)	2,200	2,200	-	-	-	-	-	-
		일본뇌염 항체검사(말)	1,500	1,500	-	-	-	-	-	-
		말바이러스동맥염 항체검사(말)	2,200	2,200	-	-	-	-	-	-
		아프리카마역 항체진단키트(말)	2,200	2,200	-	-	-	-	-	-
		아프리카마역 유전자 검사(말)	2,200	2,200	-	-	-	-	-	-
		말전염성 빈혈 검사(ELISA 키트 등)(말)	2,200	2,200	-	-	-	-	-	-
		말인플루엔자 항체검사	1,500	1,500	-	-	-	-	-	-
		블루팅병 항체진단키트	5,500	5,500	-	-	-	-	-	-
		블루팅병 유전자진단 검사	5,500	5,500	-	-	-	-	-	-
		우폐역 항체진단키트	800	800	-	-	-	-	-	-
		리프트계곡열 항체진단키트	5,500	5,500	-	-	-	-	-	-
		웨스트나일열 항체진단키트	2,200	2,200	-	-	-	-	-	-
		가성우역 항체진단키트	3,000	3,000	-	-	-	-	-	-
		돼지수포병 항체진단키트	1,800	1,800	-	-	-	-	-	-
		말전염성자궁염 유전자 확진검사	100	-	-	100	-	-	-	-
		개브루셀라병 항체진단키트	2,130	-	-	2,130	-	-	-	-
		광견병(소, 개, 너구리 등)형광항체	1,150	1,150	-	-	-	-	-	-
		큐열 항체진단 ELISA	960	-	-	960	-	-	-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 7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3,450	-	-	13,450	-	-	-	-
		꿀벌 부저병 등 3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3,450	-	-	13,450	-	-	-	-
		꿀벌 석고병 등 4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3,400	-	-	13,400	-	-	-	-
계		1,644,715	863,487	-	233,398	6,830	218,250	322,750		

〈 검역본부 (생산·구매) 공급 진단액 예산 산출내역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마리)	단가 (원)	예산 (천원)	담당과 (검역본부)
소	혈청 검사	소아카바네병	1,000	2,000	2,000	질병진단과
		소유행열	1,000	2,000	2,000	"
		이바라기	1,000	2,000	2,000	"
		추잔병	1,000	2,000	2,000	"
		아이노	1,000	2,000	2,000	"
		소류코시스 AGP	6,300	2,100	13,230	바이러스질병과
		소류코시스 ELISA kit	3,456	3,810	13,167	"
		브루셀라병 I-ELISA	27,360	2,100	57,456	세균질병과
		브루셀라병 FPA	11,500	7,000	80,500	"
		럼피스킨병 항체진단키트	15,000	13,000	195,000	해외전염병과
	병성 감정 · 검역	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5,900	7,700	45,430	바이러스질병과
		코로나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5,900	7,700	45,430	"
		로타바이러스 유전자진단 키트	5,900	7,700	45,430	"
		요네병 ELISA	25,920	8,400	217,728	질병진단과
		네오스포라 ELISA	4,416	7,390	32,634	세균질병과
		브루셀라병 유전자키트	960	4,000	3,840	"
		우결핵병 유전자 키트	5,100	8,800	44,880	"
		탄저 유전자 키트	2,500	4,000	10,000	"
		기종저 유전자 키트	3,100	4,000	12,400	"
		럼피스킨병 유전자 진단키트	15,480	75,000	1,161,000	해외전염병과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마리)	단가 (원)	예산 (천원)	담당과 (검역본부)
돼지	혈청 검사	돼지일본뇌염 HI	1,000	4,600	4,600	바이러스질병과
		돼지일본뇌염 ELISA 키트	8,640	4,800	41,472	"
		돼지열병 항체검사 ELISA	116,817	1,500	175,225	질병진단과
		돼지열병 항원검사 감별 PCR	70,750	16,000	1,132,000	"
		돼지브루셀라병 C - ELISA(항체)	26,076	8,500	221,646	"
	병성 감정	톡소플라즈마 ELISA	6,720	5,850	39,312	세균질병과
		돼지오제스키병 감별진단 Kit	570	1,700	969	질병진단과
		돼지뇌심근염바이러스감염증 HI	1,700	2,000	3,400	바이러스질병과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HI	3,300	2,000	6,600	"
		돼지열병 형광항체	650	2,200	1,430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ELISA Kit	46,870	5,500	257,785	질병진단과
		돼지전염성위장염 MCA	850	2,200	1,870	바이러스질병과
		돼지유행성설사 MCA	1,250	2,200	2,750	"
		돼지로타바이러스감염증 MCA	1,450	2,200	3,190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MCA	300	2,200	660	"
		돼지인플루엔자 MCA	700	2,200	1,540	"
		돼지싸코바이러스 MCA	-	2,200	-	"
		돼지오제스키바이러스 MCA	500	2,200	1,100	"
		돼지파보 유전자키트	2,304	11,000	25,344	질병진단과
		돼지오제스키 유전자키트	2,304	11,000	25,344	"
		돼지일본뇌염 유전자키트	3,360	14,000	47,040	"
		뇌심근염 유전자키트	3,360	14,000	47,040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유전자키트	16,650	10,000	166,500	바이러스질병과
		돼지전염성위장염 유전자키트	5,100	7,700	39,270	"
		돼지유행성설사 유전자키트	5,100	7,700	39,270	"
		돼지싸코 유전자 키트	5,350	7,300	39,055	"
		돼지인플루엔자 유전자 키트	4,250	9,170	38,972	"
		돼지인플루엔자 유전형감별 키트	1,000	8,600	8,600	"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진단키트	5,000	14,000	70,000	해외전염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	5,100	25,000	127,500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마리)	단가 (원)	예산 (천원)	담당과 (검역본부)
닭	혈청 검사	뉴캐슬병 HI	6,400	380	2,432	조류질병과
		뉴캐슬병 ELISA	-	1,800	-	"
		조류인플루엔자 HI(H9형)	70,850	1,500	106,275	AI연구진단과
		조류인플루엔자 HI(H5형)	73,700	1,500	110,550	"
		조류인플루엔자 HI(H7형)	73,700	1,500	110,550	"
		조류인플루엔자 C-ELISA	4,800	10,000	48,000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ELISA	1,380	2,600	3,588	조류질병과
		추백리·가금티푸스 PLATE	2,400	100	240	"
		추백리·가금티푸스 ELISA	460	4,150	1,909	"
	병성 감정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진단키트(rRT-PCR)	2,976	45,000	133,920	AI연구진단과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진단키트(AIV_Multi-tube)	372	32,000	11,904	"
		닭전염성기관지염 HI	1,700	1,220	2,074	조류질병과
		닭전염성기관지염 ELISA	7,820	1,543	12,066	"
		산란저하증후군 HI	1,100	500	550	"
		닭전염성F낭병 AGP	1,100	1,250	1,375	"
		닭전염성F낭병 ELISA	13,340	1,543	20,583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PLATE	7,800	500	3,900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ELISA	1,380	2,600	3,588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PLATE	7,800	400	3,120	"
		조류인플루엔자 신속진단키트	990	8,400	8,316	AI연구진단과
		뉴캐슬병 항원검사 진단키트	11,136	30,800	342,988	조류질병과
		가금티푸스 감별 동정 키트	2,600	13,200	34,320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수량 (마리)	단가 (원)	예산 (천원)	담당과 (검역본부)
기타	혈청 검사	구제역 혈청 SP항체 검사(소,돼지,염소)	374,500	5,630	2,108,435	구제역진단과
		구제역 혈청 NSP항체 검사(소,돼지,염소)	348,250	2,970	1,034,302	"
		구제역 3종 혈청형 판별 신속진단키트	3,800	47,200	179,360	"
		구제역 항원검사 ELISA	1,200	90,000	108,000	"
		구제역 항원검사 PCR	44,208	22,000	972,576	"
		전염성해면상뇌증 ELISA	750	200,000	150,000	해외전염병과
		광견병(소, 개) 혈청검사	1,000	2,000	2,000	질병진단과
		개브루셀라병 진단액(RSAT)	3,450	1,000	3,450	세균질병과
	병성 감정	수포성구내염 ELISA(말)	2,200	18,000	39,600	해외전염병과
		일본뇌염 항체검사(말)	1,500	5,000	7,500	바이러스질병과
		말바이러스동맥염 항체검사(말)	2,200	15,000	33,000	해외전염병과
		아프리카마역 항체진단키트(말)	2,200	15,000	33,000	"
		아프리카마역 유전자 검사(말)	2,200	25,000	55,000	"
		말전염성 빈혈 검사(ELISA 키트 등)(말)	2,200	15,000	33,000	"
		말인플루엔자 항체검사	1,500	10,000	15,000	바이러스질병과
		블루텅병 항체진단키트	5,500	10,000	55,000	해외전염병과
		블루텅병 유전자진단 검사	5,500	25,000	137,500	"
		우폐역 항체진단키트	800	12,000	9,600	"
		리프트계곡열 항체진단키트	5,500	15,000	82,500	"
		웨스트나일열 항체진단키트	2,200	25,000	55,000	"
		가성우역 항체진단키트	3,000	18,000	54,000	"
		돼지수포병 항체진단키트	1,800	18,000	32,400	"
		말전염성자궁염 유전자 확진검사	100	25,000	2,500	"
		개브루셀라병 항체진단키트	2,130	15,000	31,950	질병진단과
		광견병(소, 개, 너구리 등)형광항체	1,150	2,200	2,530	바이러스질병과
		큐열 항체진단 ELISA	960	11,000	10,560	질병진단과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 7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3,450	26,250	353,062	세균질병과
		꿀벌 부저병 등 3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3,450	9,240	124,278	"
		꿀벌 석고병 등 4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3,400	9,240	123,816	"
계		1,644,715		11,368,776		

● 소류코시스 혈청검사 계획(안)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요경비(재료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종축장(국립·도립) 16호* 사육 소 : 종모우 및 후보 종모우 선발대상인 모든 소 * 농진청 3호, 각 도 9호, 농협 4호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 소요경비 ☐ 진단액(AGP 또는 ELISA) 공급 : 검역본부에서 일괄 생산하여 시·도(동물위생시험소)에 공급 ☐ 재료비 : 두당 270원(국비 100%)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360	97.2	-	97.2	☐ 검진주기 ☐ 반기별 1회 * 구제역 혈청 예찰과 함께 동일한 시기에 실시
강원	360	97.2	-	97.2	
충북	80	21.6	-	21.6	
충남	460	124.2	-	124.2	
전북	180	48.6	-	48.6	☐ 실시요령 ☐ 시험소장은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실시 ☐ 검사방법 : 한천겔면역확산법 또는 ELISA ☐ 검사결과 보고 - 검사기관은 매월 검사결과를 KAHIS에 입력 - 검역본부는 분기별 검사 분석 및 다음년도 예찰 대상·물량 산정을 위한 예찰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보고 * 예찰 물량의 적정성, 검사 대상 종축장 이외 일반 농장 사육 소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포함
전남	180	48.6	-	48.6	
경북	540	145.8	-	145.8	
경남	180	48.6	-	48.6	
제주	228	61.5	-	61.5	☐ 양성 판정시 조치사항 ☐ 시험소장은 해당 농가 관할 시·군 통보 및 발생농장의 소 전두수 검사 실시 ☐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이동제한 조치 ☐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소는 농장내 살처분 ☐ 임상증상이 없는 소는 도축장 조기 도태 지도
검역 본부	1,700	459.0	-	459.0	
계	4,268	1,152.3	-	1,152.3	

● 소 브루셀라병 예찰 계획

(단위 : 건(MRT), 농가(호), 두)

구분	위험도 기반 예찰			목적		거래/출하 (검사증명서 휴대 관련, 두수)	세 부 내 역
	통계		호				
	한·육우			젖소 (M.R.T)			
	호	두수					
서울	-	-	-	-	-	15	① 통계 예찰 ○ 검사대상 : ① 12개월령 이상 한·육우 암소, ② 젖소 : 집유장에 납유되는 농장별 원유 ○ 실시요령 ① 한·육우 : 농가당 20두 검사(단, 사육두수가 20두 미만이면 전체 두수 검사) ② 젖소 : 농장별 연 4회(분기별) 이상 - 검사시료는 건당 1~50두 정도의 우군 원유를 기준으로 채취 - 양성 및 의양성에 대한 개체별 추적검사는 Rose-Bengal 방법으로 실시 - 타 시·도 소재 농장의 소에서 양성 및 의양성우가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시·도에 통보(개체별 추적검사 시행) ② 목적 예찰 ○ 검사대상 : ① 고위험 지역* 내 사육되는 12개월 이상 한·육우 암소 * 최근 3년간 브루셀라병이 1건 이상 발생한 시·군 ② 가축거래상인 사육 소(연 4회 이상) ③ 자연교배 수소(연 4회 이상) ○ 실시요령 - 농가당 11두 검사(단, 사육두수가 11두 미만이면 전체 두수 검사) ③ 거래 또는 출하 전 검사(검사증명서 휴대 제 관련) ○ 검사대상 : ① 거래되는 소, ②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단, 난소 적출 소는 도축 출하 전 검사 제외) <공통 사항> □ 실시기간 : 연중 ○ 시료채취 ① 시·도 : 가축방역 기관 통계·목적 예찰 및 거래/출하 검사 물량, ② 방역본부 :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관련, 시·군에서 채혈을 요청한 소 ※ 브루셀라병 거래/출하 검사 물량에 따라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량 조정 가능(방역본부 물량은 림프스킨 예찰 등 실시량에 따라 조정) ○ 1차 검사 : Rose-Bengal ○ 2차 검사 : CF, ELISA 또는 FPA □ 실시요령 ○ 브루셀라병 의심 우군은 개체별 검사 ○ 발생축과 동거 또는 감염 의심 지역에 대하여는 개체별(한·육우 포함) 검사 실시 ○ 유산 소, 유산태아, 유산 물질 확인 시 병성감정 기관에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세균 분리 등), 병성감정기관은 검사 결과를 검역본부에 통보 ○ 검사결과 보고 - 검사기관은 매월 검사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 - 검역본부는 분기별 검사 분석 결과 및 다음년도 예찰 물량 산정을 위한 예찰 체계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구제역방역과)에 보고 *발생 상황, 예찰 민감도 산출, 검사 단위별 양성율 평가(거래/출하, 통계·목적 예찰 등), 검사방법, 축종에 따른 양성율 평가 등(10월 제출)
부산	3	48	22	1	11	493	
대구	33	528	756	10	109	6,076	
인천	22	352	-	7	73	4,162	
광주	6	96	34	2	21	1,296	
대전	6	96	-	2	21	2,760	
울산	62	992	140	19	205	11,508	
세종	27	432	713	8	90	8,427	
경기	258	4,128	7,323	77	849	105,250	
강원	255	4,080	559	76	839	70,992	
충북	219	3,504	500	65	719	76,703	
충남	462	7,392	4,022	138	1,517	135,119	
전북	382	6,112	1,261	114	1,256	116,068	
전남	661	10,576	1,427	197	2,170	180,048	
경북	745	11,920	2,185	222	2,443	184,473	
경남	391	6,256	1,525	117	1,285	91,091	
제주	29	464	228	9	94	9,664	
소계	3,561	56,976	20,695	1,064	11,702	1,004,145	

● 구제역 예찰 계획

(단위: 두)

구분	NSP항체(감염항체)			SP 항체 (백신항체)	세 부 내 역																		
	통계 예찰	목적 예찰	소계																				
서울	-	-	-	-	□ NSP항체 [통계예찰] ○ (검사대상) 전국 소(50두 미만)농가 및 염소 농가 - 증화 2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농가선정 후 개체별 검사 ○ (시료채취 세부기준) 세부기준 준수하여 시료 채취																		
부산	35	172	207	274																			
대구	190	3,384	3,574	3,796	<table><tr><th rowspan="2">축종</th><th rowspan="2">세부채취기준</th><th colspan="2">1차 검사</th></tr><tr><th>세부기준 해당개체</th><th>검사두수*</th></tr><tr><td rowspan="2">소</td><td>(사전)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td><td>2두</td><td rowspan="2">5두</td></tr><tr><td>(현장) 6개월 ~ 12개월령</td><td>3두</td></tr><tr><td rowspan="2">염소</td><td rowspan="2">6개월령 ~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td><td>5두</td><td>5두</td></tr><tr><td>16두</td><td>16두</td></tr></table>	축종	세부채취기준	1차 검사		세부기준 해당개체	검사두수*	소	(사전)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2두	5두	(현장) 6개월 ~ 12개월령	3두	염소	6개월령 ~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5두	5두	16두	16두
축종	세부채취기준	1차 검사																					
		세부기준 해당개체	검사두수*																				
소	(사전)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2두	5두																				
	(현장) 6개월 ~ 12개월령	3두																					
염소	6개월령 ~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5두	5두																				
		16두	16두																				
인천	290	1,174	1,464	1,563																			
광주	45	418	463	332	※ (염소) 300두 미만 농가: 5두, 300두 이상 농가: 16두 검사 ○ (시료채취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기관 협조) ○ (검사실시기관) 가축방역기관 ○ (검사방법) NSP항체 ELISA(메디안디노스틱, 바이오노트, 프라이오닉스) ※ NSP항체 ELISA 3종 중 2종 항체 진단키트에서 모두 양성인 경우 최종 양성으로 판정하고 'NSP 항체 양성축 처리요령'에 따라 조치																		
대전	70	295	365	1,065																			
울산	401	1,667	2,068	2,756	□ NSP항체 [목적예찰] ○ (검사대상) 소(50두 이상 농가, 도축장, 종돈장), 돼지(농가, 도축장, 종돈장), 염소(도축장), 기타(의뢰검사, 야생동물, NSP 항체 양성축 추적 조사 등) - (소 농가)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우수(9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80~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돼지 농가) 돼지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9두(번식돈 3두, 비육돈 16두) 검사 ※ 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검사 * 우수(8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30/60~80%미만): 연 1회, 미흡(30/6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염소, 도축장) 도축장 출하 염소 중 무작위 검사 - (돼지, 도축장) 비육돈(16두, 연 1회) - (소, 종축장) 16개소, 연 2회(시험소에서 NSP항체 검사 후 동일 시료로 검역본부에서 SP항체 검사 수행) - (야생동물) 야생멧돼지는 CSF 시료, 사슴은 결핵 및 CWD 시료 활용 ○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기관) - (돼지 농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기관 협조) - (그외)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 (검사실시기관)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검사방법) NSP 항체 통계예찰과 동일																		
경기	2,867	50,275	53,142	59,859																			
강원	2,983	17,942	20,925	20,427	○ (소 농가)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우수(9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80~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돼지 농가) 돼지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9두(번식돈 3두, 비육돈 16두) 검사 ※ 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검사 * 우수(8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30/60~80%미만): 연 1회, 미흡(30/6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염소, 도축장) 도축장 출하 염소 중 무작위 검사 - (돼지, 도축장) 비육돈(16두, 연 1회) - (소, 종축장) 16개소, 연 2회(시험소에서 NSP항체 검사 후 동일 시료로 검역본부에서 SP항체 검사 수행) - (야생동물) 야생멧돼지는 CSF 시료, 사슴은 결핵 및 CWD 시료 활용 ○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기관) - (돼지 농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기관 협조) - (그외)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 (검사실시기관)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검사방법) NSP 항체 통계예찰과 동일																		
충북	2,572	17,749	20,321	20,493																			
충남	4,484	55,565	60,049	64,147	○ (소 농가)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우수(9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80~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돼지 농가) 돼지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9두(번식돈 3두, 비육돈 16두) 검사 ※ 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검사 * 우수(8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30/60~80%미만): 연 1회, 미흡(30/6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염소, 도축장) 도축장 출하 염소 중 무작위 검사 - (돼지, 도축장) 비육돈(16두, 연 1회) - (소, 종축장) 16개소, 연 2회(시험소에서 NSP항체 검사 후 동일 시료로 검역본부에서 SP항체 검사 수행) - (야생동물) 야생멧돼지는 CSF 시료, 사슴은 결핵 및 CWD 시료 활용 ○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기관) - (돼지 농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기관 협조) - (그외)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 (검사실시기관)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검사방법) NSP 항체 통계예찰과 동일																		
전북	3,228	31,650	34,878	36,877																			
전남	5,305	43,340	48,645	48,039	○ (소 농가)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우수(9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80~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돼지 농가) 돼지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9두(번식돈 3두, 비육돈 16두) 검사 ※ 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검사 * 우수(8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30/60~80%미만): 연 1회, 미흡(30/6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염소, 도축장) 도축장 출하 염소 중 무작위 검사 - (돼지, 도축장) 비육돈(16두, 연 1회) - (소, 종축장) 16개소, 연 2회(시험소에서 NSP항체 검사 후 동일 시료로 검역본부에서 SP항체 검사 수행) - (야생동물) 야생멧돼지는 CSF 시료, 사슴은 결핵 및 CWD 시료 활용 ○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기관) - (돼지 농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기관 협조) - (그외)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 (검사실시기관)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검사방법) NSP 항체 통계예찰과 동일																		
경북	4,246	44,782	49,028	54,274																			
경남	2,734	29,634	32,368	38,344	○ (소 농가)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우수(9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80~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돼지 농가) 돼지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9두(번식돈 3두, 비육돈 16두) 검사 ※ 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검사 * 우수(8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30/60~80%미만): 연 1회, 미흡(30/6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염소, 도축장) 도축장 출하 염소 중 무작위 검사 - (돼지, 도축장) 비육돈(16두, 연 1회) - (소, 종축장) 16개소, 연 2회(시험소에서 NSP항체 검사 후 동일 시료로 검역본부에서 SP항체 검사 수행) - (야생동물) 야생멧돼지는 CSF 시료, 사슴은 결핵 및 CWD 시료 활용 ○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기관) - (돼지 농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기관 협조) - (그외)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 (검사실시기관)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검사방법) NSP 항체 통계예찰과 동일																		
제주	182	11,768	11,950	15,700																			
소계	29,872	311,035	340,907	369,607	○ (소 농가)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우수(9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80~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돼지 농가) 돼지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9두(번식돈 3두, 비육돈 16두) 검사 ※ 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검사 * 우수(8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30/60~80%미만): 연 1회, 미흡(30/6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염소, 도축장) 도축장 출하 염소 중 무작위 검사 - (돼지, 도축장) 비육돈(16두, 연 1회) - (소, 종축장) 16개소, 연 2회(시험소에서 NSP항체 검사 후 동일 시료로 검역본부에서 SP항체 검사 수행) - (야생동물) 야생멧돼지는 CSF 시료, 사슴은 결핵 및 CWD 시료 활용 ○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기관) - (돼지 농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기관 협조) - (그외)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 (검사실시기관)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검사방법) NSP 항체 통계예찰과 동일																		
검역 본부	-	3,550	3,550	1,500																			
민간	-	-	-	200,000	○ (소 농가)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우수(9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80~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돼지 농가) 돼지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9두(번식돈 3두, 비육돈 16두) 검사 ※ 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검사 * 우수(8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30/60~80%미만): 연 1회, 미흡(30/6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염소, 도축장) 도축장 출하 염소 중 무작위 검사 - (돼지, 도축장) 비육돈(16두, 연 1회) - (소, 종축장) 16개소, 연 2회(시험소에서 NSP항체 검사 후 동일 시료로 검역본부에서 SP항체 검사 수행) - (야생동물) 야생멧돼지는 CSF 시료, 사슴은 결핵 및 CWD 시료 활용 ○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기관) - (돼지 농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기관 협조) - (그외)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 (검사실시기관)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검사방법) NSP 항체 통계예찰과 동일																		
계	29,872	314,585	344,457	571,107																			

세 부 내 역

□ SP 항체 [백신항체양성률 조사]

- (검사대상) 소(농장, 도축장, 종돈장), 돼지(농장, 도축장, 종돈장), 염소(농장, 도축장) 및 축종별 기획 예찰
- ※ NSP항체 예찰 시료 활용 가능
 - (소, 소규모) 50두 미만 사육농가당 5두 검사
 - (소, 전업)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 우수(90%이상) : 무작위검사, 저조(80~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소, 도축장) 농가당 1두, 도축장 물량 중 15만두는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
 - (소, 종축장) 16개소, 연 2회, 90두/회
 - ※ 시료채취세부기준 : 6~12개월령 27두, 12~24개월령 36두, 24개월령 이상 27두
 - (단, 시료채취세부기준 월령별 해당 개체가 부족한 경우 다른 월령에서 채혈하고, 사육규모가 90두 미만인 경우 6개월 미만을 제외한 전 두수 채혈)
 - (돼지, 농가) 돼지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9두(번식돈 3두, 비육돈 16두) 검사
 - ※ 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검사
 - ※ 우수(80%이상): 무작위검사, 저조(30/60~80%미만) : 연 1회, 미흡(30/60%미만) : 연 2회
 - 우수농가 무작위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이 포함된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돼지, 도축장) 비육돈 16두(연 1회)
 - (돼지, 종돈장) 분기별 1회, 번식돈(25~30두) 및 사육단계별(30~40두)
 - ※ 사육단계별로 검사하되, 검사결과는 시료채취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연령은 제외하고 KAHIS 입력
 - (염소, 농가) 300두 미만 농가당 5두, 300두 이상 농가당 16두 검사
 - ※ 300두 미만 농가 검사 물량에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5개 시군 포함 시도는 검사 물량 조정(±20%)
 - (염소, 도축장) 도축장 출하 염소 중 무작위 검사
 - (기획)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요소 1회 추가 검사
 - ※ (소·돼지·염소) 최근 2년간 3회 이상 반복해서 80% 미만 농가
 - ※ (소) 최근 7개월간 접종 정보 누락 소 비율이 높은(20%이상) 전업농가
 - ※ (돼지) 백신 구매 이력이 없거나 사육두수 대비 저조한 전업농가
- (시료채취 세부기준) 세부기준 준수하여 시료 채취
- ※ 단, 각 기준별 해당 개체가 없는 경우, 다른 기준에 해당하는 개체의 시료 채취 가능

축종			세부채취기준	1차 검사		확인 검사	
				세부기준 해당개체	검사 두수	세부기준 해당개체	검사 두수
소	50두 미만	(사전)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현장) 6개월 ~ 12개월령	2두 3두	5두	8두 8두	16두	
	50두 이상	(사전)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현장) 6개월 ~ 12개월령	8두 8두	16두	확인검사 생략		
염소	300두 미만	6개월령~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5두	5두	16두	16두	
	300두 이상	6개월령~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16두	16두	확인검사 생략		
돼지	일관 위탁 사육	번식돈	후보돈, 분만 후 30일령 이내 이유 모돈, 환축·위축돈, 도태 모돈	1두	3두	4두	16두
		비육돈	105일령~120일령/120일령~140일령	8두/8두	16두		
	비육 사육	비육돈	105일령~120일령/120일령~140일령	8두/8두	16두	확인검사 생략	

※ 비육돈의 경우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 (시료채취기관)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 (검사실시기관)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검사방법) SP-O 항체 ELISA(메디안디노스틱, 바이오노트, 프라이오닉스)

- 1차 검사(5두 검사)에서 백신항체양성률이 소 80% 미만, 염소 및 번식돈 60% 미만, 비육돈 30% 미만시 16두를 재채혈하여 확인검사 실시
- 16두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백신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인 경우, 동일한 시료 16두에 대해 1차 검사와 다른 종류의 키트를 이용하여 보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축종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일 경우 확인 검사 없이 최종 미흡 농가로 판정

□ 진단키트(ELISA) 배부 : 시·도 검사물량 등 고려 배정(검역본부에서 키트 구입후 송부)

□ 기 타

- NSP항체 양성축 확인 시 구제역 SOP「NSP항체 양성축 처리요령」준수
-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은 구제역진단과에서 별도 공문 배포
-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구분 기준에 따른 소 및 돼지 농가 현황은 별도 송부
- SP항체 기획예찰 대상 농가 현황은 별도 송부
- 상·하반기 축종별 일제접종 후 백신항체 모니터링 조사는 별도 운영
- 상시예찰 및 민간기관 도축장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사업의 확인검사 물량은 불포함

● 돼지열병 혈청검사 계획

(단위 : 두)

구 분	항체검사				항원검사				세 부 내 역
	농장예찰		도축장 예찰	계	농장예찰		도축장 예찰	계	
	양돈장	종돈장			양돈장	종돈장			
서울	-	-	-	-	-	-	-	-	□ 검사 대상 ○ 농장예찰 : 양돈사육농가 전농가(멧돼지 제외)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 도축장예찰: 도축장 출하돈 무작위 표본추출 * 멧돼지는 반드시 항체·항원검사 실시 □ 검사방법 ○ 항체 : ELISA(항체 보유상황 검사) ○ 항원 : 감별 PCR □ 시료채취 및 검사 실시기관 ○ 시료채취기준 : 농가당 연 1회 이상 - 1회 19두(위축돈, 환돈 5두 또는 종돈장 및 AI센터 정액 5개, 90~140일령 비육돈 11두, 번식돈 3두)이상 * 정액을 이용한 항원검사는 반드시 정장(seminal fluid) 원액을 채취하여 실시(희석정액은 검출 확률이 매우 낮음) * 위축돈 및 환돈은 반드시 항원검사 실시 * 50두 미만농가는 연1회 6두(항체) / 연1회 3두(항원) * 도축장 예찰은 농가당 18두 시료채취 ○ 시료채취 : 양돈장·도축장(방역본부), 종돈장(시·도 가축방역기관) * 검역본부와 시·도는 기관별 도축장 예찰물량에 대한 시료채취용 소모품(EDTA 튜브 등)을 방역본부에 각각 공급 ○ 검사 실시기관 : 시·도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진단키트 공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 배정 물량을 월별로 균등분할 검사 □ 검사결과 조치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참조 * 항체양성율은 비육돈 및 번식돈 항체검사 성적으로 판정 ○ 항원 양성축 확인시 시료 및 실험결과물 등을 검역본부에 송부 ○ 백신주 검출 시 해당 시·도에 통보 - 시·도는 해당 농가의 예방접종 적정 여부를 조사 □ 검사결과 보고 ○ 검사결과를 수시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검사실적은 월별로 확정)
부산	103	-	-	103	43	-	-	43	
대구	512	640	846	1,998	200	640	-	840	
인천	162	-	1,152	1,314	60	-	-	60	
광주	81	-	1,224	1,305	33	-	-	33	
대전	14	-	1,062	1,076	5	-	-	5	
울산	154	-	522	676	61	-	-	61	
세종	657	100	-	757	255	100	-	355	
경기	11,960	5,760	12,060	29,780	4,802	2,500	-	7,302	
강원	2,137	2,760	2,790	7,687	823	2,880	-	3,703	
충북	3,170	3,200	12,402	18,772	1,280	3,200	-	4,480	
충남	12,565	5,280	8,946	26,791	4,966	5,280	-	10,246	
전북	6,626	5,060	9,702	21,388	2,600	5,040	-	7,640	
전남	5,565	6,440	5,688	17,693	2,157	6,440	-	8,597	
경북	6,751	7,200	7,038	20,989	2,644	6,900	-	9,544	
경남	6,624	8,100	8,640	23,364	2,532	6,910	-	9,442	
제주	3,356	1,840	3,870	9,066	1,235	1,800	-	3,035	
소계	60,437	46,380	75,942*	182,759	23,696	41,690	-	65,386	
검역 본부	-	-	10,000	10,000	-	-	5,000	5,000	
계	60,437	46,380	85,942	192,759	23,696	41,690	5,000	70,386	

* 항체검사 중 도축장 예찰 시·도 물량(75,942두분)은 시·도에서 직접 구입(시·도 가축방역사업비)

● 말(더러브렛 종 등) 혈청검사 계획

(단위 : 두)

구분	사육두수	사업물량	세 부 내 역
서울	110	20	□ 검사대상 : 더러브렛종 등 □ 검사두수 : 2,000두 ○ 개체별로 7종 (일본뇌염, 말바이러스성 동맥염,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말전염성빈혈, 웨스트나일열, 인플루엔자)에 대한 전염병 검사 □ 실시요령 ○ 마사회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검사 의뢰 ※ 시료 채취, 보관 및 운반방법 등은 검역본부와 추후 협의 ○ 검역본부에서는 마사회에서 의뢰한 시료를 검사하여 결과 송부
부산	1,013	175	
대구	46	15	
인천	157	20	
광주	93	15	
대전	61	9	
울산	91	12	
세종	28	0	
경기	4,206	618	
강원	389	72	
충북	317	40	
충남	421	46	
전북	732	102	
전남	466	37	
경북	846	85	
경남	385	42	
제주	20,337	692	
계	29,698	2,000	

● 전염성해면상뇌증(TSE) 예찰 및 정밀검사 계획

(단위 :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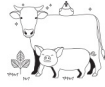
구분	소(두수)		면양· 산양 (두)	사슴(두)	세 부 내 역
	농장	도축장			
서울	-	-	-		☐ 검사대상 ○ 소 : 소해면상뇌증(BSE) 검사 ○ 면양·염소 : 스크래피(Scrapie) ○ 사슴 : CWD(Chronic wasting disease) ※ 사업물량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정이 변경될 경우 조정 가능하며, 국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시료채취 및 BSE신속검사 ○ 17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BSE 신속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시 검역본부로 송부 ※ 시료채취 등 TSE 검사 세부사항은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에서 별도 시달할 계획 ☐ TSE 검사방법 ○ 신속검사 : ELISA법 ○ 확인검사 : 병리조직검사법, 면역조직화학염색법, 면역블로팅 ☐ TSE 검사기관 ○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 : BSE 확인검사 및 기타 TSE 검사 ○ 시·도 가축방역기관 : BSE 신속검사 ☐ 검사결과 보고 ○ 매 검사결과를 수시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검사시 실적은 월별로 확정)
부산	-	-	-		
대구	-	30	-		
인천	-	15	-		
광주	-	5	-		
대전	-	5	-		
울산	-	23	-		
세종	-	-	-	도축검사 의뢰 전두수 및 폐사축, 질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사슴중 2세 이상 성축	
경기	4	573	5		
강원	2	92	-		
충북	2	45	60		
충남	4	263	20		
전북	4	106	20		
전남	5	110	20		
경북	5	311	25		
경남	3	400	-		
제주	1	22	-		
계	30	2,000	150	150	

〈 WOAH 예찰계획에 따른 부분모집단별 BSE검사대상우 〉

- ① 진행성 신경증상우 (progressive Clinical signs suggestive of BSE)
 - BSE와 일치하는 행동변화 또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 (의사환축 신고대상)
 -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진행성의 행동변화를 보이는 소
 - ※ 진행성의 행동변화 : 흥분, 착유시 계속적인 발길질, 축군내 서열변화, 문/입구/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 감염성 질병증상 없이 진행성 신경증상
 - 접촉, 소리 또는 빛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보이는 경우
 - 단,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신경증상은 제외(예, 감염, 외상, 독성 원인)
- ② 도축장에서 신경증상 (behavioural or neurological signs at abattoirs)(4세이상)
 - 도축장에서 생해체 검사에서 행동 또는 신경학적 징후를 보이는 경우
 - 걷지 못하거나 원인불명으로 넘어지는 소, 외부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거나 걷지 못하는 소
 - 문/입구/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
 - 접촉, 소리 또는 빛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보이는 경우
 -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불안해 하는 소
- ③ 기립불능소 (downer cow with appropriate supporting clinical history)
 - 농장 등에서 횡와자세로 관찰되는 소
 - 횡와 전 임상병력이 일반적인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 행동 및 신경학적 증상을 가지는 경우
- ④ 폐사소 (found dead with appropriate supporting clinical history)
 - 농장에서, 수송 도중 또는 도축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소
 - 죽기 전 임상병력이 일반적인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 행동 및 신경학적 증상을 가지는 경우

〈 BSE 예찰 산정기준 〉

- 농장유래 : 지난 5년간 도축금지 기립불능소 보상금 지급두수의 중앙값 기준 연간 30두
 - * 보상금지급 두수 ('16) 30 ('17) 34 ('18) 47 ('19) 25 ('20) 29
 - ** 시도별 검사두수는 소 사육규모 비율로 배분
- 도축장유래 : 지난 5년간 사고소 검사대상우(평균 6,000두)를 유지하되 검사연령을 상향(4세이상, WOAH 예찰 가이드라인 근거)하여 연간 2,000두(6,000*0.3[§]) 검사 (§4세이상 도축두수 비율)
 - * BSE 사고소 검사두수 : ('18) 5,579 ('19) 6,373 ('20) 7,019 ('21) 6,165 ('22) 5,946
 - ** 시도별 검사두수는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발급실적 기준으로 배분



2026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축발기금 : 예산과목 3941-342)

1. 사업 총괄표	143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사업	144
3. 방역본부 자산취득 사업	169
4. 방역직 인건비 지원 사업	176
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	181

1

사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26년 사업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계		93,106,000	68,108,000	24,998,000	
□ 방역본부 운영지원		36,765,000	36,765,000	-	국비 100%
○ 인건비		11,192,000	11,192,000	-	
-일반직, 검역직, 사무 운영직 등	총 185명 (일반직 56, 검역직 73, 안전직 11, 정보통계직 4, 사무운영직 37, 청사관리직 4)	11,192,000	11,192,000	-	
○ 운영비	1본부·9도본부·43사무소·3검역 사무소	8,018,000	8,018,000	-	
○ 전화예찰 사업	예찰직 203명	9,041,000	9,041,000	-	
○ 가축질병근절 사업		8,514,000	8,514,000	-	
-방역재료구입	방역복, 주사기 등	3,553,000	3,553,000	-	
-긴급방역지원	재료 구입 등	450,000	450,000	-	
-드론운용전담팀	농장예찰·소독, 기피제 살포 등	1,661,000	1,661,000	-	
-방역전문가 평가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60,000	60,000	-	
-신고포상금	가축전염병 조기신고 유도	50,000	50,000	-	
-철새 AI 검사	철새 분변 채취 및 포획	1,100,000	1,100,000	-	
-지방정부 방역평가지원	지방정부(시·도) 내외부 평가, 워크숍 개최, 해외 방역 선진지 견학	400,000	400,000	-	
-가축질병홍보	홍보, 교육, 행사, 회의	1,240,000	1,240,000	-	
□ 방역본부 자산취득		1,554,000	1,554,000	-	국비 100%
○ 자산취득비	전산시스템, 차량, 집기 비품 등	1,554,000	1,554,000	-	
□ 방역직 인건비 지원		23,955,000	14,373,000	9,582,000	국비 60% 지방비 40%
○ 방역직 인건비	방역직 496명	23,955,000	14,373,000	9,582,000	
□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30,832,000	15,416,000	15,416,000	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540명	16,928,932	8,464,466	8,464,466	
○ 운영비	540개반	13,903,068	6,951,534	6,951,534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관 공동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인 방역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 체계 구축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림프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현장업무(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역실태점검) 및 방역 관련 행정업무(가축방역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방역용품 공급 및 관리, 가축방역 홍보 및 교육, 축산농가 방역정보시스템 관리 등) 실시
-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사 업 비 : 36,765백만원(국비 100%)

- 인 건 비 : 11,192백만원(국비100%)
 - 185명(일반 56*, 검역 73, 안전 11, 정보통계 4, 사무운영 37, 청사관리 4)
 - * 기관장 상임화에 따른 인건비 반영(6개월분)
- 운 영 비 : 8,018백만원(국비 100%)
- 전화예찰사업 : 9,041백만원(국비 100%)
- 가축질병근절사업 : 8,514백만원(국비 100%)

■ 기대효과

-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공공기관)·관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자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

■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나. 사업내용

■ 주요사업

- 방역본부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 업무(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등) 및 방역 관련 행정업무 (가축방역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방역용품 공급 및 관리, 가축방역 홍보 및 교육, 축산농가 방역정보시스템 관리 등)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시료 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자가 진단 알림톡·보이스봇 포함)·상담을 통한 가축전염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 등) 방역 강화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정부의 장이 정하는 업무수행

■ 사업추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 방역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록, 임상검사 및 검사 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 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협조기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 검진·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시·도(시·군) : 검진·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방역조치
- 사업기간 : '26. 1월~12월(12개월)

다. 세부 사업별 내용

1. 인건비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근절 및 지원을 위한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185명(일반직, 검역직, 안전직, 정보통계직, 사무운영직, 청사관리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 업 비** : 11,192백만원(국비 100%)

● 인건비 : 11,192백만원(국비 100%)

- 185명(일반 56*, 검역 73, 안전 11, 정보통계 4, 사무운영 37, 청사관리 4)

* 기관장 상임화에 따른 정원 1명 증(7.1일자로 직제규정 반영 예정)

2. 운영비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근절 및 지원을 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무실 56개소 및 직원 681명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 업 비** : 8,018백만원(국비 100%)

● 운영비 : 6,720백만원(국비 100%)

- 제세공과금 615백만원, 특근매식비 29백만원, 차량비 805백만원, 기타운영비 137백만원

* 기관운영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공공요금,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 수용비 1,500백만원, 임차료 1,034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6백만원,

* '26년 신규 반영된 사무소 환경개선 예산 385백만원, 가축방역 고도화 425백만원 (알림톡 200, 보이스봇 121, 가상농장 방역교육 104) 반영

- 복리후생비 2,194백만원

* 명절휴가비, 근로자의 날 행사,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특수건강검진, 단체보험가입 등

● 여비 : 1,129백만원(국비 100%)

- 국내여비 292백만원, 월액여비 819백만원, 국외여비 18백만원

● 업무추진비 : 169백만원

- 체육행사비 41백만원, 사업추진비 74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54백만원

3. 9대 가축 질병별 시료 채취

◆ 농장 시료 채취 요령 준수(가축방역사업 중 검진·혈청검사사업 참조)

- 농장 출입 시 1회용 기자재(방역복비닐장화수술용 장갑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한 기자재는 현장에서 즉시 폐기한다.
- 시료채취 시 부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료채취 관련 요령 및 방역수칙 준수
* 분병(시료를 나누는 행위)·대리채혈 금지(방역사 직접 채혈, 별첨 2 양식 작성)

◆ 시료 채취 및 통보 결과의 농가 환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하여 검출·통보된 가축 질병에 대해 지역(시·군 또는 시·도 내 권역별)·연도별 발생 차이·변화 등을 분석하여 해당 축산농가에 반기 1회 이상 통보

1) 조류인플루엔자 항원·항체 검사(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 참조)

- 검사대상 : 가금 사육 전업농(닭 3천수, 오리 등 기타 2천수) 전국 4천여호,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금 중개상 등
 - 검사물량 : 4,607개소 / 144,041점 [’25년도 4,259개소 144,346점]
 - 기타가금(메추리, 거위, 기러기 등) 1,143호 96,641점, 전통시장 197개소 31,360점, 가금중개상(차량) 122대 2,440점, 가금중개상(계류장) 86개소 13,600점
 - 검사방법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계획,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 등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하여 시료 채취 계획 수립·운영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2) 아프리카돼지열병 혈청검사(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사업 참조)

- 검사대상 : 전국 돼지농장, 취약농가, 밀집사육단지 등
- 검사물량 : 5,392호 / 53,920두 [’25년도 5,530호 55,300두]
 - ※ 일제검사(돼지농장) 5,025호 50,250두, 취약농가 110호 1,100두, 밀집사육단지 257호 2,570두
- 검사방법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예찰 검사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ASF 방역대책 등에 따라 시·도와 협의하여 채혈 계획을 수립·운영 하고, 양돈농가 시료채취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시료 송부

- ※ ASF 발생 위험도 등에 따라 농식품부(구제역방역과)에서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
- ※ 사육 돼지 출하 전 모든 전수 검사 시료 채취의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하여 분담 추진하고
사육 돼지 중 종돈장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 채취
- ※ 농장방문 일정을 조정하여 돼지열병과 같은 날 시료 채취하되, 돼지열병 시료를 활용하여 병행검사될
수 있도록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여 추진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3) 구제역 혈청검사(구제역 예찰계획 참조)

- 검사대상 : 농장예찰 중 시·도 통계예찰, 목적예찰(돼지농장)
- 검사물량 : 9,346호 / 104,257두 [’25년도 5,429호 29,840두]
 - [NSP항체(통계) 소규모 : 호당 5두] 소 4,483호 22,415두, 염소 701호 3,505두
 - [NSP항체(통계) 전업농 : 호당 16두] 염소 247호 3,952두
 - [NSP항체(목적) 전업농 : 호당 19두] 돼지 3,915호 74,385두
- ※ 2026년 구제역 혈청 예찰사업 세부 실시요령에 따름
- 검사방법
 - (NSP항체 통계예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 연간
대상 물량을 사업 개시 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통보
 - 검사대상 및 시료채취 기준
 - 검사대상 : 전국 소(50두 미만) 농가 및 염소 농가
 - 시료채취 세부기준

축종	세부채취기준	1차 검사	
		세부기준 해당개체	검사두수*
소	(사전)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2두	5두
	(현장) 6개월 ~ 12개월령	3두	
염소	6개월령 ~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5두	5두
		16두	16두

* (염소) 300두미만 농가: 5두, 300두 이상 농가: 16두 검사

- ※ 시·군은 검사신청 농가에게 채혈 당일에 보정자(농장주 또는 농장관리자 등)가 대기토록 사전 통보
- ※ 세부실시요령은 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에서 별도 수립·시달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 (NSP항체 목적예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 연간 대상 물량을 사업 개시 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통보
- 검사대상 및 시료채취 기준
 - 검사대상(농장) : 돼지
 - 시료채취 세부기준 : 돼지 사육농가를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9두(번식돈 3두, 비육돈 16두) 검사
- * 우수(80%이상) : 무작위검사, 저조(30/60~80%미만) : 연 1회, 미흡(30/60%미만) : 연 2회
- ※ 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검사

4·5·6) 소 결핵병·브루셀라병(브루셀라병 예찰계획 참조) 및 렘피스킨 검진

- 검진대상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관련 시·군에서 채혈을 요청한 소 및 렘피스킨 예찰 계획에 따라 검역본부 및 시·군에서 채혈을 요청한 소
 - ※ 결핵병 거래우 신청 시 브루셀라와 동일 개체일 경우 병행하여 실시
- 검진물량 : 445,500두 ['25년도 445,500두]
 - ※ 검진물량은 시·도의 지역별 업무분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렘피스킨 검진물량은 별도 시행 예정인 렘피스킨 예찰 계획에 따름
- 검진방법
 - 시·군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담당 사무소로 시료채취 대상농가, 시료채취 두수, 출하 예정일, 검사 신청일, 시료채취 예정일 등을 Agrix 내 소-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보
 -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검사신청 농가에게 검사 예정일 등을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
 - ※ 시·군은 검사신청 농가에게 채혈 당일에 보정자(농장주 또는 농장관리자 등)가 대기토록 사전 통보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월별로 적정한 시료채취 물량이 배정되도록 할 것

- 방역사는 채혈예정일에 농장주 등의 재택 여부와 귀표 장착 및 보정 준비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농가에 방문
- 방역사는 시료채취를 실시하기 전에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서를 작성, 의뢰서상 기재된 검사 대상 소의 소유자 등에게 서명을 받음
- 방역사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서를 혈액과 함께 검사대상 소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송부

7) 돼지열병 항원·항체검사(돼지열병 혈청검사계획 참조)

- 검사대상 : 돼지사육 전농가(일반 양돈장)예찰 및 도축장예찰
- 검사물량 : 9,973호 / 175,075두 ['25년도 9,932호 179,633두]
 - 농장 4,754호 / 84,133두, 도축장 5,219호 / 90,942두
- 검사방법

〈농장 예찰〉

- 돼지열병 혈청검사계획에 따라 농가당 연 1회 이상 채혈 실시
- 1회 19두(위축돈, 환돈 5두 또는 종돈장 및 AI센터 정액 5개, 90~140일령 비육돈 11두, 번식돈 3두 이상) 시료채취
 - ※ 양돈농장 내 번식돈이 없는 경우 1회 16두로 시료채취
- 50두 미만 농가는 연 1회 6두(항체) / 연 1회 3두(항원)
- 비육전문농장은 입식 시 마다 1회 시료 채취하며, 소규모 농가의 동일 돈군개체에 대하여 연 1회 시료채취
 - ※ 위축돈 시료는 항원검사만 실시, 그 외의 시료는 항체검사 실시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도축장 예찰〉

- 작업장별로 대상 농가를 중복이 없도록 무작위 선정하여 농가당 18두 시료채취
- 시·도 방역기관 검사 : 항체검사 4,219호 / 75,942두
- 검역본부 검사 : 항체검사 500호 / 10,000두, 항원검사 500호 / 5,000두
 - ※ 도축장 시료채취 기자재 및 항원검사용 EDTA 튜브는 검역본부, 시·도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급

8)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돼지오제스키병 근절사업 참조)

- 검사대상 : 50두 이상 규모의 일반 양돈장을 대상으로 무작위표본 추출로 선정
- 검사물량 : 1,265호 / 12,620두 [’25년도 1,265호 12,620두]
- 검사방법
 - 농가당 연 1회 이상, 1회 10두 이상 시료 채취
 - 일관사육 또는 자돈분양 농장은 번식돈 3두 비육돈 7두, 비육전문농장은 비육돈 10두 시료채취
 - 위축돈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우선 시료 채취
 - ※ 농장방문 일정을 조정하여 돼지열병과 같은 날 시료 채취하되, 돼지열병 시료를 활용하여 돼지 오제스키병 혈청검사 등 병행 검사될 수 있도록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여 추진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9) 뉴캐슬병 혈청검사(뉴캐슬병 근절사업 참조)

- 검사대상 : 3,000수 이상 규모의 산란계 농장
- 검사물량 : 1,066호 / 55,300수 [’25년도 1,038호 52,460수]
- 검사방법 : 3,000수 이상 규모의 전 산란계(종계장 제외) 농가 연 1회 이상 방문, 계군별 시료채취
 - 계군규모 10천수 미만 : 계군당 20수 이상 시료채취
 - 계군규모 10천수 이상 : 계군당 30수 이상 시료채취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4. 축산농가 방역상황 실태 점검 및 예찰

- 점검시기
 - 농장 시료채취 방문 : 농장방문 시료채취시 농가의 소독·예방접종 등 방역상황 점검 및 예찰 실시
 - 순회점검 방문 : 농장방문 시료채취와 합하여 연 5회 기준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방역실태 점검(소 브루셀라는 시료채취시 농장방문으로 같음)
 - ※ 시료채취 농가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상농가와 변경농가의 순회점검 실적을 합산하여 반영

- 점검 및 보고 요령
 - 방역사는 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농장별 방역 실태점검(이상축 유무 확인, 소독시설 확인 등)을 추진
 -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중 임상증상 이상축 발견 시, 해당 가축에 대한 시료채취와 가축질병 예찰실시 결과보고서(별첨 1)를 작성하고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검사의뢰 및 검사의뢰 공문 발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방역관리시스템(팜스)에 실적 등록(향후 검사결과 수신 시 결과 내용 추가 등록)
 - (단, '예찰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서식 활용 가능)

5. 축산농장정보 수집 및 제공

- 목 적
 - 축산농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제공하여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사업의 기반정보로 활용
- 대 상(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방역관리시스템(팜스) 기준)
 - 축산법상 가축 중 18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264천여호
 - * 소, 돼지, 염소, 사슴, 산양, 면양, 닭, 오리, 메추리, 관상조, 거위, 꿩, 칠면조, 타조, 기러기, 말, 꿀벌, 토끼
- 정보 수집 및 처리
 - 방역사 : 정기방문(현행화 주기별) 및 현장조사
 - 예찰직 : 전체 축산농가 정기·비정기 조사
 - KAHIS를 통해 지방정부·방역 유관기관에 농장정보 제공
 - 인허가정보, 축산물이력제, 가금입식신고, 도축검사 매칭을 통한 정보보완
- 계획 및 분석
 - 연초 농장정보현행화 매뉴얼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 분기별 농가변동이 반영된 실적 집계

6. 축산농가 상담·예찰

● 목 적

- 비대면 예찰(전화·알림톡·보이스봇 등)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검색하고 방역정책 홍보 및 농장 정보 수집, 분석하여 국가가축방역시스템(KAHIS)에 제공

● 예찰대상

- 축산법상 가축 중 18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264천여호(축종기준)

* 소, 돼지, 염소, 사슴, 산양, 면양, 닭, 오리, 메추리, 관상조, 거위, 꿩, 칠면조, 타조, 기러기, 말, 꿀벌, 토끼

● 예찰주기

구분	우제류㉑	돼지	가금류㉒		기타축종㉓	비 고
			전업농·일반㉔	소규모㉕		
평시	월 1회	월 1회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특별방역	월 1회	주 1회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 예찰 주기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8개 축종별 범위

㉑ 우제류 : 소, 산양, 염소, 면양, 사슴,

㉒ 가금류 : 닭, 오리, 메추리, 거위, 칠면조, 관상조, 꿩, 기러기, 타조

㉓ 기타축종 : 꿀벌, 말, 토끼

㉔ 전업농·일반 :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가금 사육농가

㉕ 소규모 : 사육규모 100수 미만의 가금 사육농가

● 예찰방법

-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주기 내 1회 이상 예찰(전화·알림톡·보이스봇 등) 실시
- 가축전염병 발생 시 10km 방역대 중 예찰지역에 대하여 전염병별 SOP에 따라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 결과는 지방정부 및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공유

※ 예찰지역, 보호지역, 관리지역 및 방역대 외 예찰 필요지역 방역본부에서 실시

구분	관리지역 발생농장 ~ 500m 이내	보호지역 500m 초과 ~ 3km 이내	예찰지역 3km 초과 ~ 10km 이내	방역대 외 예찰 필요지역
담당	방역본부			

- 예찰 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주기 내 3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사가 전화 또는 방문 조치하며, 조치 후 개선이 안 될 시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 계획 및 실적보고 요령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사업 세부계획 및 분기별 세부 추진 실적을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는 매월 전화예찰 사업 추진실적 및 예찰결과, 장기 미수신 농가 현황 등을 지방정부 및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 계획 및 실적보고 서식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작성하여 보고·제출

7. 가축질병 근절

1) 방역재료 구입

■ 사업목적

- 주요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 시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하여 적정 사업 추진 도모
- 방역사가 채혈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농가별 방문 시 구비된 개인분무 소독기를 활용, 방역사 및 방역 차량을 소독하여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 사업내용 : 시료채취 시 소요 기자재 및 방역사·방역차량 소독용 소독약 구입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 업 비 : 3,553백만원(국비 100%)

- 질병 발생 및 업무 협조 등으로 인한 기자재 사용량 증가, 해당연도 제품 생산 단가 변경 및 낙찰차액 발생 등 특이사항에 따라 실제 구입 및 공급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일괄 구매 및 경쟁입찰로 추진

■ 실시요령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연간 기자재 구입 및 공급계획을 수립 후 일괄 구입하여 사무소별로 차질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사업 간 공통 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일괄 구입 및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

※ 다만, 질병발생 상황에서 입찰 기간 지연 등으로 긴급하게 기자재 공급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물품을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음

- 다만, 신규 방역직 안전용품과 같이 신속한 공급을 요하거나, 도본부 단위에서 자체 구입하는 것이 예산 절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자재의 경우 사업절차 및 방역·안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도본부 단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세종본부에 신청 및 승인 후 공급 가능

[본부·도본부 구입품목 구분]

구분	본부	도본부(사무소)
품목	주사기, 방역복, 마스크, 니트릴장갑, 비닐장화, 시료운반백, 소독약, 면장갑, 돼지보정기, 근무복, 안전화, 방한용품, 기타안전용품 등	신속한 공급을 필요하거나 도본부 단위에서 자체 구입하는 것이 예산 절감 등에 유리한 기자재로 세종본부에서 승인한 물품

※ 품목은 질병 발생·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방역복, 안전보호구 등 고용노동부의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상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안전관리부의 협조를 통해 관련 규격 및 사양 등을 검토
- 기자재 구입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동 법에서 다루지 않는 세부사항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계약사무 처리 준칙」을 따름
- 사무소장은 기자재를 각 사무소에 보관·관리하고, 방역사가 기자재 수불대장에 기록 후 사용(수불대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에 시 한시적으로 수기 관리할 수 있다)하도록 관리
- 축산농가 방문 전후 방역복 착용 철제 및 신체, 차량, 채혈 도구 등 소독 실시 후 방문

2) 긴급방역지원

■ 목 적

- 국가 긴급방역 지원을 위한 초동방역팀을 편성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렘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투입으로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

■ 사 업 비 : 450백만원(국비 100%)

■ 세부 시행계획

- 긴급상황에 대비한 전국 단위의 초동방역팀 출동 태세 유지
 - 초동방역 투입 명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전국 단위), 지방정부장(시·도/시·군·구 단위)
- 가상방역교육·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을 통한 현장 방역 수행능력 배양
 - 상황·시간대별 수행임무, 보고사항, 행동요령 등 교육
- 초동방역 물자 세트 적정성 검토·보완
 - 구성 : 방역본부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른 필수 기자재 및 선택 기자재

3) 철새 AI검사

■ 사업목적

-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유입원으로 알려진 철새 분변검사 및 야생조류 포획 검사 등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 및 상시방역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철새 AI검사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비 100%)
- 검사대상 : 철새 도래지 등 야생조류 분변, 야생조류 포획검사 등
- 검사물량
 - 철새 도래지 : 10개소, 농가 주변 등 항원검사
 - 검사물량 : 36,000점(민간병성감정기관)

- 야생조류 포획검사(항원·항체검사) : 1,250수

시·도	방역본부 (10개소)
서울·경기(2)	남한강(양평-여주), 포천천
강원(1)	한탄강(동송읍)
충북(1)	보강천
충남(2)	금천, 논산천
전북(1)	조류지
전남(1)	고막원천
대구·경북(1)	형산강
부산·울산·경남(1)	태화강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사방법

- 시료채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검사기관 :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등
 - 철새 도래지 등 야생조류 분변검사 : rRT-PCR 검사 결과 M-gene 양성 시 종란 접종 검사 실시
- ※ 종란 접종하여 HA 양성 또는 rRT-PCR 검사결과 AI H5 및 H7 양성 시 검역본부에 확인검사 의뢰
- 야생조류 포획검사 : 항원검사(부화란접종) 후 HA 검사 및 항체검사(HI 검사)

■ 기타사항

- 민간병성감정기관은 검역본부 확인검사 의뢰 시료에 대해 조류의 미토콘드리아 DNA 검출방법으로 조류종 확인 후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및 방역감시과로 통보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성반응 시료 확인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 방역감시과),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보고, 해당 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검사기관에 통보 등
- 검사기관은 매주 검사실적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메일 등 송부

- 검사기관은 월별 검사종료 후 최종 검사결과를 공문으로 검역본부, 관할 시·도 및 가축방역기관에 송부한다. 시료 등 검사 폐기물은 멸균 후 처리하고 증빙자료(사진·기록 등)는 3년간 유지
 - ※ 검사 폐기물(인후두 및 분변 시료, 종란, 주사기, 튜브, 팁 등)은 반드시 고압멸균 소독(autoclave)한 후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
- 검역본부는 검사기관의 보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농식품부(방역정책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 제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는 공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검역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최종 결과를 취합하여 전화예찰 및 알림톡 등을 활용하여 농가에 정보 제공할 수 있음
- 검사기관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 요원의 명단을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대응과, 043-719-9102)을 통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 수행

4) 가축질병근절 교육·홍보 및 회의

■ 사업목적

-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통한 전 축산농가의 공감대 형성
-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홍보를 통하여 관련 대책의 원활한 추진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계		1,240
교 육	○ 축종별·질병별 업무 담당자 교육, 가축방역사 교육 등	472
홍 보	○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전문지 광고 등	712
회 의	○ 전문가 회의 및 협의회 개최, 위원 수당 등	55

주)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구분간 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홍보, 행사 및 회의 등은 농식품부(방역정책과)와 협의하여 추진
 - 협조기관 :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중앙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육계협회 등
 - 위탁기관 : 대한양계협회, 한빛복지협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교육·홍보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방역정책과)에 보고 후 추진
- 위탁기관은 시행기관으로부터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시행기관으로부터 교육·홍보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탁기관은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기관으로 사전 신청하고, 해당 사업 종료 후 그 결과 및 집행내역을 시행기관에 제출
 - 시행기관은 추진 결과 및 집행 내역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예산 범위 내 지원
 - 시행기관은 위탁기관이 시행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점검할 수 있음

5) 지방정부(시·도) 방역평가 지원

- 기본 사업 실시계획을 농식품부(방역정책과)에서 관계기관으로 통보하면 방역본부는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
- 평가단(농식품부 가축질병 담당, 학계, 전문가 등) 구성 및 평가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우수 지방정부 선정 대상 기관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계획 마련 및 실시, 지방정부 방역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 실시

6) 신고포상금 지원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신고 유도
- 예방접종·이동제한 명령 또는 소독의무 위반자 색출·규제를 통한 가축 방역 규정 준수 유도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구제역, 돼지열병, 소해면상뇌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신고자
 -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 구제역·돼지열병·뉴캐슬병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
 -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 영업자 등

■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 급 대 상	신고 포상금	확 인 방 법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5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5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자	50만원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소해면상뇌증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3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또는 뉴캐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브루셀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의 소독관련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위반자의 해당 가축 또는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

-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신청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시 신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번호, 신고일자, 신고유형, 조치사항 등을 기재(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검토·확인한 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포상금 지급요청(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을 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에서 축발기금 지출한도액 배정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포상금 지급
- 주의사항
 - 동일한 대상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
 - 1인당 신고포상금이 월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

■ 사업비 : 50백만원(국비 100%)

- 지급한도액 : 당해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 기산일 : '26.1.1부터 발생한 위반행위

■ 세부 시행계획

- 신고포상금의 추진계획은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농식품부 고시) 별표 1에 따르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급 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7) 방역전문가 평가

■ 목 적

- 가축방역 업무 추진 시 가축방역 정책 정립 및 가축방역 정책 대외 설명 등을 위해 전문가 그룹 세미나, 토론회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해 가축방역 정책을 정립하고 정부 정책의 이해당사자 및 대국민 이해 증진

■ 사 업 비 : 60백만원(국비 100%)

■ 주요내용

- 가축방역·수의분야 등에 필요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지원
 -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통보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방역 또는 수의분야 세미나, 토론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8) 드론운용전담팀 운영

■ 목 적

- 드론을 통한 비대면 가축방역 실현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상황 정보 제공으로 조기종식에 기여

■ 사업내용

- 드론을 활용하여 농장 내부 및 오염 우려지역의 직접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점검 및 예찰 실시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 업 비 : 1,661백만원(국비 100%)

- 인건비 : 60백만원('26년도 한시적 운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퇴직적립금 포함)
- 운영비 : 1,601백만원
 - 드론 기체 임차, 드론운용전담팀 교육 추진, 드론 관리시스템 구축 등

■ 세부 시행계획

- 드론 운용 현황 : 54대(예찰드론 27, 소독드론 27)
 - * 운용인력 : 40명(경기 4, 강원 4, 충북 4, 충남 4, 전북 6, 전남 6, 경북 6, 경남 6)
- 드론을 활용한 농가시설 정보 현행화
 - 농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야생조류 서식조사
 - 지역별 유입시기에 따른 철새도래 현황 사전조사(서식조사)
- 드론 활용 농가 방역관리
 - 드론을 활용한 산란계농가 및 밀집 취약 양돈농가 소독 지원
- 스마트 업무 활용체계 구축 추진
 - 드론활용 스마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딥러닝 관련)
 - 드론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구분	사업계획	사업물량
드론을 활용한 농가시설 정보 현행화	드론을 활용한 축사시설, 진출입로, 항공전경 등 촬영을 통한 정확한 정보 확보	1,481건
철새도래지 예찰	매년 9월~3월(7개월) 개소별 월 1회 이상 철새동향 파악(철새도래지 10개소)	726건
산란계농가 방역관리	산란계농가 대상 소독 지원	2,124건
양돈농가 방역관리	밀집 취약 양돈단지 대상 소독 지원	3,660건

*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전염병 차단활동 최우선 실시

* 시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량 조정 가능

라. 세부 사업 추진체계

■ 사업비 집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자금(보조금) 교부 요청
-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를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농식품부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454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등의 관계규정 준용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혈청검사 사업 및 동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농장 채혈·방역실태점검·전화예찰 계획 및 기자재 공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자료 요청 시 협조
 - 시·군별 농장 시료채취 물량 협의 요청 시 시·군별 농장 시료채취 물량 통보
 - 관내 농장 시료채취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인력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인건비 세부소요내역을 1월 30일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실시요령에 명시된 검사 물량(마릿수 기준) 외 10% 이내의 추가 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무상으로 협조를 받거나, 사업비(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실시요령 내 사업별 채혈비 단가 기준)를 지원하여 방역본부에 추가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0% 이내의 추가 검사 등을 요청받은 경우 각 도본부 또는 사무소의 업무량과 방역 기자재 재고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이나 방역 기자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추가사업비(보조금 교부 등)를 요구 및 지원받아 검사할 수 있음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시·도 협조 요청사업(지침 외 지원 요청사업 포함)에 대한 위탁 검사 단가를 마련하여 각 시·도와 도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 시료채취·방역실태점검 실시 및 전화 예찰전담요원 운영

- 방역사는 세부계획에 따라 배정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방역실태 점검 및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 의뢰
- 농장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 연 5회
 - 농장 시료채취 : 대상농가를 기본계획에 따라 방문하여 농장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 순회점검 : 대상농가는 농장 시료채취 방문을 포함하여 연 5회 방문, 방역실태 점검 (소결핵병·브루셀라병 시료채취 대상농가는 시료채취시 농장방문으로 같음)
- ※ 시료채취 농가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상농가와 변경농가의 순회점검 실적을 합산하여 반영
- 가축 사육농가 264천여호에 대해 축종별 주기 내 1회 이상 예찰(전화·문자 등) 실시
-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혈청검사 결과를 시·도(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해당 농가에 통보
 - 검사결과에 따라 확대검사, 이동제한, 살처분·도태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

마. 자금 집행

■ 자금집행요령

- 방역사 인건비는 농식품부(축발기금사무국)에서 시·도로 자금(자체단체경상보조) 교부에 따라, 시·도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보조금 교부
- 기자재 구입비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직접 교부(민간경상보조)
 - ※ 기타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등의 관계규정 준용

바. 보 고

■ 세부 추진계획 보고

- 각 내역사업(내내역 사업 포함)은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식품부(방역 정책과)에 보고

■ 추진실적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각 도본부 포함)는 분기별로 가축질병근절 사업 등 국비 100%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소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진 사업 등 지방비 지원사업의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에 보고
- 축산농가 방역상황 실태 점검 및 예찰, 축산농가 상담·예찰사업 추진실적 등은 국비 100% 지원사업이지만, 지방정부에도 공유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의 추진 실적을 관할 시·도에 통보
- 보조금 예산 집행 실태는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각 도 본부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를 해당 지방정부에 1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지방정부는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

* 시·도 e나라도움 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별첨 1 〉

가축질병 예찰 실시 결과보고서

□ 예찰기간 : . . .

□ **예찰지역 :**

□ **예찰결과 :**

일자	축종	사육 두수	축주		특이사항
			주소	성명	

년 월 일
의뢰자 :

○○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시료채취 확인서						
가축 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확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육마릿수		검사마릿수		채혈마릿수		
시 료 채 취 가 축 내 역 (시료채취일자 : 월 일)						
번호	축종	사업명	성장단계	주령	채혈마릿수	시료구분
①	돼지	CSF	모돈	150	3	항체
②	돼지	CSF	비육돈	15	11	항체
③	돼지	CSF	비육돈	15	5	항원
④	돼지	AD	모돈	152	14	항체
⑤	닭	ND	성계	20	30	항체
⑥						
⑦						
위와 같이 가축방역사가 직접 시료채취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채혈자) : (서명 또는 날인)						

3

방역본부 자산취득 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현장업무(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역실태점검) 및 방역 관련 행정업무(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방역용품 공급 및 관리, 축산농가 방역시스템 관리 등)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노후한 가축방역시설 및 장비 교체를 통해 원활한 가축방역 사업 추진

■ 사업추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지원품목 : 방역차량, 방역장비, 정보시스템 개선 등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합 계		1,554
자본지출-자산취득비	○ 정보시스템 개선	326
자본지출-자산취득비	○ 노후차량 교체	936
자본지출-자산취득비	○ 노후자산 교체	292

주)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구분간 사업비 조정 가능

나. 세부 사업내용

1. 정보시스템 개선

■ 사업목적

-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 등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개선 지속 추진(5개년)

■ 사업내용

- 스마트 팜스 재구축 사업('26년)
 - 사업기간 : '26.4.1.~'26.10.30.
 - '26년 사업비 : 326백만원
 - 사업목적
 - * 현행 사용 중인 스마트 팜스(App)를 현장 활용 중심으로 재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활용도 제고
 - * 팜스(PC Web)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정보 반영 지연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
 - 사업 주요내용 및 범위
 - * 스마트팜스(App) 재구축 : 개발툴 지원 종료에 따른 개발 환경을 재구성하고, 농장 길안내·위치정보·방역시설 사진 관리 등 현장 활용 중심 기능을 강화하여 재구축
 - * 팜스(PC Web) : 팜스 시스템 변경 사항이 스마트 팜스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진·서류 채취 관리 등 주요 기능을 실시간 연계하는 웹앱 기반 UI·UX(별도 앱 설치 없이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 고도화 추진
- 5개년 추진계획

연도	추진내용	비고
'24년	노후시스템 추가교체(1차 - 전자결재 시스템)	'24.9.27.~'25.1.25.
'25년	정보시스템 백업·보안 체계 보강	'25.12.23.~'26.03.23.
'26년	노후시스템 추가교체(2차 - 스마트팜스 시스템)	
'27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이중화(1차 - 백본, 보안)	
'28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이중화(보안, 스위치)	

■ 추진체계

- 조달계약 등을 통해 계약사무 추진(공고, 평가, 계약 등)
- '26년 스마트 팜스 재구축 사업 일정

추진내용	수행 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업계획 수립							
- 기본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과업 심의·기간산정							
계약사무 추진(경영지원실 협조)							
사업 수행							
- 분석·설계							
- 시스템 개발 및 재 구축							
- 테스트 및 적용							

2.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

■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하거나 신규로 방역차량을 구입하여 방역사업에 활용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

■ 사업내용

- 내용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여 직원 안전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구매를 통해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

■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6. 1월 ~ 12월(12개월)
- 사업대상 : 본부, 도본부, 사무소
- 사업량 : 24대
- * 차량 단가 및 소요예산에 따라 구매대수 조정 가능

- '26년 사업비 : 936백만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차량 보유현황(자산) : 264대
 - 2025.12월 기준 업무용 차량 중 노후차량 122대(46.2%)
 - * 차량 수리비 발생 현황, 내용연수(일반승용차 등 8년, 화물트럭 9년), 누적주행거리(12만km) 등 검토를 통해 교체차량 선정
 - * 차량교체 기준은 물품관리법에 따름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산관리위원회 물품선정				
차량 구매 신청				
납품완료 및 결과보고				
'26년도 노후차량 현황 파악 및 노후차량 선정 의견조회				

■ 물품선정요령

- 소속기관 자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노후 차량 현황 및 교체 대상 선정 후 조달계약 등을 통해 차량 구입 및 현장 배치

3. 노후 자산 교체

■ 사업목적

-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업무 및 행정업무 시 필요한 자산 및 내용연한이 지난 노후된 자산 교체

■ 사업내용

- 노후된 장비(방역장비, 사무지원비품 등)를 교체하여 원활한 가축위생방역사업 추진 환경을 개선하며, 교체장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녹색제품 위주 구매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6. 1월 ~ 12월(12개월)
- 사업대상 : 본부, 도본부, 사무소
- '26년 사업비 : 292백만원
 - 사업물량 범위 안에서 조달계약 등을 통해 자산 구매 추진
- 자산현황('25.12월 기준) : 10,189개 중 노후자산 5,287개(51.9%)
- 물품 구매계획

(단위: 대, 개, 백만원)

구분	분류	구매물품	전체자산	노후자산	구매계획(안)
합 계			10,189	5,287	292
1	집기비품-컴퓨터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S/W 등	2,697	1,534	200
2	집기비품-사무지원비품	복사기, 냉방기, 온수기 등	1,285	574	40
3	집기비품-가구	책상, 의자, 서랍장, 캐비닛 등	5,158	2,912	40
4	집기비품-방역장비	초미립바이오분무기, 고압소독기 등	1,049	267	12

※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수행 시 노후한 컴퓨터 보급과 사무용품(책상·의자 등)을 우선 교체

※ 물품 단가 및 소요예산에 따라 구매 수량 조정 가능

- 불용물품 처분 : 불용자산 처분계획에 따라 처분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불용품은 재활용(매각, 증여 등) 후 폐기
 - 온비드(공공자산처분시스템), 자원순환(기부, 재활용, 폐기) 위탁 등 활용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산관리위원회 물품선정				
노후자산 구매				
노후자산 물품 선정 의견조회				

■ 물품선정요령

- 소속기관 자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물품 선정 후 조달계약 등을 통해 구매

- 물품구매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일괄 구매하며 녹색제품 위주 구매
※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70% 이상 구매 추진

다. 자금집행

■ 자금집행요령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자금(보조금)교부 요청
-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를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농식품부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454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등의 관계규정 준용

라. 보 고

■ 추진실적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반기별로 별첨의 서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에 추진실적 제출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각 도 본부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를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에 제출

〈 별첨 〉

2026년 자산취득사업 집행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구분	'26년 추진계획	집행실적(상·하반기)	비고
정보시스템 개선	○ ○		
노후차량 교체	○ ○		
노후자산 교체	○ ○		
계			

2. 사업비 집행실적

구분	'26년 교부예산	집행실적(상·하반기)	집행잔액
정보시스템 개선			
노후차량 교체			
노후자산 교체			
계			

4

방역직 인건비 지원 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관 공동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인 방역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 체계 구축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현장업무(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등) 및 방역 관련 행정업무(가축방역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방역용품 공급 및 관리, 가축방역 홍보 및 교육, 축산농가 방역정보시스템 관리 등)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방역을 위해 활동하는 방역본부 방역직의 인건비 지원
- 방역 관련 현장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방역직의 역량 향상을 위해 방역본부는 최소 인력(2명 이내)을 세종본부 방역사업부(방역사업부장 또는 방역사업차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방역직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사 업 비 : 14,373백만원(국비 60%)

- 인건비 : 14,373백만원(국비 60%), 9,582백만원(지방비 40%)

■ 기대효과

-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공공기관)·관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자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

■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나. 사업내용

■ 주요사업

-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방역직 인건비를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업무(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등) 및 방역 관련 행정업무(가축방역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방역용품 공급 및 관리, 가축방역 홍보 및 교육,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 실적등록 등)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렘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시료 채취(결과 분석) 및 방역실태 점검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정부(시·도)의 장이 정하는 업무 수행

■ 사업추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6항)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 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 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관계기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 검진·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시·도(시·군) : 검진·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방역조치
- 사업기간 : '26. 1월~12월(12개월)

다. 세부사업 추진체계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혈청검사 사업 및 동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농장 채혈·방역실태점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자료 요청 시 협조
 - 시·군별 농장 시료채취 물량 협의 요청 시 시·군별 농장 시료채취 물량 통보
 - 관내 농장 시료채취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인력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인건비 세부소요내역을 1월 30일까지 제출

■ 농장 시료채취·방역실태점검 실시

- 방역사는 세부계획에 따라 배정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방역실태 점검 및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 의뢰
- 농장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연 5회)
 - 농장 시료채취 : 대상 농가를 기본계획에 따라 방문하여 농장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식품부 담당과 협의를 통한 시료채취 계획량 조정 가능
 - 순회점검 : 대상농가는 농장 시료채취 방문을 포함하여 연 5회 방문, 방역실태 점검 (소결핵병·브루셀라병 시료채취 대상농가는 시료채취 시 농장방문으로 같음)
 - ※ 시료채취 농가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상농가와 변경농가의 순회점검 실적을 합산하여 반영
-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혈청검사 결과를 시·도(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해당 농가에 통보
 - 검사결과에 따라 확대검사, 이동제한, 살처분·도태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

라. 자금집행

■ 자금집행요령

- 방역사 인건비는 농식품부(축발기금사무국)에서 시·도로 자금(자체단체경상보조) 교부에 따라, 시·도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보조금 교부
 - ※ 기타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등의 관계규정 준용

마. 보 고

■ 추진실적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각 도본부 포함)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실적을 농식품부 및 시·도에 보고(월별로 확정)하고, 보조금예산 집행실태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 및 시·도에 보고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각 지방정부 보조금관리 조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각 도본부 포함)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를 해당 지방정부에 익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지방정부는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

〈 붙임 1 〉

시·도별 방역요원 인건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무소 개소수	방역요원수	소 요 예 산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	-	-	-	-
부 산	-	2	61,000	40,667	101,667
대 구	-	7	219,000	146,000	365,000
인 천	-	4	138,000	92,000	230,000
광 주	-	2	58,000	38,667	96,667
대 전	-	2	62,000	41,333	103,333
울 산	-	6	169,000	112,667	281,667
세 종	-	5	168,000	112,000	280,000
경 기	7	56	1,599,000	1,066,000	2,665,000
강 원	5	42	1,209,000	806,000	2,015,000
충 북	4	40	1,144,000	762,666	1,906,666
충 남	6	63	1,802,000	1,201,333	3,003,333
전 북	5	58	1,653,000	1,102,000	2,755,000
전 남	5	72	2,074,000	1,382,667	3,456,667
경 북	5	73	2,131,000	1,420,667	3,551,667
경 남	6	58	1,709,000	1,139,333	2,848,333
제 주	-	6	177,000	118,000	295,000
계	43	496	14,373,000	9,582,000	23,955,000

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

가. 운영개요

■ 목 적

-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보호 및 국민 보건에 기여
-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발생 시 신속한 기동방역 지원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상시소독

- 소규모 농가 방문소독 지원 : 연 24회
 - 농협 공동방제단의 방역요원이 소독차로 축사를 순환 방문하며 소독을 실시
 - ※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소독약품 등은 사업비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소독약품은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 소독 지원 : 연 24회
 - 방역요원이 시·군별 대상지역 소독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입국시 해당농장 방문소독 : 연중
 - 대상자의 농장 소재지 시·군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
- 기타 소독활동 지원
 - 기존 질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인한 추가 소독이 필요하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AI 등 질병이 발생한 지자체의 긴급 요청 등으로 필요한 추가 소독활동에 공동방제단이 참여 가능

나.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 지원

1. 추진방향

-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 소독약품은 24회분을 공급하고, 그 외 소요되는 소독약품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방제단에 예산을 지원
- 소규모 농가, 취약지역 방제용, 기타 소독지원 등으로 사용되는 약품비와 방제단 운영 제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50%씩 부담

2. 사업 실시요령

1) 사업개요

■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 540개 반

- 편성기준 : 축협은 시·군별로 1개 방제단 이상을 구성하고, 방제단은 방역요원(소독전담요원) 1명과 소독차 1대를 기본으로 편성
- 방제단 규모 : 방역요원 540명, 소독차 540대
- 방제단 업무 : 방역요원은 담당구역을 연간 24회 순회 방문소독(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의 해당농장은 입국 시 1주일 이내)

■ 소독지원 소규모 농가 : 38천호 × 24회

- 소·사슴·염소·양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 농가

■ 가금거래 전통시장 소독 : 215개소 × 24회

- 시·군별 가금거래 전통시장 소독
 - 방역요원은 시·군별 해당 전통시장을 격주 1회 소독 실시

■ 밀집사육지역 주변 소독 : 84개소 × 24회

- 시·군별 밀집사육지역 진·출입로, 주요 도로 및 농장 주변을 소독
 - 방역요원은 시·군별 해당 밀집사육지역을 격주 1회 소독 실시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해당농장 소독 : 입국 시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전산으로 대상자 입국 여부를 매일 조회하여 1주일 이내 농장 방문 소독
 - 대상자의 농장 소재지 시·군 축협 공동방제단이 소독 실시

■ 기타 소독활동 지원 : 필요시 운영

- 시·군별 가축전염병 발생 및 인접 농가, 축산차량 진출입로, 거점소독시설 등 집중 소독
 - 농장 소재지 시·군 축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지원

■ 지원내용

- 방역요원 540명 인건비 : 정액제(1인당 연간 31,008천원 한도)
 - 축협은 인건비를 분기별로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1인당 보조금 한도 내에서 방역요원 채용·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
 - 축협은 1인당 보조금 한도 이내에서 방역요원 채용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 보조한도를 초과하여 채용 시 초과분은 농축협에서 자체 부담함
- 공동방제단 운영 제비용(통합운영 가능)
 - 방제단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을 말함 (약품비, 소독장비 임대료, 유류비, 차량·소독기 정비료, 수도료, 전기료, 소모품비, 인쇄비, 교육비, 제세공과금 등)
 - 소독약품 : 1농가 1회 소독약(희석액 기준) 50ℓ
 - * 광범위 소독제 : 38,333호×24회×2,722원(50ℓ)
 - 소독장비(1톤화물차 및 탑재형 방제기) 임대료(리스료, 보험료 포함)
 - * 임대료 : 540대×12월×월 평균 973,000원(계약단가에 의함, 보험료 포함)
 - 기타 소모품, 인쇄비, 교육비 및 제세공과금은 실비로 정산

■ 사업비 : 30,832백만원(축발기금 15,416, 지방비 15,416)

- 인건비(540명) : 16,754백만원(축발기금 8,377, 지방비 8,377)
 - 산출근거 : (540명×31,008천원)+10,000천원(울릉군)
- 소독장비 임대료 : 6,305백만원(축발기금 3,152, 지방비 3,152)
 - 소독차 임대료 : 6,305백만원(540대×12월×월 평균 973,000원)
- 소독약품 : 2,503백만원(축발기금 1,252, 지방비 1,252)
 - 소독약 : 38,333호×24회×2,721원(50ℓ)
- 공동방제단 운영 활동비 : 5,269백만원(축발기금 2,634, 지방비 2,634)
 - 소독차 유류비 : 2,950백만원(경유 1,414백만원 + 휘발유 1,536백만원)
 - * 1톤화물차 운행 유류비(경유 및 LPG) : 38,333호×24회×1,538원
 - * 원거리방제기 작동 유류비(휘발유) : 38,333호×24회×1,670원
 - 차량 및 소독기 정비료 : 864백만원(540대×1,600천원)
 - 수도료 : 184백만원(38,333호×24회×200원(=50ℓ ÷ 800ℓ ×3,200원))
 - 소모품비(방역복, 마스크 등) : 1,080백만원(540명×2,000천원)
 - 인쇄비 등 : 75백만원(38,333호×12회×164원)
 - 교육훈련비 : 58백만원(540명×108천원)
 - 제세공과금 : 57백만원(106천원×540대)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통합운용 가능

■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지역축협

- 총괄수행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 공동방제단 편성 및 운영 : 지역축협
 - 방역용품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지역축협
 - 인력채용 : 지역축협
 - 대상농가 선정 : 사업계획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시·군과 지역축협이 협의하여 결정
- ※ 공동방제단 운영 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시·도별 방제단 편성 및 운영 제비용 지원

(단위 : 호, 개소, 반, 천원)

시·도	사업대상(호,개소)				방제단 편성 (반)	인건비 (A)	운 영 비				총계 (A+B)
	소규모 농가 (a)	전통 시장 (b)	밀집 지역 (c)	계 (d=a+b+c)			리스료	약품비	기타	소계 (B)	
부산	71	2	-	73	2	62,016	23,352	4,771	13,743	41,866	103,882
대구	379	6	-	385	6	186,048	70,056	25,158	55,132	150,346	336,394
인천	300	-	-	300	6	186,048	70,056	19,601	48,015	137,672	323,720
광주	64	11	-	75	2	62,016	23,352	4,902	13,910	42,164	104,180
대전	93	2	-	95	2	62,016	23,352	6,208	15,520	45,080	107,096
울산	694	2	-	696	9	279,072	105,084	45,471	92,623	243,178	522,250
세종	191	-	1	192	3	93,024	35,028	12,544	27,524	75,096	168,120
경기	2,214	25	17	2,256	40	1,240,320	467,040	147,408	341,522	955,970	2,196,290
강원	3,153	39	6	3,198	49	1,519,392	572,124	208,931	454,749	1,235,804	2,755,196
충북	2,900	8	6	2,914	34	1,054,272	396,984	190,377	373,753	961,114	2,015,386
충남	5,223	15	7	5,245	63	1,953,504	735,588	342,662	679,604	1,757,854	3,711,358
전북	2,977	27	15	3,019	46	1,426,368	537,096	197,242	428,314	1,162,652	2,589,020
전남	6,016	40	7	6,063	99	3,069,792	1,155,924	396,108	885,446	2,437,478	5,507,270
경북	6,264	21	13	6,298	88	2,738,704	1,027,488	410,542	862,004	2,300,034	5,038,738
경남	7,258	15	10	7,283	86	2,666,688	1,004,136	475,801	938,053	2,417,990	5,084,678
제주	237	2	2	241	5	155,040	58,380	15,746	39,256	113,382	268,422
계	38,034	215	84	38,333	540	16,754,320	6,305,040	2,503,472	5,269,168	14,077,680	30,832,000

2) 세부 추진절차

(가)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및 방역용품 배정 사전준비

■ 공동방제단 사업계획 수립 : 농협중앙회(전년도 12월)

- 농협중앙회는 확보된 예산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축종별 농가수의 경우 통계청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활용
- 농협중앙회는 필요시 시·군별 방제단 인력과 장비를 조정 배치할 수 있음

■ 시·군별 예산 배정 및 방제단 편성 : 시·군, 축협(연초)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시·군별로 대상 농가수를 감안하여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작성한 시·군별 예산편성자료를 참조하여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배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축협은 편성된 방제단을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 공동방제단 운영계획은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축협방제단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축협과 시·군이 협의하여 결정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 농가 선정 : 시·군, 축협(연초)

- 축협은 관할 시·군별 배정예산과 농협중앙회에서 편성한 사업물량 및 보유자원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축협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과 자원의 능력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
- 시·군별 대상 농가 선정시 다음 자료를 참고하되, 농가수는 농협중앙회에서 작성 통보한 예산편성 자료상의 시·군별 농가수를 사업물량의 기준으로 함
 - 소(한·육우, 젖소 등) : 축산물이력제시스템 또는 KAHIS 자료
 - 닭 : 통계청(전수조사) 또는 행정 통계치 또는 KAHIS 자료
 - 사슴·염소·양·돼지·오리 : 통계청 또는 행정 통계치 또는 KAHIS 자료
- 시·군은 명단을 사업 개시 전 축협에 통보하며, 축협은 관할 사업대상 농가명단 및 주소를 통보받아 전산(KAHIS)에 등록하여 관리(연도 중 휴·폐업, 신규농장 명단은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에 반영)

(나) 공동방제단 방역요원 교육 및 농가 홍보

■ 공동방제단 방역요원(소독전담요원) 직무교육

- 지역축협은 방역요원 채용 후 현장 배치 이전에 방역 및 공동방제단 사업요령 교육 실시 및 연 1회 이상 자체 방역교육을 실시
- 농협중앙회는 방역요원을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실무 및 방역교육을 실시
- 농협중앙회는 방제요원 교육 계획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교육내용은 방역관련 제 법령, 전염병 특성과 주의사항, 가축사육기술, 소독기 정비점검, 소독약의 특성과 희석배수 적용 및 농가 소독요령, 예찰요령, 근무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

* 농협중앙회는 공동방제단 세부요령을 마련하여 운영

(다) 공동방제단 인력, 장비, 약품의 확보 등

■ 인력의 확보

- 공동방제단 소요인력은 시·군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축협이 방역요원(소독전담요원)을 별도 채용(정규직 등을 방역전담으로 운영 가능)
- 방역요원은 소독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소독 실습교육을 받아야 함

■ 장비의 확보

- 농협중앙회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소독장비(소독차량 등)를 확보하여 축협에 배정
- 시·군별 추가 소요되는 장비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소독약품 등의 확보

- 소독약품은 시·군별 사업예산 범위내로 축협에서 구입
 - 소독약품 구매절차
 - i) 시·군은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하단의 소독약품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5개 품목 이상을 선정(가축방역심의회 구성 시 반드시 축협 등 관계자 포함)

* 소독약품 선정기준

-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소독범위(구제역·AI·ASF 등)가 광범위 할 것, 사람과 가축에 위해가 적을 것
- ASF·구제역·고병원성AI 긴급행동지침 등의 소독제 종류 및 적용범위 준수(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바이러스에 효력을 인정한 허가된 제품 선정, 동절기 소독을 위한 산화제 품목 포함 및 동절기 산화제 사용 권고)

ii) 축협은 시·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선정된 품목을 구매

- 소독약품은 분기별로 배정 및 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이 많은 지역은 월별로 분할 배송할 수 있음
- 소독대상 질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렘피스킨, 브루셀라병, 결핵병, 뉴캐슬병 등에 유효한 제제를 선정

(라) 공동방제단(방역요원)의 소규모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 실시

■ 농가방문 및 소독 요령

- 시·군별 축협방제단은 대상농가에 대해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회하며 방문 소독을 실시
- 대상농가에 대해 소독목적 및 필요성 등을 지도·홍보
- 축종별 소독 요령
 - 소 : 농장입구, 축사주변 등의 외부, 축사 내부, 농장차량 바퀴 등
 - 기타축종 : 농장입구, 축사주변 등 외부, 농장차량 바퀴 등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당해 농가에 비치된 별지서식 “소독실시기록부”에 소독상황을 기록
 - 방역요원은 별지서식 “공동방제단소독실시대장”에 당해 농가의 소독상황을 기록하고 농가의 서명을 받되, 부재중일 경우 소독확인서(스티커)를 발급 배부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 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동일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격리 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독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음

■ 전통시장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 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전통시장 방문 전에 업주나 시장관리인을 통해 가금을 일제 출하(all-out)토록 하고, 소독 시에는 가금이 접촉한 케이지나 어리장 등을 충분히 젖도록 소독하고, 가금이 운반되는 진·출입로와 주변을 철저히 소독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전통시장 업주나 시장관리인에게 서명을 받음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폐기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
 - 동일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격리 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독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음

■ 밀집사육지역 주변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밀집사육지역 진·출입로, 인접 주요 도로 및 농장 주변을 소독차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농가 또는 밀집사육지역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 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동일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격리 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독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해당 농장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KAHIS에서 전산상으로 조회하여 대상자 입국 여부를 매일 확인
 - 농장 소재지 축협 공동방제단이 대상자 입국 후 1주일 이내에 방문 소독을 실시
- 농장 진·출입로, 축산차량 실내 및 바퀴, 축사관리소, 대상자 농장내 이동동선 등을 따라 소독차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대상자의 서명을 받음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 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기타 소독활동 지원

- 기존 질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인한 추가 소독이 필요하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AI 등 질병이 발생한 지자체의 긴급 요청 등으로 필요한 추가 소독활동에 공동방제단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독활동의 범위·횟수 등은 당해 지자체와 관할 축협이 협의하여 결정
- 다만, 시군별 공동방제단의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부득이 예산초과 할 경우 초과비용은 당해 지자체에서 지원
 - * 기타 소독활동 지원시 연간 소규모농가 등의 정기 소독실적에 합산 가능
- 기타 소독활동을 하는 경우, 지자체 소독담당자는 추가 소독이 필요한 대상농가, 소독차량의 이동동선 파악, 일일 소독횟수 등의 소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축협에 사전 통보할 것
 - * 특히, 소독차량별로 운영기간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여 효율적인 소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 지자체 및 농협경제지주는 질병발생 관련 감수성 가축농장 소독이 누락(예: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음에도 소독차량이 양돈농장 위주로 편성되는 등)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소독 후 실적입력

- 방역요원은 GPS 자동 미집계 실적은 3일 이내에 KAHIS 시스템에 수기등록

(마) 공동방제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등

■ 시장·군수(시·도지사)

-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지방비를 확보·지원
 - 필기구, 기록대장, 방역복, 장화, 장갑 등
- 공동방제단 운영 및 가축방역 관련 홍보물을 제작, 공동방제단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는 등 자체 홍보 실시

■ 축산관련 단체

- 시·군과 협조하여 소독장비 및 인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다. 공동방제단 사업비 배정·지급 및 정산

1. 사업비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 통보
- 농협(축발기금사무국)은 해당 시·도에 보조금 지급
- 시·도는 관할 시·군에, 시·군은 사업추진 축협에 사업비 배정내역을 통보
- 시·군은 사업비를 사업수행 지역 축협에 지급
 - ※ 시·도는 배정된 공동방제단 사업비 내에서 시·군별로 자체 조정 가능
- 시·군별 사업비 배정결과 보고 : 1.31까지
 - 보고체계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에는 사본 송부)
 - 보고서식(Excel 작성 제출)

(단위 : 개소, 명, 천원, 천 l)

시·군	개소수	방역 인원	공동방제단			사업비 항목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인건비	소독장비 임대료	소독 약품	기타 운영비	

2. 사업비 지급

- 시·군은 공동방제단 사업비를 분기별로 사업수행 축협에 지급.
- 축협은 수령한 사업비를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건비 지급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보관

3.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총결산은 연도 말일자로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

〈분기별 정산〉

- 축협은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내역을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매 분기 말일까지 시·도에 보고
- * 정산서류에는 소득실적, 항목별 지급금액, 법적지출증빙서 또는 계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여야 함
- 시·도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협중앙회(친환경건설팅방역부) 송부 및 농식품부에 보고

〈연도말 정산〉

- 축협은 연도말 최종 사업비 집행결과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집행결과를 정리 및 최종 확정하여 12월 말일까지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의 운영비 정산결과 보고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 미집행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통보하고, 잔액을 반납조치
- 시·도는 연도말 국비 및 지방비 최종 사업비 집행결과를 익년 1월 10일까지 농협중앙회(친환경방역부) 송부 및 농식품부에 보고

라. 공동방제단 사업추진 실적보고

1. 소득실적 보고 : 매월 익월 5일 이내

- 보고체계 : 축협 → 시·군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별 공동방제단 소득실적 보고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보고서식(Excel 작성 제출)

(단위 : 호, 명, 천 l)

시 군	대상농가수	축협명	월 공동방제단 소득실적				비 고
			방제단 운영	방역요원명	소득농가수	소득약 사용	

2. 공동방제단 운영결과 보고 : 매 분기 익월 10일 이내

■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축협의 공동방제단 운영실적(채용인원, 소독점검 실적, 교육실적, 자체 운영 점검 실적 등)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연도말 최종 사업결과 보고 : 익년 1월 31일 까지

■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마. 공동방제단사업 실태 및 농가 소독실태 점검

1. 시·도

- 시·도지사는 현장점검 책임자를 지정, 운영
- 시·군별 현장점검자를 동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모든 시·군별로 2개소 이상을 점검(연 1회이상)
 - 방제단별 방역요원과 예산의 지급상황 등을 실태 점검
 - 농가의 소독실시기록부 작성여부 확인
 - 가금거래 전통시장,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공동방제단 소독실태 점검

2. 시·군

- 시장·군수는 방제단 별로 대상농가 2개 이상을 무작위로 방문, 소독실태 점검(소독실시기록부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방제단의 비용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3.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반기 단위로 시·도별로 2개소 이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방제단 운영 실태를 현지 방문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지시한다.

4.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결과 소독 미 실시(소독실시 기록부 미 기록 및 미비치 등) 및 시설 미운영 농가, 업체 등은 확인서를 받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시장·군수는 공동방제단 운영 장비 및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공동방제단은 강력한 제재조치 실시

〈 별지 제1호서식 〉

소규모 농가 명단 현황

□ 마을단위 : 시·군 읍·면 리

□ 소규모 농가 명단 및 현황

일련 번호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사육가축 및 두수								비 고
			한육우	젖소	사슴	염소	닭	오리	기타	계	
		리 번지	두								
계											

※ 가급적 축종별 단위로 구분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소독약품 수불대장

□ 공급 및 수령일자 : 20 년 월 일

□ 공급기간 및 수령기관

○ 공급기관 :

○ 수령기관 :

□ 약품명 및 수량

○ 약품명 : , 리터

□ 수불내역

[illegible]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

공동방제단 소독 실시대장

□ 소독 일자 : 20 년 월 일

□ 소속 실시자 :

구 성	성명	축협명(주소 및 연락처)	확인(서명)
소독요원			

□ 소독지역 : 시·군 읍·면 리

□ 소득 내역

일련 번호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축종 및 사육두수		특이사항	농가확인 (서 명)
			축 종	두수		
계						

※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 소독실시 내역 포함

〈 별지 제5호서식 〉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급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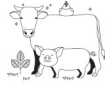
□ 시·군명 :

□ 축 협 명 :

작성자 :

(인)

지급일	수령자	지급 금액	담당 지역	농가수	소독 횟수	차량 번호	확인 (서명)



2026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IV

가축백신지원 사업 (농특회계 : 예산과목 3940-342)

1. 사업 총괄표	201
2. 사업별 추진개요	202
1)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사업	202
2)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	203
3) 렘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사업	208
3. 세부사업 시행내역	209
4.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220

1

사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5년도 사업비 (국 비)	'26년도 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66,983,000	117,995,088	55,569,000	31,262,139	31,163,949
□ 말 예방백신 등 지원	1,827,000	1,909,832	1,337,000	-	572,832
○ 말 예방백신 등 지원	1,337,000	1,909,832	1,337,000	-	572,832
○ 아프리카마역 백신 비축	490,000	-	-	-	-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49,789,000	111,166,088	50,279,000	30,296,139	30,590,949
○ 소 구제역백신(전업농)	3,778,878	10,581,882	3,703,655	1,587,286	5,290,941
○ 소 구제역백신(소규모)	3,124,863	4,366,466	3,056,521	1,309,945	-
○ 돼지 구제역백신(전업농)	17,059,459	50,600,016	17,710,003	7,590,005	25,300,008
○ 돼지 구제역백신(소규모)	3,988,416	5,143,158	3,600,206	1,542,952	-
○ 염소, 사슴 등 구제역 백신	1,247,863	1,946,153	1,362,304	583,849	-
○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1,780,576	3,290,262	1,645,131	1,645,131	-
○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7,379,116	14,637,270	7,318,635	7,318,635	-
○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5,570,466	11,153,238	5,576,619	5,576,619	-
○ 구제역 예방약류 조달수수료	82,888	79,630	79,630	-	-
○ 구제역 채혈비(지자체)	972,475	2,036,737	611,020	1,425,717	-
○ 구제역 채혈비(민간)	3,003,000	5,720,000	4,004,000	1,716,000	-
○ 유보액	1,801,000	1,611,276	1,611,276	-	-
□ 렘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15,367,000	4,919,000	3,953,000	966,000	-
○ 렘피스킨 백신	10,500,000	2,971,000	2,971,000	-	-
○ 렘피스킨 백신 조달수수료	57,000	16,000	16,000	-	-
○ 소 렘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4,810,000	1,932,000	966,000	966,000	-
○ 유보액	-	-	-	-	-

2

사업별 추진개요

1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사업(3940-342-320-01, 민간경상보조)

■ 사업목적

- 국내 말 산업의 성장에 따른 말 전염병 발생위험에 대비하여 예방백신 접종과 전염병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단위의 말 방역체계를 구축
- 말 전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말 산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성기반을 조성

■ 사업내용

- 사업시행 : 한국마사회,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원내용 : 말 예방백신 지원, 말 전염병 모니터링, 말 전염성자궁염(CEM) 일제조사
 - 말 예방백신 지원 : 수의사를 활용하여 전국 말 18,000두에 예방백신 4종* 접종
 - * 말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선역, 비강폐렴
 - 말 전염병 모니터링 : 전국 말 1,300여두를 대상으로 하여 주요 말 전염병 9종* 질병에 대한 검사(농림축산검역본부 협조)
 - *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웨스트나일열, 일본뇌염, 말 인플루엔자, 말파이로플라즈마, 슈라
 - 전국 더러브렛 번식마 2,200여두를 대상으로 말 전염성자궁염(CEM) 검사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910,000	1,337,000	-	573,000

* 지원비율 : 국비 70%, 자부담 30%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실시요령을 한국마사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달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6.2월) 후 승인을 받아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2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3940-342-330-01, 자치단체 경장보조)

※ 세부 요령은 '2026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실시요령' 및 '2026 민간 검사기관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사업 실시요령'에 따름

1. 구제역 예방약

■ 사업목적

-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약 지원

■ 사업개요

- 주 관 : 시·도(시·군·구)
- 지원대상 :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
- 지원내용 : 구제역 예방약(백신) 지원
- 사 업 비(유보액 제외)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72,637,675	29,432,689	12,614,037	30,590,949

* 지원비율 : (소규모) 국비 70%, 지방비 30% (전업농) 국비 35%, 지방비 15%, 자부담 50%
단,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 사육 농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소규모 농가로 간주

- 사업량 확정 및 제품 선정·공급·보관 등 사업실시 요령
 - 사업량 확정 : 시·도는 시·군별 농가수·사육두수 및 구제역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하여 예방약 공급 계획을 확정
 - 제품 선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 선정
 - * 협의회 구성원: 방역본부 방역사, 공·개업 수의사, 지역 축협장, 농가 대표 등
 - ※ 정부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제품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비 투입 또는 농가 자부담 조치
 - 약품 공급
 - (소규모농가) 지자체에서 정부 조달을 통해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
 - * 시·군·구는 가축방역관, 공·개업 수의사 등을 통해 약품을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 현황을 기록·관리 (냉장보관 시설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
 - (전업농가) 농협(축협동물병원)이 백신 공급사와 정부 조달계약단가(또는 공급가)에 따라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판매)하고 농가가 소재한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2. 접종 시술비

■ 사업목적

- (소) 사육 마릿수가 50마리 미만인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동원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단, 접경지역·NSP 항체 검출지역 등 위험지역에 소재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 마릿수가 50두 이상인 경우에도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접종지원 가능

- (염소) 사육 마릿수가 300마리 미만인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방목 사육하는 특성상 예방접종 시 별도의 포획인력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453천두분(소 2,440천두, 염소 1,013천두)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5,790,508	12,895,254	12,895,254	-
소	14,637,270	7,318,635	7,318,635	-
염소	11,153,238	5,576,619	5,576,619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소) 6천원/두(국비 3천원, 지방비 3천원)

(염소) 11천원/두(국비 5.5천원, 지방비 5.5천원) * 접종비 6천원, 포획비 5천원

3. 스트레스 완화제

■ 사업목적

- 예방접종에 의한 식욕부진 등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 9,970천두분
-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290,262	1,645,131	1,645,131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 소규모농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소규모농가 기준 :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사육 /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 농가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농가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시·군·구에서 구제역백신 접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제품 선정 :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등록된 물품 중 구제역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이 명시된 제품(주사제, 산제 등)
 -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어도 사실상 동일 제품(등록물품과 동일 성분에 용량만 다른 경우 등)인 경우 구매·지원 가능
- 지원 방법 : 시·군·구는 농가별 희망 물품 및 소요량을 파악한 후 조달청(나라장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 백신접종 시기에 맞춰 농가에 공급

4. 구제역 채혈비(지자체)

■ 사업목적

- 구제역 혈청검사(NSP, SP)를 위해 공수의 등 민간 수의사를 동원하여 시료 채취(채혈)를 실시하는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 204천두분
-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36,737	611,020	1,425,717	-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70%

- 지원대상 :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
 - 구제역 혈청 예찰(NSP, SP)를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 수의사에게 보조금을 지급
 - * 확인검사(민간검사기관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시 항체양성률 미달 농가 대상)에 동원된 수의사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소 소규모농가 및 돼지, 염소 등 타 축종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후 채혈비 지급 가능
- 지원 금액
 - 결핵, 브루셀라 등 다른 가축전염병 관련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한 경우 : 5,000원/마리(두)
 -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 시료가 구제역 외에 타 질병의 진단 등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 10,000원/마리(두)
 - * 해당 시료로 채혈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른 가축전염병을 검사하는 경우도 포함

5. 구제역 채혈비(민간)

■ 사업목적

- 도축장 출하 가축(소)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SP) 검사를 민간에 위탁하고 검사물량을 확대하여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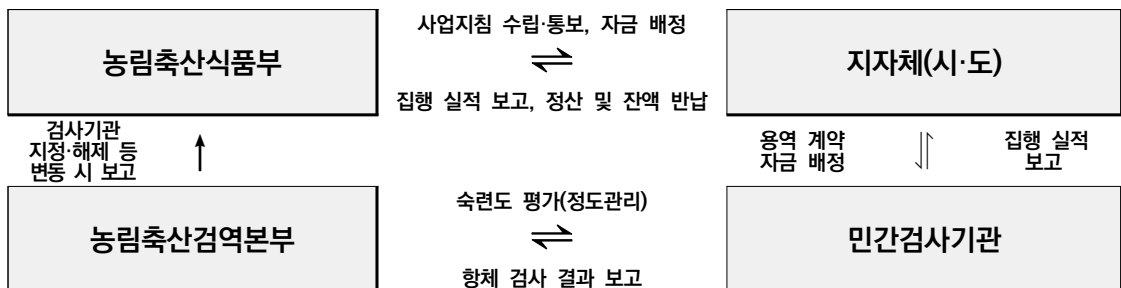
- 사업량 : 200천두분
-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5,720,000	4,004,000	1,716,000	-

* 지원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대상 : 소 도축장(22개소*)이 소재한 11개 시·도
 - * 2024년 기준 도축실적 1만두 이상의 도축장
- 각 시·도에서는 민간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수행
 - * 구제역백신 항체(SP) 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검사기관 중 검역본부의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또는 컨소시엄)
- 지원 금액 : 28,600원/마리(두)
- 사업자 선정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 사업 추진 체계



3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사업(3940-342-330-01/210-11, 자치단체경상보조/재료비)

1. 럼피스킨병 예방약(210-11, 재료비)

■ 사업목적

- 럼피스킨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약 지원

■ 사업개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 고위험 소재 소 사육 소규모 농가 등
- 지원내용 : 럼피스킨병 예방약(백신) 지원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971,000	2,971,000	-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계약·구매 후 각 시·군의 소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배부

2. 접종 시술비(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목적

- 고위험 지역 소재 소규모 소 사육 농가(50두 미만 사육)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접종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90천두분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932,000	966,000	966,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5천원/두(국비 2.5천원, 지방비 2.5천원)

3

세부사업 시행내역

■ 시·도별 국비 예산

①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단위 : 천원)

시 도	총 계	구제역 예방약					
		소 계	소 전업규모	소 소규모	돼지 전업규모	돼지 소규모	염소·사슴 기타우제류
계	48,667,724	29,432,689	3,703,655	3,056,521	17,710,003	3,600,206	1,362,304
서 울	714	714	-	119	-	-	595
부 산	45,729	19,577	328	2,682	-	12,763	3,804
대 구	379,449	235,527	20,810	26,382	163,266	19,326	5,743
인 천	196,166	80,099	19,950	15,030	16,380	17,850	10,889
광 주	106,840	29,140	2,972	4,462	13,878	7,054	774
대 전	56,292	15,515	3,724	5,495	-	822	5,474
울 산	342,538	123,016	16,257	44,831	33,794	13,040	15,094
세 종	385,930	256,775	25,817	25,622	150,502	47,694	7,140
경 기	6,523,464	4,286,272	420,382	228,242	2,852,010	690,200	95,438
강 원	2,424,717	1,388,965	236,284	217,810	746,347	104,319	84,205
충 북	3,611,202	1,734,294	265,134	184,975	930,596	169,622	183,967
충 남	8,596,874	6,106,974	446,089	397,428	4,214,079	909,376	140,002
전 북	5,407,451	3,449,113	511,558	371,425	1,860,385	503,825	201,920
전 남	7,235,606	3,945,627	619,304	560,565	2,216,529	248,437	300,792
경 북	7,060,489	3,972,222	761,149	652,677	1,970,075	393,510	194,811
경 남	5,169,847	2,830,860	307,727	293,776	1,795,341	333,727	100,289
제 주	1,124,416	957,999	46,170	25,000	746,821	128,641	11,367

(단위 : 천원)

시 도	접종 시술비			스트레스 완화제	구제역 예방약류 조달 수수료	구제역 채혈비	
	소 계	(소) 예방접종 시술비	(염소) 포획·예방 접종 시술비			지방정부	민간
계	12,895,254	7,318,635	5,576,619	1,645,131	79,630	611,020	4,004,000
서울	0	-	-	-	-	-	-
부산	23,983	7,043	16,940	1,998	171	-	-
대구	67,896	58,664	9,232	8,077	485	3,400	64,064
인천	66,550	32,670	33,880	6,765	411	2,301	40,040
광주	12,264	12,264	-	1,263	109	-	64,064
대전	38,372	13,072	25,300	1,330	106	969	-
울산	198,884	133,906	64,978	16,549	742	3,347	-
세종	108,800	78,000	30,800	12,970	761	6,624	-
경기	962,160	575,400	386,760	222,453	10,224	73,387	968,968
강원	789,661	476,856	312,805	80,378	4,003	25,574	136,136
충북	1,032,570	479,593	552,977	108,283	5,325	50,050	680,680
충남	1,640,498	914,694	725,804	288,783	14,280	65,859	480,480
전북	1,643,127	851,588	791,539	141,015	9,833	104,303	60,060
전남	2,609,002	1,371,502	1,237,500	185,520	10,565	88,496	396,396
경북	2,212,519	1,495,650	716,869	289,247	12,698	141,371	432,432
경남	1,413,215	761,636	651,579	198,000	7,753	39,339	680,680
제주	75,753	56,097	19,656	82,500	2,164	6,000	-

2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접종 시술비)

(단위 : 두, 천원)

시 도	국 비	지방비	비고
계	966,000	966,000	□ 지원대상 : 고위험 지역 소재 소규모(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고위험 지역 (인천) 강화 (울산) 울주 (경기) 김포, 남양주, 안산, 화성, 양주 (전북) 정읍, 남원, 완주 (전남) 나주, 담양, 구례, 장흥, 무안, 곡성, 영암 (경북) 경주, 안동, 문경, 의성, 성주, 구미, 영주, 상주, 청도, 예천, 고령 (경남) 창원, 산청, 함양
서 울	-	-	□ 지원기간 : 연중
부 산	-	-	□ 지원비용 : 5,000원/두 ○ 국비 2,500원, 지방비 2,500원
대 구	-	-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인 천	12,155	12,155	□ 실시요령 ○ 수의사를 동원한 럼피스킨병 예방접종 지원 ○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대장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 수의사에 시술비 지급
광 주	-	-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개체별 접종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것
대 전	-	-	
울 산	40,593	40,593	
세 종	-	-	
경 기	39,444	39,444	
강 원	36,910	36,910	
충 북	6,339	6,339	
충 남	177,694	177,694	
전 북	86,338	86,338	
전 남	192,244	192,244	
경 북	338,436	338,436	
경 남	35,847	35,847	
제 주	-	-	
유 보	-	-	

■ 예산 세부 현황(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① 구제역 예방약(백신)

소 구제역 예방약

(단위 : 두, 천원)

시 도	구제역(전업규모 농가)				구제역(소규모 농가)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5,569,419	3,703,655	1,587,286	5,290,941	2,568,517	3,056,521	1,309,945
서울시	-	-	-	-	100	119	51
부산시	494	328	141	469	2,255	2,682	1,150
대구시	31,294	20,810	8,919	29,729	22,170	26,382	11,307
인천시	30,000	19,950	8,550	28,500	12,631	15,030	6,442
광주시	4,470	2,972	1,274	4,246	3,750	4,462	1,913
대전시	5,600	3,724	1,596	5,320	4,618	5,495	2,355
울산시	24,448	16,257	6,968	23,225	37,674	44,831	19,214
세종시	38,824	25,817	11,065	36,882	21,532	25,622	10,981
경기도	632,154	420,382	180,164	600,546	191,800	228,242	97,818
강원도	355,315	236,284	101,265	337,549	183,035	217,810	93,348
충북도	398,698	265,134	113,629	378,763	155,442	184,975	79,275
충남도	670,811	446,089	191,181	637,270	333,974	397,428	170,327
전북도	769,262	511,558	219,240	730,798	312,123	371,425	159,183
전남도	931,285	619,304	265,416	884,720	471,064	560,565	240,243
경북도	1,144,586	761,149	326,207	1,087,356	548,469	652,677	279,719
경남도	462,748	307,727	131,883	439,610	246,871	293,776	125,904
제주도	69,430	46,170	19,788	65,958	21,009	25,000	10,715

* 산출 근거 : 전업규모(1,900원/두, 국비35%, 지방비15%, 자부담50%),
소규모(1,700원/두, 국비70%, 지방비30%)

 돼지 구제역 예방약

(단위 : 두, 천원)

시 도	구제역(전업규모 농가)				구제역(소규모 농가)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28,111,126	17,710,003	7,590,005	25,300,008	3,025,394	3,600,206	1,542,952
서울시	-	-	-	-	-	-	-
부산시	-	-	-	-	10,726	12,763	5,470
대구시	259,154	163,266	69,972	233,238	16,241	19,326	8,283
인천시	26,000	16,380	7,020	23,400	15,000	17,850	7,650
광주시	22,029	13,878	5,948	19,826	5,929	7,054	3,024
대전시	-	-	-	-	692	822	353
울산시	53,643	33,794	14,484	48,278	10,959	13,040	5,589
세종시	238,893	150,502	64,501	215,003	40,080	47,694	20,441
경기도	4,527,000	2,852,010	1,222,290	4,074,300	580,000	690,200	295,800
강원도	1,184,678	746,347	319,863	1,066,210	87,664	104,319	44,709
충북도	1,477,137	930,596	398,827	1,329,423	142,540	169,622	72,696
충남도	6,689,015	4,214,079	1,806,034	6,020,113	764,182	909,376	389,733
전북도	2,952,993	1,860,385	797,308	2,657,693	423,383	503,825	215,925
전남도	3,518,300	2,216,529	949,941	3,166,470	208,771	248,437	106,473
경북도	3,127,104	1,970,075	844,318	2,814,393	330,682	393,510	168,648
경남도	2,849,748	1,795,341	769,432	2,564,773	280,443	333,727	143,026
제주도	1,185,432	746,821	320,067	1,066,888	108,102	128,641	55,132

* 산출 근거 : 전업규모(1,800원/두, 국비35%, 지방비15%, 자부담50%), 소규모(1,700원/두, 국비70%, 지방비30%)

 기타우제류(염소, 사슴 등) 구제역 예방약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1,144,804	1,362,304	583,849
서울시	500	595	255
부산시	3,198	3,804	1,631
대구시	4,827	5,743	2,462
인천시	9,151	10,889	4,667
광주시	651	774	332
대전시	4,600	5,474	2,346
울산시	12,685	15,094	6,469
세종시	6,000	7,140	3,060
경기도	80,200	95,438	40,902
강원도	70,761	84,205	36,088
충북도	154,595	183,967	78,843
충남도	117,649	140,002	60,001
전북도	169,682	201,920	86,538
전남도	252,767	300,792	128,911
경북도	163,708	194,811	83,491
경남도	84,277	100,289	42,981
제주도	9,553	11,367	4,872

* 산출 근거 : 1,700원/두(국비70%, 지방비30%)

③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염소)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비고
계	1,013,935	5,576,619	5,576,619	※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에 따름
서 울	-	-	-	□ 지원대상 :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
부 산	3,080	16,940	16,940	□ 지원기간 : 연 중
대 구	1,679	9,232	9,232	□ 지원비용 : 11,000원/두 * 접종시술비 6,000원, 포획비 5,000원
인 천	6,160	33,880	33,880	○ 국비 5,500원, 지방비 5,500원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광 주	-	-	-	□ 실시요령
대 전	4,600	25,300	25,300	○ 수의사 및 포획단을 동원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울 산	11,815	64,978	64,978	○ 지자체는 대상 농가 및 사육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접종계획 수립* * 일제접종 기간 내에 모든 개체를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일정 관리
세 종	5,600	30,800	30,800	○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대장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 수의사 및 포획단에 포획·접종 시술비 지급
경 기	70,320	386,760	386,760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별 접종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것
강 원	56,874	312,805	312,805	** 접종시술비와 포획비 중복 지급 불가(수의사가 포획단 없이 접종한 경우 접종시술비만 지급)
충 북	100,542	552,977	552,977	
충 남	131,965	725,804	725,804	
전 북	143,917	791,539	791,539	
전 남	225,000	1,237,500	1,237,500	
경 북	130,340	716,869	716,869	
경 남	118,469	651,579	651,579	
제 주	3,574	19,656	19,656	

4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비 고
계	9,970,497	1,645,131	1,645,131	※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에 따름
서 울	-	-	-	□ 지원대상 : 우제류 사육 농가
부 산	12,110	1,998	1,998	□ 산출근거 : 330원/두 (국비 165, 지방비 165)
대 구	48,952	8,077	8,077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인 천	41,000	6,765	6,765	□ 실시요령
광 주	7,655	1,263	1,263	○ 소규모농가* 지원을 원칙으로 함
대 전	8,061	1,330	1,330	*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사육 농가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 농가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농가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울 산	100,297	16,549	16,549	○ 지방정부에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제품 및 공급물량 결정
세 종	78,607	12,970	12,970	* 축종별 사육두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
경 기	1,348,200	222,453	222,453	○ 지방정부에서 정부 조달계약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여 농가에 공급(필요시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가에 공급 가능)
강 원	487,140	80,378	80,378	-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등록된 물품 중 구제역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이 명시된 제품만 지원 가능(주사제, 산제 등)
충 북	656,261	108,283	108,283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사실상 동일 제품(등록 물품과 동일 성분에 용량만 다른 경우 등)인 경우 구매·지원 가능
충 남	1,750,200	288,783	288,783	** 국비 지원분 외에 소요량은 지방비를 자체 확보 하여 지원 가능
전 북	854,637	141,015	141,015	
전 남	1,124,364	185,520	185,520	
경 북	1,753,013	289,247	289,247	
경 남	1,200,000	198,000	198,000	
제 주	500,000	82,500	82,500	

5 구제역 채혈비(지방정부)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비 고
계	203,677	611,020	1,425,717	※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사업 실시요령'에 따름
서울	-	-	-	□ 지원대상 : 소 전업규모 농가 *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 소규모농가 및 돼지, 염소 등 타 축종 사육 농가 대상으로도 지원 가능
부산	-	-	-	
대구	1,134	3,400	7,934	□ 단가 ○ 10,000원/두 (국비 3,000, 지방비 7,000)
인천	767	2,301	5,369	
광주	-	-	-	-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 시료가 구제역 외에 타 질병의 진단 등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 해당 시료로 채혈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른 가축전염병을 검사하는 경우 포함
대전	323	969	2,261	
울산	1,116	3,347	7,810	○ 5,000원/두 (국비 1,500, 지방비 3,500)
세종	2,208	6,624	15,456	
경기	24,463	73,387	171,237	-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다른 가축전염병 관련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한 경우
강원	8,525	25,574	59,673	
충북	16,684	50,050	116,784	□ 실시요령 ○ 구제역 혈청 예찰(NSP, SP)을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된 수의사에게 보조금 지급
충남	21,953	65,859	153,671	
전북	34,768	104,303	243,374	- 시·군·구는 시료 채취를 요청한 농장의 혈청검사 결과를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확인 농장 정보 등 이상 없는 경우 수의사에 보조금 지급
전남	29,499	88,496	206,491	
경북	47,124	141,371	329,866	- 확인검사(민간검사기관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시 항체양성률 미달 농가 대상)에 동원된 수의사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국비 지원분 외에 소요량은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여 지원 가능
경남	13,113	39,339	91,791	
제주	2,000	6,000	14,000	

⑥ 구제역 채혈비(민간)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비 고
계	200,000	4,004,000	1,716,000	※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민간 검사기관 구제역백신 항체 검사 사업 실시요령'에 따름 ☐ 지원대상 : 소 도축장(22개소)이 소재한 11개 시·도 ☐ 단가 ○ 28,600원/두 (국비 20,020, 지방비 8,580)
서 울	-	-	-	
부 산	-	-	-	
대 구	3,200	64,064	27,456	
인 천	2,000	40,040	17,160	
광 주	3,200	64,064	27,456	
대 전	-	-	-	
울 산	-	-	-	
세 종	-	-	-	
경 기	48,400	968,968	415,272	
강 원	6,800	136,136	58,344	
충 북	34,000	680,680	291,720	
충 남	24,000	480,480	205,920	
전 북	3,000	60,060	25,740	
전 남	19,800	396,396	169,884	
경 북	21,600	432,432	185,328	
경 남	34,000	680,680	291,720	
제 주	-	-	-	

4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사업비 배정

- 국고 송금 : 연간 배정계획에 따라 국고 교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 자금 집행

-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보조율에 맞추어 지방비·자부담액 동시 집행
- 시·도별 여건에 따른 방역 조치로 인한 추가 소요 발생 시 지방비에서 부담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시·도는 2027.1.15.까지 별첨 서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에 사업 정산 보고 및 추진 실적 제출

〈 별첨 1 〉

2026년 가축백신지원사업(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 구제역 예방약 등 약품 공급

구 분	연간 계획 (A)	누 계	
		공급량 (C)	공급율 (C/A)
소 전업농	두		
소 소규모			
돼지 전업농			
돼지 소규모			
염소, 사슴 등 기타우제류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계			

□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구 분	연간 계획 (A)	누 계	
		실시 두수 (C)	공급율 (C/A)
	두		
계			

2.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비 배정				집행 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구제역 예방약	소 전업농								
	소 소규모								
	돼지 전업농								
	돼지 소규모								
	염소, 사슴 등 기타 우제류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기술비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기술비									
구제역 예방약류 조달 수수료									
구제역 채혈비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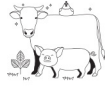
〈 별첨 2 〉

2026년 가족백신지원사업(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추진실적 보고**1. 사업 추진실적****□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연간 계획 (A)	누 계	
	실시 두수 (B)	공급율 (B/A)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비 배정				집행 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소)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026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살처분보상금 사업

(농특회계 : 예산과목 3940-337)

1. 살처분보상금 227
2. 생계 및 소득안정 228

1

살처분보상금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의 살처분 및 오염물건의 폐기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 실시로 인해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살처분·도태 명령에 따라 처리한 가축 및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2.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 지급기준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름

■ 사 업 비 : 67,727백만원(국비) (국비 80%, 지방비 20%)

■ 추진체계

- 소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 국비교부(농식품부) →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계좌입금(시·군·구)
- 시도별 살처분보상금 이월액 및 불용액 파악 보고(11월초)

■ 지급절차

- 신속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의 살처분 즉시 보상금 추정액의 50%까지 가 지급금으로 우선 지급
- 가 지급금 지급 후, 보상금 평가반 구성·평가금액 결정 및 농가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나머지 금액을 정산
- 살처분한 소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폐사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2

생계 및 소득안정

■ 사업목적

-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생계안정비용 지원
- 이동제한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소득안정비용 지원

■ 지급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급기준 :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소득안정비용)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름

■ 사 업 비 : 1,913백만원(국비), 1,713백만원(지방비)

* 살처분·이동제한 등 피해 발생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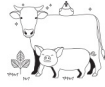
- 생계안정 : 국비 70%, 지방비 30%, 소득안정 : 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체계

- 소요액을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시·군·구) → 소요액 검증 후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 시·도에 예산 교부(농식품부) →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 후 농가 지원

■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피해 농가에 생계 및 소득안정비용이 신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등 사업 적기 추진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 및 소득안정비용 지원 시 검증 철저
- 농가에 지원 완료 후 농식품부에 해당사항 보고



2026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농특회계 : 예산과목 3940-341)

1. 사업 총괄표	231
2.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232
3.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234
4. 살처분등 비용 지원	237
5. 사업 세부내역	239
6. 사업비 집행 및 실적 보고	242

1

사업 총괄표

■ 세부사업 : 가축사체처리지원(3940-341)

■ 내역사업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 : 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②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 : ①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②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 살처분 등 비용 지원(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25년 사업비 (국 비)	'26년도 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7,737,000	14,137,000	5,051,000	8,206,000	880,000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1,480,000	3,280,000	1,280,000	2,000,000	-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80,000	200,000	80,000	120,000	-
○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1,400,000	3,000,000	1,200,000	1,800,000	-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1,050,000	2,740,000	930,000	930,000	880,000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600,000	1,720,000	660,000	660,000	400,000
○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450,000	1,020,000	270,000	270,000	480,000
□ 살처분 등 비용 지원	5,207,000	8,117,000	2,841,000	5,276,000	-

2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 세부사항은 「2026년도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지침」에 따름

■ 사업목적

- (사후관리) 가축매몰지의 관리·정비 및 소규모 매몰지 발굴
- (발굴·소멸) 매몰지를 발굴·소멸 처리하여 민원 해소 및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대상

1) 매몰지 발굴·복원사업

- '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중 관리해제(발굴금지 기간 3년 경과)된 매몰지
 -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매몰지부터 우선 발굴·복원
 - 소규모 매몰지나 사체부패가 용이한 곳에 매몰된 경우는 시굴조사로 사체 분해 정도 확인 후 소멸처리 가능(사전협의 및 보고는 발굴·복원 절차와 동일)
- 관리 중인 매몰지 중 “가축매몰지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발굴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침출수 유출 우려 등)

* 농식품부, 환경부와 사전협의 및 승인 필요

- 발굴·복원 대상 매몰지 선정 시 우선순위는 아래 기준을 따르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음

① 환경오염 우려 매몰지 ② 민원 매몰지(축주 신청 또는 인근주민 신청 등) ③ 지자체 발굴 필요 매몰지 등

2) 매몰지 사후관리사업

- 현재까지 가축전염병 발생 조성된 가축매몰지 중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거나 악취 제거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매몰지

* 침출수 유출, 매몰지 주변 토양 유실이 우려되거나, 주민 민원 관련 매몰지를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

■ 사업비 및 지원비율

- 지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1) 매몰지 발굴·소멸 사업

- 사업비 : 3,000백만원 (국비보조 1,200, 지방비 1,800)
- * 매몰지 규모, 형태 등에 따라 개소당 비용이 다르므로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60개×50백만원(개소당 국비 20, 지방비 30)

2)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 사업비 : 200백만원 (국비보조 80, 지방비 120)
- * 매몰지 규모, 형태 등에 따라 개소당 비용이 다르므로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32개×6,250천원(개소당 국비 2,500, 지방비 3,750)

■ 지원대상

1) 매몰지 발굴·소멸 사업

- 매몰지 발굴 : 발굴 준비작업, 주변 소독 및 작업자 안전조치, 발굴작업, 잔존물 분리 등
- * 매몰지 내 사체분해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나 부분 발굴에 드는 비용도 포함
- 잔존물 처리 : 매몰지 내 잔존 사체, 저장조(FRP, HDPE, 액비저장조 등), 비닐, 침출액 등을 처리하거나, 랜더링·화학적처리·미생물분해 등으로 처리 후 남은 잔존물 적정 처리
- 토양복원 : 침출수 유출 등에 의한 토양오염 시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토양환경 개선 조치 등
- 주변 등 환경정리 : 주변 환경오염 예방 및 토지활용 등을 위한 조치
- 부대 비용 : 사전 조사, 품질검사, 용역설계, 입찰, 민원 대응 등 관련 비용
- * 지원 제외 : 매몰지 발굴소멸이나 환경오염방지 등과 관련 없는 진입로, 부지 정비 등

2)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 사체 분해 촉진(미생물 구입) 및 환경관리(소독약, 약취제거제 등)를 위한 비용, 사체분해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비용, 매몰지 점검 후 복구·시정조치 비용

3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 세부사항은 「2026년도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가축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으로 재활용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대상

1)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지원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고정식랜더링 등)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 등

* (지원 제외) 도축장 도축라인과 관련된 랜더링 시설

2)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지원

- 살처분가축처리 장비(이동식 열처리 등)를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 등

■ 지원자격

1)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지원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폐수처리장, 악취제거 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소유한 단체 또는 개인
- 사업비 자부담(총 사업비의 30%)이 가능하고, 건물 및 주변 환경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2)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지원

-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 또는 매몰지 잔존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농·축협, 축종별 생산자단체 등),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개인사업자

- 최근 5년간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살처분가축 처리 또는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실적이 있거나, 매몰지 발굴복원 관련 연구실적이나 특허 등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 사업비 및 지원비율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 조정 가능(농식품부 사전승인 필요)

1)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지원

- 사업비 : 2,200백만원 (국비 660, 지방비 660, 자부담 880)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1개소 × 2,000백만원 × 연차사업(50%) × 국비 30%
1개소 × 2,000백만원 × 연차사업(30%) × 국비 30%

* '26년부터 연부율을 기존 1년차 50%, 2년차 50%에서 1년차 30%, 2년차 70%로 적용

2)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지원

- 사업비 : 900백만원 (국비 270, 지방비 270, 자부담 360)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3개소 × 300백만원 × 국비 30%

■ 지원대상

1)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지원

- 살처분가축 처리 기계·장비(고정식랜더링 등)·소독 시설 구입·설치 및 설계·공사감리, 건물 신·증축 및 개보수 비용
- 살처분가축 사체 보관용 저장 창고(냉장·냉동), 운반용 밀폐 차량 등 부대 시설 및 장비

2)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지원

- 이동식 열처리 기계·장비 및 부대시설의 구입·설치비 일체
 - 살처분 사체를 분쇄·열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처리장비
 - 살처분 사체를 분쇄할 수 있는 고성능 파쇄기 구입(제작)비용

- 살처분 및 사체처리를 위한 밀폐 보관 용기, 저장탱크 등 부대 장비
- 살처분 후 장비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고압 세척·소독기
- 가축 사체, 잔존물, 방역복 등을 소각할 수 있는 이동식 소각 장비
- 화학적 처리에 필요한 부대장비
 - 화학적 처리를 위한 사체 저장조 및 화학 반응 촉진을 위한 발전기 등

4

살처분등 비용 지원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관련 가축 살처분 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가축 비율에 따라 살처분, 매몰 등 비용 지원

* (지원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비용의 지원)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비 : 2,841백만원(국비)

■ 지원대상

- 지자체가 '25년 10월부터 '26년 9월까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가축의 살처분 및 사체 처리(매몰지 잔존물 및 퇴비 처리비용은 제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지원기준 및 국비 보조율

- 시·군·구에서 사육하는 해당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 등을 하는 경우는 기재부와 협의한 비율 지원
- 시·군·구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가 전국 사육두수의 1% 이상 사육하는 경우는 아래 표에 따른 비율(20%~50%)로 국비 지원

재정자립도	살처분비율	보조율	재정자립도	살처분비율	보조율
50~100%	50%이상	20%	20~30%미만	20%이상	30%
40~50%미만	40%이상	20%	10~20%미만	10%이상	40%
30~40%미만	30%이상	20%	10% 미만	5%이상	50%

* 소, 닭은 통계청 자료, 돼지, 오리, 메추리는 kahis자료 기준

- (사육두수 1% 이상) 전국 사육두수는 소·닭은 통계청 자료, 돼지·오리·메추리는 KAHIS 자료의 평균 두수를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 사육두수*는 통계청 또는 KAHIS 중 사육두수가 많은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재정자립도) 통계청 '25년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기준
- (살처분비율) 해당 가축 살처분 두수* ÷ 해당 가축 사육 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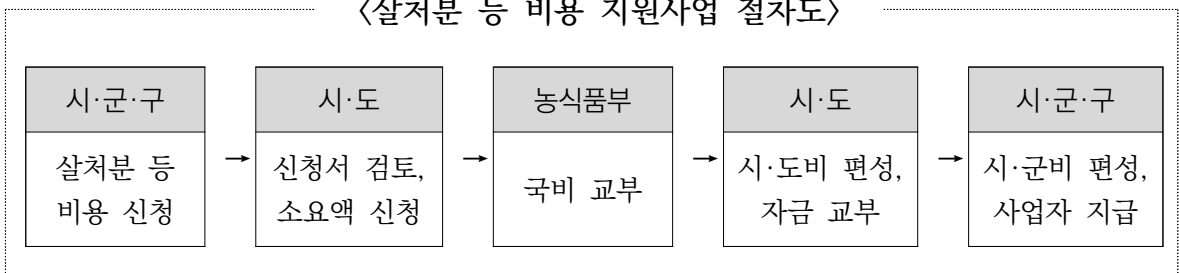
* '25년 10월부터 '26년 9월까지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두수 합계(kahis 입력 기준)

** 사육두수는 통계청 발표 자료('24년 10월~'25년 9월 평균 두수)를 기준으로 하고, 통계청 자료가 없는 경우(돼지, 오리, 메추리) kahis 자료 기준

■ 지원절차

- 시·군·구는 '25년 10월부터 '26년 9월까지 해당 축종의 살처분 두수가 재정자립도 기준 최소 살처분 두수를 초과한 경우 살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 지급 신청

〈살처분 등 비용 지원사업 절차도〉



- 시·군·구는 사도를 통해 살처분 등 비용을 신청하고, 살처분 처리 등을 위해 체결한 용역 계약서 등 서류*와 아래 표를 작성하여 신청

* 계약서, 견적서 등이 포함된 살처분 집행을 위한 방침문서 사본, 재정자립도(통계청) 및 해당 축종의 살처분 마리수(kahis)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살처분 등 비용 내역

살처분 내역			살처분 종류별 소요(천원)				재원별 소요(천원)				
살처분 방법	사육 일수	살처분 마리수 (B)	계 (A)	살처분	사체 처리	물건 폐기	계 (A)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기타

* 살처분 방법 : FRP, 이동식열처리, 랜더링, 호기호열 등

5

사업 세부내역

■ 지자체별 자금배정 내역(가축매몰지 관리·소멸·발굴·소멸)

(단위 : 천원)

시 도	'25년도 사업비		'26년도 사업비				세 부 내 역
	사업량	국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0	※ 사업실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6년 사업지침에 따름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대상 - '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중 관리해제(발굴금지 기간 3년 경과)된 매몰지 - 관리 중 매몰지 중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발굴허용 가능한 매몰지 ○ 사업비 및 지원 비율 - 지원 : 국비 40%, 지방비 60% - 사업비 : 1,200백만원 * 60개소×50,000천원×40%(국비) - 규모, 형태 등에 따라 사업비·사업량은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매몰지 발굴, 발굴 준비작업, 주변 소독 및 작업자 안전조치, 발굴작업, 잔존물 분리 등 * 사체분해 확인을 위한 시굴·발굴 포함 - 잔존물 처리: 매몰지 내 잔존 사체, 저장조, 비닐, 침출액 등을 처리하거나 랜더링, 화학적 처리, 미생물 분해처리 등 후 남은 잔존물 처리 - 토양복원: 침출수 유출 등 토양오염 시 복토하는 등 토양환경 개선 조치 등 - 환경정리: 주변 환경오염 예방 및 토지활용 등을 위한 부대 조치 - 부대비용: 사전조사, 품질검사, 용역 설계, 입찰, 민원 대응 등 관련 비용 * 지원 제외: 매몰지 발굴소멸이나 환경오염 방지 등과 관련없는 진입로, 부지 정비 등
부산	-	-	-	-	-	0	
대구	-	-	-	-	-	0	
인천	-	-	-	-	-	0	
광주	-	-	-	-	-	0	
대전	-	-	-	-	-	0	
울산	-	-	-	-	-	0	
세종	-	-	-	-	-	0	
경기	22	440,000	6	260,000	390,000	650,000	
강원	13	260,000	2	60,000	90,000	150,000	
충북	-	-	-	-	-	0	
충남	3	60,000	-	-	-	0	
전북	6	120,000	-	-	-	0	
전남	14	280,000	-	-	-	0	
경북	6	120,000	2	38,000	57,000	95,000	
경남	2	40,000	-	-	-	0	
제주	-	-	-	-	-	0	
유보액	4	80,000	42	842,000	1,263,000	2,105,000	
계	70	1,400,000	52	1,200,000	1,800,000	3,000,000	

■ 지자체별 자금배정 내역(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후관리)

(단위 : 천원)

시 도	'25년도 사업비		'26년도 사업비				세 부 내 역
	사업량	국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서 울	-	-	-	-	-	-	※ 사업실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6년 사업지침에 따름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 중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거나 악취 제거 등 추가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매몰지 ○ 사업비 및 지원 비율 - 지원 : 국비 40%, 지방비 60% - 사업비 : 80백만원 * 32개소×6,250천원×40%(국비) - 규모, 형태 등에 따라 사업비, 사업량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기기 및 탈취제 구입 비용, 매몰지 소독 비용, 미생물 구입 등 잔존물 분해 비용, 매몰지 이설·소멸처리 관련 비용, 잔존물 분해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발굴 관련 비용, 매몰지 점검 후 복구·시정 조치 등을 위한 비용 등
부 산	-	-	-	-	-	-	
대 구	-	-	-	-	-	-	
인 천	-	-	-	-	-	-	
광 주	-	-	-	-	-	-	
대 전	-	-	-	-	-	-	
울 산	-	-	-	-	-	-	
세 종	-	-	-	-	-	-	
경 기	6	15,000	4	7,500	11,250	18,750	
강 원	20	50,000	-	-	-	-	
충 북	-	-	-	-	-	-	
충 남	-	-	-	-	-	-	
전 북	-	-	-	-	-	-	
전 남	-	-	-	-	-	-	
경 북	4	11,000	-	-	-	-	
경 남	-	-	-	-	-	-	
제 주	-	-	-	-	-	-	
유보액	2	4,000	-	72,500	108,750	181,250	
계	32	80,000	4	80,000	120,000	200,000	

지자체별 자금배정 내역(살처분가축처리시설·장비-시설·장비)

(단위 : 천원)

시 도	'25년도 사업비			'26년도 사업비						세 부 내 역
	사업량		국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시설	장비		시설	장비					
서 울	-	-	-	-	-	-	-	-	-	※ 사업실시 세부사항은 2026년 사업지침에 따름 ○ 사업주관 :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 사업대상 - 살처분가축처리시설을 운영중/ 운영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로, 시설·부지를 소유 하고 사업비의 40%의 자부담 가능한 자 * (지원제외) 도축장 관련 등 질병발생 시 살처분가축처리가 불가능한 시설 -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운용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사업비의 40%의 자부담 가능한 자 ○ 사업비 및 지원 비율 - (시설) 1개소×2,000백만원 × 1년차 50% × 국비30% * 개소당 지원액은 사업계획 및 시설 특성·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시설) 1개소×2,000백만원 × 1년차 30% × 국비30% - (장비) 3대×300백만원 × 국비30% * 장비당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및 시설 특성·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한도: 5억/대) ○ 지원대상 - (시설) 기계·장비·소독 시설의 구입·설치, 설계비, 공사감리비, 건물 신·증축 및 개보수 비용 등 * 부지매입·운영비는 지원제외, 추가 소요비용은 자부담 - (장비) 이동식열처리 기계· 장비, 부대시설· 장비의 구입· 설치비 ※ 유보액 배정분은 추후 시도별 수요 및 예산 확정에 따라 배정 예정
부 산	-	-	-	-	-	-	-	-	-	
대 구	-	-	-	-	-	-	-	-	-	
인 천	-	-	-	-	-	-	-	-	-	
광 주	-	-	-	-	-	-	-	-	-	
대 전	-	-	-	-	-	-	-	-	-	
울 산	-	-	-	-	-	-	-	-	-	
세 종	-	-	-	1	-	180,000	180,000	240,000	600,000	
경 기	-	-	-	-	-	-	-	-	-	
강 원	-	-	-	-	-	-	-	-	-	
충 북	-	-	-	-	-	-	-	-	-	
충 남	1	1	390,000	1	-	300,000	300,000	400,000	1,000,000	
전 북	-	-	-	-	2	180,000	180,000	240,000	600,000	
전 남	-	2	180,000	-	1	90,000	90,000	120,000	300,000	
경 북	1	1	147,900	-	-	-	-	-	-	
경 남	-	-	-	-	-	-	-	-	-	
제 주	1	-	200,000	-	-	-	-	-	-	
유보액	-	1	132,100	1	-	180,000	180,000	240,000	600,000	
계	3	5	1,050,000	3	3	930,000	930,000	1,240,000	3,100,000	

6

사업비 집행 및 실적 보고

■ 사업비 배정

- 연간 배정계획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3940-341-330-01) 및 자본보조(3940-341-330-03)로 국고 송금

■ 자금 집행

-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지방비 부담액도 동시 집행
- 사업 비목(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따라 집행 가능한 지원 내역 검토 후 집행
- 「보조금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시 등록 및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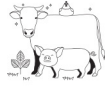
■ 사업 수요 및 추진실적 보고

- 사업수요 : '27년 사업 희망 예산 수요내역을 '26.4.30.까지 제출
- 실적보고 : 시·도는 농식품부의 요청 시 해당 사업의 실적을 수시·정기 제출
- 완료보고 : 시·도는 '27.1.14.까지 사업실적 제출(별도서식 미송부시 별첨1에 따라)

〈별첨1〉

2026년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추진실적 보고

내역 사업명	사업비 배정					집행 누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살처분가축 시설·장비 지원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살처분 등 비용 지원										
계										



2026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사업

(일반회계 : 예산과목 7001-100)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사업

■ 사업목적

- 가축방역, 동물검역,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일선 현장에 배치·운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후처리 역할 수행

■ 운영인원 : 332(1년차 102, 2년차 103, 3년차 127)

■ 신 분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

■ 근무처 :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검역본부

■ 예산액 : 12,478,191천원(국비 100%)

■ 보수 :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에서 3호봉 수준

※ 보수는 국비로 지급하고, 여비·초과근무수당 등은 지방비로 지급

■ 담당업무

- 가축방역 :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및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질병예찰 등
- 축산물위생관리 : 원유·도축 검사, 가공장 위생관리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
- 동물검역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질병검사·위생검사 등

■ 복무·병역관계 : 의무복무기간(3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 군사교육소집기간(3주) 미포함

■ 급여 지급방법

- 검역본부 및 시·도는 지역본부·사무소,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 등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소요액을 파악하여 매 분기 시작 월 5일까지 제출
-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및 시·도별 지출한도액을 배정
- 검역본부, 시·군·구, 동물위생시험소는 공중방역수의사별 계좌 입금 조치

■ 주요 추진일정(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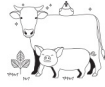
- 역종분류(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및 군사교육 : 2.24. / 3.26. ~ 4.16.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방역행정과정) : 4.27. ~ 5.1.(5일간)
- 공중방역수의사 임관식 및 근무기관 배치 : 4.15.

〈 공중방역수의사 배치현황 〉

(단위 : 명, '25.12월 기준)

구분	17기 ('23년 임용)	18기 ('24년 임용)	19기 ('25년 임용)	계
검역본부	17	13	8	38
서울	-	-	-	0
부산	-	1	-	1
대구	2	-	-	2
인천	-	-	1	1
광주	-	-	-	0
대전	-	-	-	0
울산	1	-	-	1
세종	1	-	1	2
경기	21	14	8	43
강원	12	12	9	33
충북	12	3	13	28
충남	14	12	13	39
전북	10	10	13	33
전남	12	15	14	41
경북	13	11	12	36
경남	11	7	10	28
제주	1	5	-	6
계	127	103	102	332

※ 신규 공중방역수의사(20기) 배치계획은 추후 확정·통보할 계획



2026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가축 방역기관 연락처

가축 방역기관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0110	044 FAX	201-2519/2521 868-0628	전국

농림축산검역본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관리계)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39660	054 FAX	912-0361/3 912-0383	전국

시·도

시·도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02-2133-7654	768-8946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5121~2	888-4979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21~2	803-3439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032-440-4431~3	440-8663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062-613-4692	613-3969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042-270-3841	270-3789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2	229-2909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044-300-7631~2	300-7619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2~4	8030-3479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33-249-2728	249-4206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043-220-3563	220-3569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041-635-2552	635-349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3-280-2652~3	280-2639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061-286-6561	286-4393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054-880-3443~7	880-3449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055-211-6562~6	211-655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662	710-2669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13818	02 FAX	570-3435 570-3442	서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724	46510	051 FAX	330-6120 331-6121 330-6119	부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5	42183	053 FAX	760-1300~4 760-1302	대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7번길 34	22320	032 FAX	440-5642~3 440-8863	인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84	61954	062 FAX	613-7651~3 613-7649	광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	34142	042 FAX	270-6895 270-6869	대전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청룡들로 6번지	44642	052 FAX	229-5241 229-5249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북부2로 12	30033	044 FAX	301-3861~2 301-3819	세종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동 경물 위 기생 시 도협 소	본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63	16381	031 FAX	8008-6270~1 8008-6247	수원, 안양, 부천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김포 성남, 오산, 화성 광명
	동부지소	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96-3	17391	031 FAX	8008-6371 636-3676	하남, 여주 광주, 이천, 양평
	남부지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1	17560	031 FAX	8008-6341 651-1614	용인, 평택, 안성
	북부동물 위생시험소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229-26	11459	031 FAX	8008-6431 8008-6404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고양 파주
	북부지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71	12035	031 FAX	8008-6472 593-4012	남양주, 구리, 가평, 포천
강동 원물 특위 별생 자시 치협 도소	본 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	24203	033 FAX	248-6621 248-6610	춘천, 철원, 화천, 양구
	동부지소	강원도 강릉시 모산로 214	25606	033 FAX	610-8702 610-8722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남부지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내길 47	26457	033 FAX	737-6771 737-6790	원주, 홍천, 횡성
	중부지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제방길 15-8	25377	033 FAX	339-8852 339-8866	영월, 평창, 정선
	북부지소	강원도 속초시 장성천길 15-14	24802	033 FAX	634-8532 634-8543	인제, 고성, 속초, 양양
동 충물 청위 북생 도시 협 소	본 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새동네길 39	28153	043 FAX	220-6231~4 220-6229	청주, 진천, 괴산, 증평
	중부지소	충북 충주시 팽고리산길 13	27336	043 FAX	220-6311 220-6319	충주, 음성
	북부지소	충북 제천시 내토로73길 10	27139	043 FAX	220-6351 220-6359	제천, 단양
	남부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로 230	29140	043 FAX	220-6331 220-6339	보은, 옥천, 영동
동 충물 청위 남생 도시 협 소	본 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33번길 22	32280	041 FAX	635-7021 635-7967	보령, 청양, 홍성
	아산지소	충남 아산시 음봉로 337번길 23	31415	041 FAX	635-7131 548-2954	천안, 아산
	공주지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91-8	32528	041 FAX	635-7101 881-0129	공주, 금산, 계룡
	당진지소	충남 당진시 역천로 632-18	31788	041 FAX	635-7170 357-5850	예산, 당진
	부여지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52번길 32-4	33159	041 FAX	635-7191 635-7975	논산, 부여, 서천
	태안지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굴포길 37	32138	041 FAX	635-7221 675-4348	서산, 태안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전동 북물 특위 별생 자시 치협 도소	본 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	55632	063 FAX	290-5361 290-5411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북부지소	전북 익산시 하나로 15길 149	54531	063 FAX	290-6512 290-6538	군산, 익산, 김제
	서부지소	전북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800	56134	063 FAX	290-6542 290-6568	정읍, 고창, 부안
	남부지소	전북 남원시 요천로 1975	55725	063 FAX	290-6571 290-6598	남원, 임실, 순창
동 전물 라위 남생 도시 협 소	본 소	전남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19	59213	061 FAX	286-6130 434-9131	나주,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8	58010	061 FAX	286-6300 286-6308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구례, 고흥
	서부지소	전남 영광군 묘량면 밀재로 385	57057	061 FAX	286-6870 352-1110	목포, 무안, 함평, 영광, 신안
	북부지소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영천성도길 212	57368	061 FAX	286-6670 380-7979	담양, 곡성, 화순, 장성
동 경물 상위 북생 도시 협 소	본 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	41405	053 FAX	310-5522 326-1066	구미, 칠곡, 성주, 고령, 경산 영천, 청도
	북부지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36621	054 FAX	850-3310 850-3329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동부지소	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435	38101	054 FAX	778-3520 748-6685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서부지소	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276	37240	054 FAX	530-4121 534-1755	김천, 상주 문경, 예천
동 경물 상위 남생 도시 협 소	본 소	경남 진주시 초전북로 104	52733	055 FAX	254-3022 254-3059	진주, 사천 산청, 하동
	중부지소	경남 김해시 서부로 1074-21	50876	055 FAX	254-3212 254-3229	창원, 김해, 함안
	동부지소	경남 양산시 옥곡5길 5	50623	055 FAX	254-3382 254-3389	창녕, 양산, 밀양
	북부지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1665	50228	055 FAX	254-3312 254-3329	합천, 거창 의령, 함양
	남부지소	경남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2018-23	53000	055 FAX	254-3352 254-3369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941	63344	064 FAX	710-8531~5 710-8529	제주